東아시아古代學會
2020년 하계학술대회

재난으로 보는 동아시아

• 일시 : 2020. 7. 17.(금) 12:30~18:00

•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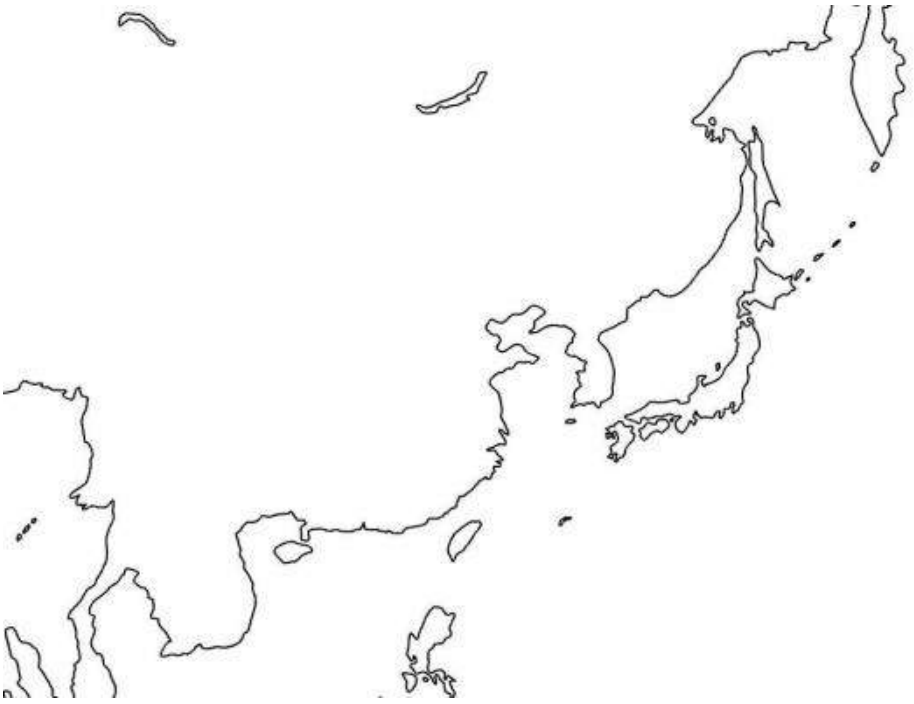

주최

東아시아古代學會・한성백제박물관

주관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년 하계학술대회 일정

12:30~13:00	참가자 등록
개회식	사회: 유형동(한신대, 총무이사)
13:00~13:15	개회사 동아시아고대학회장 송완범
13:15~13:30	축사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장 홍성화
제1부 학술발표 및 토론	사회: 김병모(동국대)
13:30~14:00	**〈기획발표1〉**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해양루트에서의 재난과 교류 -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루트를 중심으로 발표: 홍성화(건국대) / 토론: 정효운(동의대)
14:00~14:30	**〈기획발표2〉**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발표: 이장웅(한성백제박물관) / 토론: 송영대(건국대)
14:30~14:50	휴식/ 20분
제2부 학술발표 및 토론	사회: 고남식(대진대)
14:50~15:20	**〈기획발표3〉** 災祥異常說에서 본 董仲舒의 天人感應論과 生態文明觀 - 생명공동체의 경계에 착안하여 발표: 김연재(공주대) / 토론: 이병욱(고려대)
15:20~15:50	**〈기획발표4〉** 虎患에 대처하는 문학적 상상력 발표: 유형동(한신대) / 토론: 이명현(중앙대)
15:50~16:10	휴식/ 20분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안영훈(경희대)**
제3부 연구윤리교육 및 임시총회	사회: 류호철(안양대, 총무이사)
17:00~17:20	**연구윤리교육** 고남식(연구윤리위원장)
17:20~18:00	**임시총회** 2020년 상반기 경과보고 총서 발간 진행상황 보고
18:00	**폐회**

개 회 사

송 완 범 교수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장 / 고려대)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사태로 편치 않은 요즈음 학술대회를 열 수 있게 허가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한성백제박물관과 김기섭 관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학술대회를 고대해 오신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덧붙여 본 학술대회를 후방에서 지원해준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의 홍성화 회장(건국대)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사태는 동아시아고대학회가 1999년 창립 취지문에서 이미 예고한대로 “지난 세기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참화를 망각한 채 글로벌화가 지고지선인 것처럼 주장하다 가공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인간성 상실로 가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학회는 “재난으로 보는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본연의 의미를 되묻고자 합니다. 재난이란 주제는 보통의 일상에서는 금기하는 단어이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은 천재와 인재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인류 전체의 과제요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학회와 학술대회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갖는 불확실성을 숙지하면서 향후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코로나사태 이후의 인문학적인 지향점을 계속 강구해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학문적 노력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적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학회 구성원들과 박물관 관계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홍 성 화 교수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회장 / 건국대)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의 홍성화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술대회를 허락해주신 한성백제박물관 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공동 주최해주신 동아시아고대학회의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아시아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저희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는 2016년 한성백제박물관과 공동으로 “칠지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8년과 2019년에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여러 언론에 소개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동아시아의 역사, 문학, 사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대한 실적을 쌓아온 동아시아고대학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알찬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감염병과 재난에 대해 항상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 처해있는 현재, 우리에게는 일상이 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번 “재난으로 보는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러한 재난을 동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 재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이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까지도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재난과 질병 등 관련된 많은 연구에 괄목할만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금번 국제학술대회 개회를 맞이 하는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제1부 역사와 재난

제1주제 :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해양 루트에서의 재난과 교류 -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루트를 중심으로 - ····· **홍 성 화** / 1
(건국대)

• 토론문 - **정 효 운** (동의대) ····· 19

제2주제 :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 **이 장 웅** / 23
(한성백제박물관)

• 토론문 - **송 영 대** (건국대) ····· 53

제2부 사상 · 문학과 재난

제1주제 : 災祥異常說에서 본 董仲舒의 天人感應論과 生態文明觀 - 생명공동체의 경계에 착안하여 - ····· **김 연 재** / 55
(공주대)

• 토론문 - **이 병 욱** (고려대) ····· 75

제2주제 : 호환에 대처하는 문학적 상상력 ····· **유 형 동** / 79
(한신대)

• 토론문 - **이 명 현** (중앙대) ····· 97

제3부 연구윤리교육

• 연구윤리교육 ····· 100
• 「동아시아고대학회」 연구윤리 규정 ····· 111
• 「동아시아고대학」 투고규정 ····· 114
• <동아시아고대학> 제59집 논문 투고안내 ····· 118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해양 루트에서의 재난과 교류

-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루트를 중심으로 -

홍 성 화 (건국대)

〈 목차 〉

Ⅰ. 머리말 ····· 3

Ⅱ.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해상루트 ····· 4

Ⅲ. 고구려 사신을 영접한 인물 분석 ····· 6

Ⅳ. 6세기 후반의 국제 관계 ····· 12

Ⅴ. 맺음말 ····· 16

<참고문헌> ····· 17

• 토론문 / 정효운 ····· 19

Ⅰ. 머리말

고대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6세기 후반에 들어 주목되는 교류의 상황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간의 교류이다.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교류에 대해서는 앞서 『日本書紀』 應神 28년 9월조[1]와 仁德 12년 7,8월조[2]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應神紀에 나타나는 기사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와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仁德紀에 등장하는 고구려 사신의 기사는 的臣의 조상인 盾人宿禰의 재능을 顯彰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어 있어 的臣 가전에 의한 설화적인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日本書紀』 繼體 10년(516) 백제가 灼莫古 장군과 日本斯那奴阿比多를 파견하고 고구려사신 安定을 딸려 보냈다는 기록[3]과 欽明 원년(540) 고구려가 백제, 신라, 임나와 함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4]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록은 전후 관련되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독립된 기사이며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적 긴장 관계로 볼 때 덧붙여 기록된 형식적인 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5]

따라서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570년부터 나타나는 고구려 사신의 일본열도 도착을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시작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6] 그동안 570년대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7] 하지만,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교류에 대해서는 특히 교섭 와중에 고구려 사

---

1) 『日本書紀』 卷第10 應神 28年 秋9月
高麗王遣使朝貢 因以上表. 其表曰 高麗王 敎日本國也. 時太子菟道稚郎子讀其表 怒之責高麗之使 以表狀無禮 則破其表.

2) 『日本書紀』 卷第11 仁德 12年
秋七月辛未朔癸酉 高麗國貢鐵盾·鐵的.
八月庚子朔己酉 饗高麗客於朝. 是日 集群臣及百寮 令射高麗所獻之鐵盾的 諸人不得射通的 唯的臣祖盾人宿禰射鐵的而通焉 時高麗客等見之 畏其射之勝工 共起以拜朝. 明日 美盾人宿禰而賜名曰的戶田宿禰.

3) 『日本書紀』卷第17 繼體 10年
戊寅 百濟遣灼莫古將軍·日本斯那奴阿比多 副高麗使安定等 來朝結好.

4) 『日本書紀』 卷第19 欽明元年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並遣使獻 並脩貢職.

5) 정효운, 「高句麗·倭의 전쟁과 외교」, 『고구려발해연구』24, 2006, p.183

6) 津田左右吉(『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1924) 이래 고구려와 왜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7) 李弘稙,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 (2)」 『東方學志』3집5, 1957 ;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國書問題に關する一試論-」,『思想』795, 1990 ; 金恩淑, 「6세기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新羅의 對外關係史 硏究-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5, 1994 ; 平野卓治, 「日本の古代史料にみる倭王權·日本律令國家と高句麗」, 『고구려발해연구』18, 2004 ; 정효운, 앞의 논문, 2006 ; 이영식,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東北亞歷史論叢』11, 2006 ; 연민수, 「6~7세기

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등 당시 발생했던 해상 재난의 원인을 비롯하여 고구려 사신을 둘러싼 야마토 정권의 상황 등 특기할 만한 내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6세기후반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교류에 주목하면서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있었던 해상 재난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왜국 내의 실상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Ⅱ.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해상루트

일본은 백제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의 여러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으며 이러한 고대의 교류 현황은 문헌 등에 다수 散見된다. 특히, 이들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해역 간 해상 루트에 대한 기초적 고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일찍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해상 루트와 관련해서는 『三國志』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三國志』에 보이는 邪馬台國까지의 여정을 통해 보면 황해도 부근에서 한반도 남서해안을 따라 가다가 김해에서 對馬島, 壹岐를 거쳐 北九州의 松浦 부근에 도달하는 항로를 보여주고 있다.[8]

『隋書』 倭國傳에도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가는 해상 루트가 나와 있는데, 백제의 竹島에 닿아 남쪽으로 聃羅國을 바라보며 都斯麻國을 거쳐 一支國에 이르고 竹斯國에 도착하고 있다.[9] 이 역시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가다가[10] 對馬島,

---

高句麗의 對倭關係」, 『한일관계사연구』27, 2007 ; 李成制,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涉과 그 意味-새로운 對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고대사탐구학회』2, 2009 : 박재용, 「6세기 倭國의 대외관계 변화와 百濟系 씨족」, 『백제와 주변세계』 성주탁교수 추모논총, 2012

8) 『三國志』 魏書 卷第30 烏丸鮮卑東夷傳倭人條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千餘里 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所居絶島 方可四百餘里. 土地山險 多深林 道路如禽鹿徑. 有千餘戶.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糴.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 官亦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方可三百里. 多竹木叢林. 有三千許家. 差有田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糴. 又渡一海千餘里 至末盧國. 有四千餘戶 濱山海居. 草木茂盛 行不見前人. 好捕魚鰒 水無深淺 皆沈沒取之.

9) 『隋書』 俀(倭)國傳
上遣文林郎裴清使於俀國 度百濟行至竹島 南望聃羅國經都斯麻國迴在大海中 又東至一支國 又至竹斯國 又東至秦王國 其人同於華夏以爲夷洲疑不能明也 又經十餘國達於海岸 自竹斯國以東皆附庸於俀

10) 백제 竹島의 경우 진도 또는 완도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지만(金恩淑, 앞의 논문), 『高麗圖經』에 나오는 해상 루트상에 竹島라는 동일한 명칭을 참고한다면 서해안의 안마도(문경호, 「1123년 서긍의 고려 항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78, 2016)로 볼 개연성도 있다.

壹岐를 거쳐 筑紫에 이르는 정황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 서남해안과 대한해협 등의 해역을 통한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교류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 남해안의 해상루트와 관련해서는 최근 남해도의 남치리 고분에서 백제의 은화관식이 출토됨으로 인하여 사천과 창선도를 이은 고성만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열도로 가는 백제의 해상 교통로를 추정하기도 한다.[11)]

한편,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에 있어서는 백제의 루트 외에 東海를 통한 고구려의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6세기 후반 欽明, 敏達 시기 고구려의 항로에서는 다수의 조난과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日本書紀』卷第19 欽明 31년(570)

夏四月甲申朔乙酉 幸泊瀨柴籬宮. 越人・江渟臣裾代 詣京奏曰 高麗使人 辛苦風浪迷失浦津 任水漂流 忽到着岸. 郡司隱匿 故臣顯奏. 詔曰 朕承帝業 若干年. 麗迷路始到越岸. 雖苦漂溺 尙全性命. 豈非徽猷廣被・至德魏々・仁化傍通・洪恩蕩々者哉. 有司 宜於山城國相樂郡 起館淨治 厚相資養. 是月 乘輿至自泊瀨柴籬宮 遣東漢氏直糠兒・葛城直難波 迎召高麗使人.

㈁『日本書紀』卷第20 敏達 2년(573)

夏五月丙寅朔戊辰 高麗使人 泊于越海之岸 破船溺死者衆. 朝庭 猜頻迷路 不饗放還. 仍勅吉備海部直難波 送高麗使.

㈀은 『日本書紀』 欽明 31년(570) 4월 고구려 사신의 漂着 기록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의 동해안에서 北陸 지방에 이르는 고구려의 해양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 사신이 越의 해안에 漂着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루트가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이전인 초기의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초기의 상황은 573년 고구려의 사신이 왔을 때의 기록인 ㈁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이들 고구려 사신의 일본열도 도착을 단순한 漂着이나 破船, 溺死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닌 國書를 가지고 왔던 사실을 통해서도 공식적인 사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리 야마토 정권이 고구려 사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파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고구려는 553년 한강 유역을 점유하였던 신라의 외교적 군사적 발

11) 홍성화, 「"日本書紀" 소위 '任那 4縣 할양' 기사에 대한 고찰」, 『사총』87, 2016

흥과 560년대부터 시작되는 신라의 대중국 외교에 위협을 느끼고 왜국과 통교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항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교였다고 추측된다.

초기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해상 루트는 백제와 야마토 정권이 중심이 되었던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통과하는 항로였고 6세기 후반 무렵에는 이 루트가 신라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한다. 신라가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고 결국 562년 가야를 복속하게 되자 6세기 후반 신라의 가야 지역 확보로 인하여 백제는 해상통제권을 상실하고 신라가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555년 2월 백제 위덕왕의 동생 惠가 청병을 위해 왜국에 파견된 후 575년 2월 사신을 보낼 때까지 백제와 왜의 교류가 보이지 않는 것도 기존의 루트를 통해서는 백제가 일본 열도에 접근하는데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어쨌든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당시 고구려가 서해안에서 남해안의 항로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는 동해를 횡단하여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 ㈁에서와 같이 漂着, 破船, 溺死의 상황이 일어났던 것은 우선 당시 고구려가 일본열도로 가는 해상 루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와 왜와의 통교 와중에는 해상 상황에 따른 재난과는 달리 인위적인 해상 재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때문에 당시 해상 재난의 경우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국제관계와 맞물려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Ⅲ. 고구려 사신을 영접한 인물 분석

570년과 573년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 사신이 일본열도에 표착, 난파하던 상황 속에서 573년 7월 송환되던 고구려 사신 2명이 바다에 던져지는 해상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12) 李成市, 앞의 논문

13) 金恩淑, 앞의 논문, pp.186-197,

㈁『日本書紀』卷第20 敏達 2년(573)

秋七月乙丑朔 於越海岸 難波與高麗使等相議 以送使難波船人大嶋首磐日・狹丘首間狹令乘高麗使船 以高麗二人令乘送使船 如此互乘以備奸志. 俱時發船至數里許 送使難波 乃恐畏波浪 執高麗二人擲入於海.

앞서 573년 5월에 고구려 사신이 越의 海岸에 漂着하였는데, 배가 난파하여 익사한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야마토 정권에서는 자주 길을 잃는 것을 의심하여 吉備海部直難波를 파견하여 고구려 사신을 송환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고구려 사신의 왜국 입국 자체가 거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送使를 딸려 고구려에 보낸 것은 당시의 고구려의 상황을 엿보기 위한 야마토 정권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7월에 이르러 고구려 사신을 송환하게 되는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고구려인과 왜인을 각각의 선박에 나누어 승선시켰다. 이때 고구려 사신 2명을 吉備海部直難波의 배에 타게 하였는데, 吉備海部直難波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고구려 사신 2명을 바다에 던졌던 것이다.

일단 『日本書紀』의 기록에는 送使였던 吉備海部直難波가 풍랑을 두려워해서 바다에 집어던진 것으로 서술되어있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이 단순한 해상 상황에 의한 조난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日本書紀』卷第20 敏達 2년 (573)

八月甲午朔丁未 送使難波 還來復命曰 海裏鯨魚大有 遮囓船與檝櫂. 難波等 恐魚呑船 不得入海. 天皇聞之 識其謾語 駈使於官 不放還國.

㈃『日本書紀』卷第20 敏達 3년 (574)

秋七月己未朔戊寅 高麗使人 入京奏曰 臣等去年 相逐送使罷歸於國. 臣等先至臣蕃 臣蕃卽准使人之禮 禮饗大嶋首磐日等. 高麗國王 別以厚禮々之. 既而 送使之船至今未到. 故更謹遣使人幷磐日等 請問臣使不來之意. 天皇聞 卽數難波罪曰 欺誑朝庭一也. 溺殺隣使 二也. 以茲大罪 不合放還. 以斷其罪.

㈁은 吉備海部直難波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야마토 정권에 보고할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바다 속에 고래가 나타나서 배와 노를 삼켜서 이 때문에 두려워서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야마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거짓임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에 등장하는 고구려 사신의 배는 573년 고구려에 들어갔다가 다시 귀환했던 배로 보이며 지난번의 送使의 배에 타고 있던 고구려인이 돌아오지 않자 그 이유를 듣기 위해 574년 다시 일본으로 왔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야마토 정권에서는 吉備海部直難波의 죄를 책하고 단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단 당시에 이러한 해상의 재난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과 ㈁의 기록을 통해서는 이들 재난이 단순히 해상의 상황에 따른 재난 때문에 바다에 던져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선 6세기후반 고구려의 사신이 왜국에 도착했을 때 『日本書紀』내에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야마토 정권에서 보낸 인물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에 보이는 것처럼 570년 고구려 사신에게는 東漢氏直糠兒과 葛城直難波을 보내 영접하고 있다.

東漢直(倭漢直)과 관련해서는 『日本書紀』를 보면 應神 20년(409년)에 倭漢直의 선조인 阿知使主가 백제로부터 그 일족, 17현의 백성을 거느리고 야마토에 도착했다고 하면서 고대의 가장 유력한 도왜인으로 그리고 있다.[14]

東漢直에 대해서는 『新撰姓氏錄』에 後漢 靈帝에 유래를 둔 씨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나라시대에 들어 後漢에 유래를 둔 씨족으로 창작되었던 것이다.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도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다만 이를 가야계로 보는 설과 백제계로 보는 설이 있지만, 西文氏의 선조인 王仁이 비슷한 시기에 백제에서부터 건너왔으며 한반도에서 渡日한 씨족 가운데 가장 큰 집단에 해당하는 東漢氏는 蘇我氏의 휘하에 있었고 東漢氏의 경우 직물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집단의 기술자 등 今來漢人으로 칭해지는 한반도 이주민을 거느리고 檜隈 근거지 부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東漢氏의 활동 범위와 양태를 고려하면 백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5]

葛城直은 561년 신라 사신을 접대한 적이 있는 씨족이다.[16] 葛城直은 『日本書

14) 『日本書紀』 卷第10 應神 20年 秋9月
倭漢直祖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並率己之黨類十七縣 而來歸焉

15) 김현구, 박현숙, 우재병, 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I , 일지사, 2002

16) 『日本書紀』 卷第19 欽明 22年
新羅遣久禮叱及伐干 貢調賦. 司賓饗遇禮數 減常. 及伐干 忿恨而罷. 是歲 復遣奴氐大舍 獻前調賦.

紀』 神武 2년조에 葛城國造에 임명된 劒根의 후예로, 『新撰姓氏錄』에서는 高皇命을 5세손으로 하는 神別의 씨족이다. 대체적으로 葛城氏의 일족으로 보고 있으며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大和國 葛城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력을 배경으로 대두한 씨족으로 보고 있다. 葛城氏 중에는 『日本書紀』에 沙至比跪로서 백제계 사료에 등장하여 한반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葛城襲津彦 경우 일본 국내 기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한반도 관계 기사에만 일관되게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 한반도계 이주민 출신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7]

또한 570년의 고구려 사신이 近江에 들어왔을 때도 許勢臣猿과 吉士赤鳩를 보내 近江 北山에서 마중하게 하였고 相樂舘에 東漢坂上直子麻呂와 錦部首大石을 보내 수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日本書紀』卷第19 欽明 31년(570) 7月

是月 遣許勢臣猿與吉士赤鳩 發自難波津 控引船於狹々波山而裝飾船 乃往迎於近江北山 遂引入山背高槻館. 則遣東漢坂上直子麻呂・錦部首大石 以爲守護 更饗高麗使者於相樂館.

吉士赤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는 없으나 吉士는 蘇我氏 휘하의 외교 전담집단으로 한반도계 유력 씨족으로 보고 있다.[18] 또한 東漢坂上直은 東漢氏 일족의 하나로서 앞서 언급했듯이 백제계 도왜인이다.

錦部首의 경우는 『日本書紀』 仁德 41년 3월조에 '백제왕족 酒君이 무례하여 紀角宿禰가 백제왕을 질책하자 酒君을 일본에 보냈는데 石川錦織首許呂斯의 집에 도망하여 숨었다'는 기록이 있다.[19]

백제계 도왜인의 거주지였던 錦部는 원래 大和川의 지류인 石川을 경계로 동쪽으로는 石川郡, 서쪽은 錦部郡으로 분할되어 있던 곳이었다. 錦部村主에 대해서는 『新撰姓氏錄』 山城國諸蕃에 錦織村主와 같은 조상으로서 波能志의 후손으로 되어 있으며 右京諸蕃에는 錦織村主가 韓國人波努志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20] 또한

於難波大郡 次序諸蕃 掌客額田部連‧葛城直等 使列于百濟之下而引導.

17) 本位田菊士, 『日本古代國家形成過程の研究』, 名著出版, 1978, p.169

18) 박재용, 앞의 논문, p.232

19) 『日本書紀』 卷第11 仁德 41年 春3月

是時 百濟王之族酒君无禮 由是 紀角宿禰訶責百濟王. 時百濟王悚之 以鐵鎖縛酒君 附襲津彦而進上. 爰酒君來之 則迅匿于石川錦織首許呂斯之家 則欺之曰 天皇旣赦臣罪 故寄汝而活焉. 久之 天皇遂赦其罪.

錦部郡에 대해서는 『新撰姓氏錄』 河內國諸蕃에 錦部連이 百濟速古大王 즉 근초고왕의 후예로 나오고 있어[21] 백제계 錦部氏 일족이 정착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錦部氏는 酒君이 쫓겨 왔던 상황 중에서도 백제인이라는 친분에 의해 그를 숨겨 주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酒君은 후에 難波의 百濟郡에 거주하면서 매 잡는 기술을 전해주었고 지금 大阪市 東住吉 지역의 공원에는 酒君塚이라는 비석이 남아 있다.

『日本書紀』 敏達 12년조에 達率 日羅의 처자들이 이주했던 '石川의 百濟村'은 錦部郡 百濟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의 富田林市에서 河內長野市에 걸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織物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백제계 도왜인의 거주지였던 부근에 錦織神社가 소재하고 있다.[22]

이렇듯 6세기 후반 고구려 사신을 영접한 인물들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蘇我氏 휘하의 사람들로서 보는 견해도 있지만,[23] 실질적으로는 백제계 도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ㄴ), (ㄷ)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사신을 돌려보내는 送使의 역할을 맡았으면서 이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고구려 사신을 던지는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이 吉備海部直難波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日本書紀』에 등장하는 吉備海部直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기사에만 나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吉備海部直이 백제계 도왜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24]

『日本書紀』 雄略 7年조에는 吉備海部直赤尾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吉備臣弟君과 함께 백제로 왔다가 渡倭人을 데리고 돌아오는 인물로 되어 있다.[25]

---

20) 『新撰姓氏錄』 右京諸蕃 漢
錦織村主 出自韓國人波努志也.
『新撰姓氏錄』山城國諸蕃 漢
錦部村主 錦織村主同祖 波能志之後也.

21) 『新撰姓氏錄』 河內國諸蕃 百濟
錦部連 三善宿禰同祖. 百濟國速古大王之後也.

22) 홍성화, 「지명과 신사」, 『일본 속의 百濟(近畿 지역)』 Ⅰ, 충청남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7

23) 金恩淑, 앞의 논문 ; 박재용, 앞의 논문

24) 平野卓治, 앞의 논문

25) 『日本書紀』 卷第14 雄略 7年
天皇詔田狹臣子弟君與吉備海部直赤尾 曰 汝宜往罰新羅. 於是 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乃進而奏曰 巧於奴者 多在韓國. 可召而使. 天皇詔群臣曰 然則宜以歡因知利 副弟君等 取道於百濟 並下敕書 令

또한 『日本書紀』 敏達 12年에 나오는 吉備海部直羽嶋는 백제로 가서 達率 日羅의 소환의 임무를 맡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26]

그리고 ㈏, ㈐에서와 같이 吉備海部直難破는 고구려의 사신을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인물로 나온다.

吉備氏의 경우 『古事記』, 『日本書紀』 등 기존 사서에서 그들 선조의 계보를 孝靈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이는 吉備津彦의 吉備 지역 평정과 연결하기 위한 작위적인 서술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는 세토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과 관련 있는 씨족이었다. 『古事記』 단계인 초기 단계에는 吉備海部直의 黑日賣의 고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吉備氏에 대해서는 그 원형인 吉備海部直의 존재가 중요시된다.[27]

또한 吉備海部直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들 인물이 모두 한반도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日羅를 소환하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吉備海部直羽嶋의 내용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이때의 吉備海部直은 韓語로 韓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日羅와 만났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日本書紀』에는 '그대의 뿌리를 나의 뿌리 속에 넣어라(以汝之根 入我根內)'라고 하는 원인불명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이는 당시의 백제어를 모르는 일본인에 의해서 쓰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吉備海部直이 백제어에 능통했다는 사실이다.

獻巧者. 於是 弟君銜命 率衆 行到百濟 而入其國. 國神化爲老女 忽然逢路. 弟君就訪國之遠近. 老女報言 復行一日 而後可到. 弟君自思路遠 不伐而還. 集聚百濟所貢今來才伎於大島中 託稱候風 淹留數月. 任那國司田狹臣 乃嘉弟君不伐而還 密使人於百濟 戒弟君曰 汝之領項 有何牢錮而伐人乎. 傳聞 天皇幸吾婦 遂有兒息.【兒息已見上文】今恐 禍及於身 可蹻足待. 吾兒汝者 跨據百濟 勿使通於日本. 吾者據有任那 亦勿通日本. 弟君之婦樟媛 國家情深 君臣義切. 忠踰白日 節冠青松. 惡斯謀叛 盜殺其夫 隱埋室內 乃與海部値赤尾將百濟所獻手末才伎 在於大島. 天皇聞弟君不在 遣日鷹吉士堅磐固安錢 【堅磐 此云柯陀之波】使共復命.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廣津 此云比慮岐頭】邑. 而病死者衆. 由是 天皇詔大伴大連室屋 命東漢直掬 以新漢陶部高貴 鞍部堅貴 畫部因斯羅我 錦部定安那錦 譯語卯安那等 遷居于上桃原 下桃原 眞神原三所.【或本云 吉備臣弟君 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宍人部】

26) 『日本書紀』 卷第20 敏達 12年
秋七月丁酉朔 詔曰 屬我先考天皇之世 新羅滅內官家之國. 天國排開廣庭天皇廿三年 任那爲新羅所滅 故云新羅滅我內官家也. 先考天皇謀復任那 不果而崩 不成其志. 是以 朕當奉助神謀復興任那. 今在百濟 火葦北國造阿利斯登子達率日羅 賢而有勇.故朕欲與其人相計. 乃遣紀國造押勝與吉備海部直羽嶋喚於百濟. 冬十月 紀國造押勝等還自百濟 復命於朝曰 百濟國主 奉惜日羅 不肯聽上.
是歲 復遣吉備海部直羽嶋 召日羅於百濟. 羽嶋旣之百濟 欲先私見日羅 獨自向家門底. 俄而有家裏來韓婦 用韓語言 以汝之根 入我根內. 卽入家去. 羽嶋便覺其意 隨後而入. 於是 日羅迎來 把手使坐於座 密告之曰 僕竊聞之 百濟國主奉疑 天朝奉遣臣後留而弗還. 所以 奉惜 不肯奉進. 宜宣勅時 現嚴猛色 催急召焉. 羽嶋 乃依其計而召日羅.(中略)

27) 吉備海部直과 관련해서는 洪性和, 「『日本書紀』 한반도 관계기사에 보이는 吉備氏에 대하여」, 『일본연구』28, 2017 참조

이러한 사실로 짐작해보면 吉備海部直의 경우 해양 관련성을 통한 한반도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언어적 측면에서도 이들 吉備海部直은 한반도 특히 백제 측에서 건너왔던 渡倭人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吉備海部直과 배를 나누어 타고 고구려 사신과 함께 고구려에 갔다가 돌아온 難波船人인 送使 大嶋首磐日의 경우도 吉備海部直과의 관계를 통해 雄略 7년 大島로부터 일본에 정착한 백제계 도왜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8]

이와 같이 吉備海部直과 大嶋首磐日 등이 고구려 사신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반도계 고구려어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日羅 소환의 임무를 맡았던 것도, 고구려 사신이 왔을 때 동행했던 것도 역시 언어의 문제로서 이는 앞서 선진문물, 才人 및 渡倭人을 데리고 온 인물로 吉備海部直赤尾과 吉備上道采女大海가 기술되어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吉備氏가 백제어를 비롯한 한반도 언어에 능통한 인물로서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에 정착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백제어와 고구려어는 한반도의 언어로서 서로 유사성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梁書』와 『南史』 백제전에는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데,[29] 이러한 사실을 실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고구려 사신을 영접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백제계 도왜인이 파견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적인 부분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Ⅳ. 6세기 후반의 국제 관계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은 서로 교류가 드물었던 까닭에 고구려 사신의 영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적, 정치적 입장을 통해서도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인물을 보냈을 개연성이 높다.

---

28) 金恩淑, 앞의 논문

29) 『梁書』 卷第54 百濟
今言語服章略與高驪同 行不張拱 拜不申足則異
『南史』 卷第79 百濟
言語服章略與高麗同

특히 573년에 있었던 고구려 사신의 해상 조난 상황은 단순한 해상 상황에 따르는 재난이 아니라 백제계 도왜인에 의해 일어났던 인위적인 재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6세기 후반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6세기 후반 고구려의 경우 야마토 정권과의 교류가 필요했다. 따라서 고구려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항로를 통해 일본열도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고구려 사신의 送使의 임무를 맞았던 大嶋首磐日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식 사신이 아닌 경우에도 사신의 예에 준하여 고구려 국왕까지 나서서 예로써 대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고구려는 야마토 정권과의 통교를 외교교섭의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30]

이에 반해 야마토 정권의 경우는 고구려를 교섭 상대국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다.

야마토 정권은 570년 4월 고구려 사신의 존재를 알았고 7월에는 이들을 山背에 들여 相樂館에 머물게 했지만 결국 572년 4월에서야 고구려의 국서를 받게 된다. 고구려 사신이 머무는 동안에 欽明의 사망이 있기는 했지만, 고구려 사신이 일본에 체류했던 2년이 넘는 기간은 야마토 정권이 고구려와의 통교에 대해 아직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 사신이 공물과 표를 바칠 좋은 날을 점치고 기다렸다는 것은 단순한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고구려에 대한 왜국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572년 고구려 대사가 살해되는 사건도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통교가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日本書紀』巻第20 敏達 元年(572)

六月 高麗大使 謂副使等曰 磯城嶋天皇時 汝等違吾所議 被欺於他 妄分國調 輒與微者. 豈非汝等過歟. 其若我國王聞 必誅汝等. 副使等自相謂之曰 若吾等至國時 大使顯譖吾過 是下祥事也. 思欲偸殺而斷其口. 是夕 謀泄. 大使知之 裝束衣帶獨自潛行立館中庭 不知所計. 時有賊一人 以杖出來 打大使頭而退. 次有賊一人 直向大使 打頭與手而退. 大使 尙嘿然立地而拭面血. 更有賊一人 執刀急來 刺大使腹而退. 是時大使恐伏地拜. 後有賊一人 既殺而去. 明旦 領客東漢坂上直子麻呂等 推問其由. 副使等乃作矯詐曰 天皇賜妻於大使 大使違勅不受 無禮茲甚. 是以 臣等爲天皇殺焉. 有司 以禮收葬. 秋七月 高麗使人罷歸. 是年也 太歲壬辰.

30) 李成制 앞의 논문, p.83

31) 金恩淑, 앞의 논문

㈏의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공물을 잘못 전달한 문제로 고구려의 대사와 부사 사이에 알력이 생겨 결국 대사가 살해되는 사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마토 정권의 외교 정책상의 갈등과 거기에서 비롯된 고구려 사절단의 의견 차이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32] 이 역시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통교가 무난하게 운용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573년 吉備海部直難波의 고구려 사신 송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고구려 사신의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있다.

당시 야마토 정권의 경우는 고구려의 입장과 달리 선뜻 통교에 응할 수 없었던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4~6세기에 이르는 동안 야마토 정권은 백제의 입장에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551년 백제의 성왕이 고구려를 공격하는 즈음에도 야마토 정권은 군원을 파견하여 고구려에 대항했다.[33]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야마토 정권에서 고구려와의 통교에 반대하는 백제계 관료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34]

吉備海部直難波 등 고구려 사신을 영접했던 인물은 그동안 고구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과 고구려의 통교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고구려와의 통교에 있어서 야마토 정권 내 백제계 도왜인의 영향력은 컸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王辰爾의 기사이다.

㈐『日本書紀』卷第20 敏達 元年(572)

五月壬寅朔 天皇問皇子與大臣曰 高麗使人 今何在. 大臣奉對曰 在於相樂館. 天皇聞之 傷惻極甚 愀然而歎曰 悲哉 此使人等 名既奏聞於先考天皇矣. 乃遣群臣於相樂館 檢錄所獻調物令送京師. 丙辰 天皇 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令讀解之. 是時 諸史 於三日內皆不能讀. 爰有船史祖王辰爾 能奉讀釋. 由是 天皇與大臣俱爲讚美曰 勤乎辰爾 懿哉辰爾. 汝 若不愛於學 誰能讀解. 宜從今始近侍殿中. 既而 詔東西諸史曰 汝等 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辰爾. 又高麗上表疏 書于烏羽. 字 隨羽黑 既無識者. 辰爾 乃蒸羽於飯氣 以帛印羽 悉寫其字. 朝庭悉之異.

32) 이영식, 앞의 논문, pp.221-222

33) 이 시기 왜가 참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日本書紀』 欽明 23년 8月條에 나오는 大伴連狹手彦의 파견을 欽明 11년(550년)이라는 分註의 내용을 중시하게 되면 왜가 백제,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략했던 때의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1985 ; 洪性和,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日本書紀』 내 倭의 韓半島 파병과 百濟·倭의 인적교류 기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36, 2010 ; 이영식, 앞의 논문)

34) 平野卓治, 앞의 논문

㈀은 고구려의 사신이 가지고 온 국서가 까마귀 깃털에 씌어 있어서 해독할 수 없었는데 王辰爾만이 밥 김에 쪄서 비단을 깃털 위에 눌러 글자를 베껴서 해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 고구려의 국서가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야마토 정권과 국교가 없었던 고구려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는 견해가 있다.[35] 하지만, 일단 국서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설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외교에 대한 언급보다는 국서를 해독한 王辰爾를 미화하기 위한 씨족 전승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록으로 판단된다.[36]

王辰爾는 『續日本紀』 延曆 9년(790)조에 의하면 百濟 貴須王(近仇首王)의 子孫으로 기술되어 있으며[37] 『日本書紀』 欽明 14年에는 王辰爾에게 배의 稅를 기록하게 하여 船史라는 姓을 내렸고 船連의 선조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38]

따라서 고구려의 국서를 해독하였다는 것은 백제계 도왜인의 훈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마토 정권에 있어서 고구려와의 국교에 대해서는 당시 백제계 도왜인의 입장이 상당 부분 고려되어야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日本書紀』 에는 고구려의 국서를 해독했던 王辰爾의 조카인 膽津이 吉備지역에 설치된 白猪屯倉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姓을 주어 白猪史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39]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吉備를 중심으로 했던 吉備海部直을 백제계 도왜인으로 보았던 것이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다.

---

35) 李成市, 앞의 논문

36) 李弘稙, 앞의 논문

37) 『續日本紀』 延曆 9年
國主貴須王恭奉使旨. 擇採宗族. 遣其孫辰孫王【一名智宗王】 隨使入朝. 天皇嘉焉. 特加寵命. 以爲皇太子之師矣. 於是. 始伝書籍. 大闡儒風. 文教之興. 誠在於此. 難波高津朝御宇仁德天皇. 以辰孫王長子太阿郎王爲近侍. 太阿郎王子亥陽君. 亥陽君子午定君. 午定君生三男. 長子味沙. 仲子辰爾. 季子麻呂. 從此而別始爲三姓. 各因所職以命氏焉. 葛井船津連等卽是也. 逮于他田朝御宇敏達天皇御世. 高麗國遣使上鳥羽之表. 群臣諸史莫之能讀. 而辰爾進取其表. 能讀巧寫. 詳奏表文. 天皇嘉其篤學. 深加賞歎. 詔曰. 勤乎懿哉. 汝若不愛學. 誰能解讀. 宜從今始近侍殿中. 旣而又詔東西諸史曰. 汝等雖衆. 不及辰爾. 斯並國史家牒. 詳載其事矣.

38) 『日本書紀』 卷第19 欽明 14年
秋七月辛酉朔甲子 幸樟勾宮. 蘇我大臣稻目宿禰 奉勅遣王辰爾 數錄船賦. 卽以王辰爾爲船 因賜姓爲船史. 今船連之先也.

39) 『日本書紀』 卷19 欽明 30年
春正月辛卯朔 詔曰 量置田部 其來尙矣. 年甫十餘 脫籍免課者衆. 宜遣膽津【膽津者 王辰爾之甥也】 檢定白猪田部丁籍. 夏四月 膽津 檢閱白猪田部丁者依詔定籍 果成田戶. 天皇 嘉膽津定籍之功 賜姓爲白猪史 尋拜田令爲瑞子之副.【瑞子 見上】
『日本書紀』 卷20 敏達 3年
冬10月戊子朔丙申 遣蘇我馬子大臣於吉備國 增益白猪屯倉與田部. 卽以田部名籍 授于白猪史膽津. 戊戌 詔船史王辰爾弟牛 賜姓爲津史.

그동안 야마토 정권은 백제의 입장에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국교 요구에 대해 야마토 정권의 입장에서는 백제 측과 협의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6세기 중엽 이후 백제와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상에는 신라가 있었고 백제와의 교섭은 일정 부분 차단이 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항로의 제한으로 인해 백제와 야마토 정권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백제의 입장에서 백제가 고구려와 왜국의 교섭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야마토 정권 내 백제계 도왜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이 높다.

Ⅴ. 맺음말

570년대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의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고구려 사신의 漂着, 破船, 溺死, 遭難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재난의 상황이 일어났던 것은 우선 당시 고구려가 일본열도로 가는 해상 루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와 왜와의 통교 와중에는 해상 상황에 따른 재난과는 달리 인위적인 해상 재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6세기후반 고구려의 사신이 왜국에 도착했을 때 『日本書紀』 내에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 야마토 정권에서 보낸 인물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고구려 사신을 영접했던 인물들은 백제계 도왜인이며 특히 573년에 있었던 해상의 조난과 관련해서는 야마토 정권과 고구려의 교섭을 반대했던 백제계 도왜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당시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교류를 통해 나타난 한반도와 일본열도 해역의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야마토 정권과 접촉하려 했던 고구려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나아가 이러한 고구려의 교섭 시도에 대한 야마토 정권과 백제계 도왜인들의 입장 및 대응이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志』

『梁書』

『南史』

『隋書』

『日本書紀』

『續日本紀』

『新撰姓氏錄』

金恩淑, 「6세기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新羅의 對外關係史 硏究-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15, 1994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1985

김현구, 박현숙, 우재병, 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Ⅰ, 일지사, 2002

문경호, 「1123년 서긍의 고려 항로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78, 2016

박재용, 「6세기 倭國의 대외관계 변화와 百濟系 씨족」, 『백제와 주변세계』 성주탁교수 추모논총, 2012

本位田菊士, 『日本古代國家形成過程の硏究』, 名著出版, 1978

연민수, 「6~7세기 高句麗의 對倭關係」, 『한일관계사연구』27, 2007

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いわゆる國書問題に關する一試論-」,『思想』795, 1990

李成制,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涉과 그 意味-새로운 對外戰略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한 재검토-」, 『고대사탐구학회』2, 2009

이영식,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東北亞歷史論叢』11, 2006

李弘稙,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 (2)」 『東方學志』3집5, 1957

정효운, 「高句麗 · 倭의 전쟁과 외교」, 『고구려발해연구』24, 2006

津田左右吉, 『古事記及日本書紀の硏究』, 岩波書店, 1924

平野卓治, 「日本の古代史料にみる倭王權・日本律令國家と高句麗」, 『고구려발해연구』18, 2004

洪性和,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日本書紀』 내 倭의 韓半島 파병과 百濟·倭의 인적교류 기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硏究』36, 2010

홍성화, 「"日本書紀" 소위 '任那 4縣 할양' 기사에 대한 고찰」, 『사총』87, 2016

홍성화, 「지명과 신사」, 『일본 속의 百濟(近畿 지역)』 Ⅰ, 충청남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7

洪性和, 「『日本書紀』 한반도 관계기사에 보이는 吉備氏에 대하여」,『일본연구』28, 2017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해양 루트에서의 재난과 교류 -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의 루트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정 효 운 (동의대)

발표자의 논문은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야마토 정권 교류를 통해 본 해상루트와 해상재난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70년에서 574년 사이의 『일본서기』에 기록된 3회의 고구려사 파견으로 인한 왜왕권과의 공식 외교와 교섭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종래의 연구가 고구려 사신의 왜 파견 목적에 대해 551년 신라와 백제에 의한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554년 백제에 대한 관산성에서의 승리, 568년의 함경도 지역의 황초령과 마운령비의 건립 등의 일련의 신라 군사력의 확대에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는 한반도 정세에 따른 원인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고 본다면, 본고에서는 왜의 정치, 외교적 입장과 경과 과정 그리고 국교 성립 실패와 고구려 사신의 투척의 해상 재난의 원인을 송사로 활약한 백제계 도왜인 출신인 吉備海部直難波 등과 같은 야마토 정권 내부에서의 고구려와의 통교를 반대하는 백제계 관료의 영향력으로 파악하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관련 사료가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시기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면 나름의 설득력 있는 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후 전개되는 고구려의 隋와의 군사적 대립 정세 하에 있어서의 595년 혜자와 같은 고구려 승려와 사신 등의 파견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고구려 사신의 왜 파견에 대한 왜 조정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 형성된 고구려와 왜의 우호관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세기 후반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백제-왜를 잇는 군사동맹으로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먼저,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다음은 해상루트에 관한 질문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의 인적 해상교류를 논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갔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어떠한 해상루트를 통해 갔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듯 하다. 예

를 들어 백제의 경우,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남진, 서진하면서 쓰시마(對馬), 이키(壹岐)를 거쳐 규슈(筑紫)에 도착하여 세도내해(瀨戶內海)를 통과하여 오사카만(難波館)으로 들어가는 해상로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문에서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 남해안의 해상루트와 관련해서는 최근 남해도의 남치리 고분에서 백제의 은화관식이 출토됨으로 인하여 사천과 창선도를 이은 고성만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열도로 가는 백제의 해상 교통로를 추정하기도 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2>를 참조하여 좀 더 면밀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고대 해상루트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본 논문 내용과 관련해 언급해 본다면, 고구려 사신의 왜조정으로의 루트는 에츠(越) → 비와코(琵琶湖) → 오우미(近江) → 야마토(大和)의 루트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고구려의 어디쯤에서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다 어디쯤에서 越지역으로 갔는지 아니면 울릉도를 중간 기착지로 하고 越지역으로 갔는지 하는 등 보다 구체성이 더해졌으면 한다. 이는 당시의 선박 기술로 보아 해류나 조류, 바람 등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래 <그림 1>의 한반도 주변 해류를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림 3>의 1019년 여진족(刀伊)의 일본 침략 사건에서 보듯이 울릉도를 거쳐 대마도로 갈 수 있는 해상루트도 존재하였다는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서기』의 관련 사료를 참고로 할 때, 고구려 사신의 루트가 越지역에서 육로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신 선박의 파선 등으로 육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하지만, 送使인 吉備海部直難波 등이 고구려로 출발한 곳은 월지역이 아니라 <그림 4>의 에도시대의 해상교통로를 참고한다면, 나니와(難波)에서 선박을 가지고 출발하여 세도내해를 거쳐 서쪽 회항 항로를 이용하여 월지역으로 간 다음, 사신을 데리고 고구려로 출발하려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吉備海部直難波와 같은 백제계 도왜인은 주로 백제와의 교류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남해안과 서해안 등과 같이 비교적 파도가 잔잔하고 항해 목표물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에 익숙하여 왔기 때문에, 동해안의 높은 파도와 목표물이 없는 망망대해를 보고 정말 겁이 나서 "함께 배를 띄어 몇 리 정도를 나아갔는데, 송사인 난파는 곧 파도가 두려워 고구려인 두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해상재난 행위를 했다든지, 동해의 큰 고래를 직접 목격하고, 8월 복명 시에 "바닷속에 큰 고래가 있어 뱃길을 막고 노를 물어서 부수었습니다. 난파 등은 물고기가 배를 삼킬까 두려워

서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라고 과장하여 말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에 천황이 거짓말이라고 하였다고 하지만 주변 정황상 오히려 사실에 더 가까운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하간 이상과 같이 해상루트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추가된다면 보다 더 충실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림 1> 한반도 주변 해류

<그림 2> 魏書 왜인전 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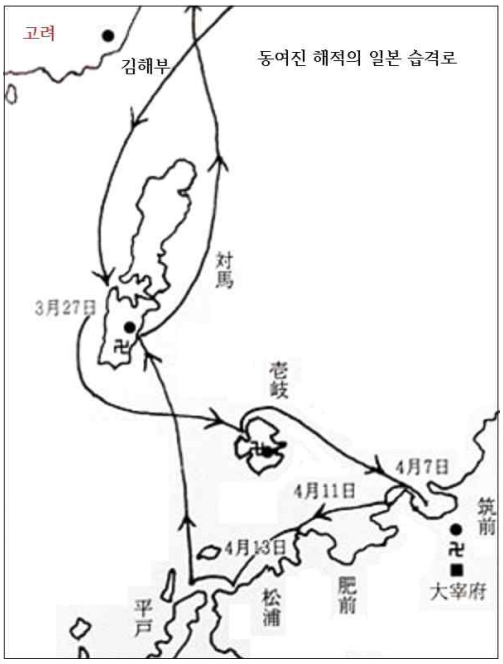

<그림 3> 1019년 刀伊의 入寇

<그림 4> 江戸시대 일본 항로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이 장 웅 (한성백제박물관)

〈 목차 〉

1. 머리말 ····· 25

2. 신라-일본 교류에서 사신의 죽음과 역병 ····· 25

3. 732년 발해-당 전쟁과 발해-신라 관계에서의 재난 ····· 36

4. 발해-일본 교류에서의 재난과 일본 견당사 ····· 41

5. 마무리 ····· 52

• 토론문 / 송영대 ····· 53

1. 머리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중국의 황제와 여러 주변 국가의 수장들 사이에 '책봉체제'라는 정치 구조를 매개로 중국 문화가 전파되었는데, 이처럼 역사적 세계로 자기완결성을 갖는 문화권인 동시에 독자의 정치 구조를 통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닌 지역을 西嶋定生은 '동아시아 세계'라고 명명하였다.[1] 그중 8세기 전반 동아시아는 당을 중심에 두고 신라, 발해, 일본이 당의 유교를 받아들여 각자의 천하관을 마련하면서 서로 외교 관계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續日本記』에는 이 시기의 외교 관련 기록이 일본의 입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있어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자료가 일본의 입장에서 일부 왜곡되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 발해,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의 실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續日本記』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의 표면에 나타난 일본 율령 국가의 천황 중심 사관에 입각한 서술 자체보다 그 행간의 이면에 남겨진 진실을 살펴보기 위하여 재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신라, 발해, 일본 사이에 외교 경쟁이 벌어지면서 재난도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외교 관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장에서는 『續日本記』와 『만엽집』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일본 교류에서 사신의 파견과 역병의 의미를, 3장에서는 중국과 신라 자료를 통해 732년 발해-당 전쟁과 발해-신라 관계에서 겨울 재난 기사의 의미를, 4장에서는 발해-일본 교류에서의 여름 재난과 일본 견당사의 재난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라-일본 교류에서 사신의 죽음과 역병

A-①. 壬午 신라 사신 薩飡 金所毛가 와서 母王(孝昭王 母 神穆太后)의 喪을 알렸다.[2] <『續日本紀』 卷1 文武天皇 4年(700) 11月>

A-②. 乙亥(1일) 천황이 大極殿에 나아가 朝賀를 받았다. 그 의례에는 正門에 烏形幢, 왼쪽에 日像, 靑龍, 朱雀의 깃발, 오른쪽에 月像, 玄武, 白虎의 깃발을 세웠다. 蕃夷의 使者들을 좌우에 배치하니, 문물의 의례가 갖추어졌다. 戊寅(4일) 天皇이 大

1) 西嶋定生, 1962,「6～8世紀の東アジア」『岩波講座 日本歷史』2, 岩波書店.
西嶋定生, 1970,「序說-東アジア世界の形成」『岩波講座 世界歷史』4, 岩波書店.

2) 十一月壬午 新羅使薩飡金所毛來赴母王之喪

安殿에 나아가 祥瑞를 받으니 告朔儀(매월 朔日에 初位 이상 관인들이 조당원 뜰에 모여 천황을 배례하는 의례)와 같았다. 戊子(14일) 신라 大使 薩飡 金所毛가 죽었다. 비단 150필과 綿 932근, 布 100段을 부의했다. 小使 級飡 金順慶과 水手 이상에게 祿을 내렸는데 차등이 있었다.[3] <『續日本紀』 卷2 文武天皇 5年 大寶 元年(701) 春正月>

일본에서 율령국가 체제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701년 3월의 大寶律令 제정[4] 직전인 A사료의 701년 정월에 거행된 元日 朝賀 儀禮에는 蕃夷의 사자들이 참석하여 그 의례가 갖추어졌다고 하였다. 701년에 반포된 大寶令 註釋書인 『令集解』에 인용된 『古記』에서 일본은 唐을 隣國, 신라는 蕃國으로 파악하였으므로,[5] A-②에 나타난 '蕃'은 신라 사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례 직후인 1월 14일에 신라 大使 金所毛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

『續日本紀』는 일본 중심의 천하관에 의해 신라와 발해를 번국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續日本紀』의 697년부터 779년까지 파견된 신라와 일본 사신의 관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신라는 8등급 薩飡이 7회, 9등급 級飡이 6회, 10등급 大奈麻가 3회로 나타나고, 일본은 從 5位 下 또는 正 6位 上이 대부분이라고 한다.[6] 신라에서 파견한 사신의 관등이 일본에서 파견한 사신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자료의 이면을 통해 실제로는 신라가 일본보다 우위에서 사신을 파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B-①. 丙子(30일) 신라의 貢調使 一吉飡 金儒吉 등이 來獻하였다.[7] <『續日本紀』 卷3 慶雲 2年(705) 10月>

B-②. 己丑(13일) 諸國의 騎兵을 징발하였다. 신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正 5位 上 紀朝臣古麻呂를 騎兵大將軍으로 삼았다.[8] <『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2年(705) 11月>

B-③. 癸酉(27일) … 이 날 신라 사신 金儒吉 등이 入京하였다. 이 해에 諸國 중

3) 大寶元年春正月乙亥朔 天皇御大極殿受朝 其儀於正門樹烏形幢 左日像青龍朱雀幡 右月像玄武白虎幡 蕃夷使者陳列左右 文物之儀 於是備矣 戊寅 天皇御大安殿受祥瑞 如告朔儀 戊子 新羅大使薩飡金所毛卒 賻絁一百五十疋 綿九百卅二斤 布一百段 小使級飡金順慶及水手已上 賜祿有差

4) 甲午 對馬嶋貢金 建元爲大寶元年 始依新令 改制官名位号 <『續日本紀』 卷2 文武天皇 5年 大寶 元年(701) 3月>

5) 古記云 御宇日本天皇詔旨 對隣國及蕃國而調之辭 問 隣國與蕃國何其別 答 隣國者唐 蕃國者新羅也 <『令集解』 卷31 公式令詔書式>

6) 李炳魯, 2001, 「『속일본기』의 '신라사절' 기사에 관한 연구」 『日本語文學』 17, 12-15쪽.

7) 丙子 新羅貢調使一吉飡金儒吉等來獻 <『續日本紀』 卷3 慶雲 2年(705) 10月>

8) 己丑 徵發諸國騎兵 爲迎新羅使也 以正五位上紀朝臣古麻呂 爲騎兵大將軍 <『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2年(705) 11月>

20개 지역에 기근과 역병이 생겼다. 아울러 醫藥을 주어서 이들을 賑恤하였다.[9]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2年(705) 12月>

B-④. 丙子 초하루 천황이 大極殿에서 朝賀를 받았다. 신라 사신 金儒吉 등도 대열에 있었다. 朝廷의 儀衛가 평상시와 달랐다. 己卯(4일) 신라 사신이 調를 바쳤다. 壬午(7일) 金儒吉 등에게 朝堂에서 연회를 베풀고 뜰에서 諸方樂을 연주하였다. 官位를 내리고 祿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丁亥(12일) 金儒吉 등이 蕃으로 돌아갔다. 그 왕에게 勅書를 내려 "천황은 삼가 신라왕에게 안부를 묻는다. 使人 一吉飡 金儒吉과 薩飡 金今古 등이 와서 바친 調物은 두루 갖추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는데 바치는 것을 어기지 않고 사신들이 이어서 와 정성이 이미 드러났으니 가상하기 그지없다. 초봄이지만 아직 추우니 병이 없기를 바라며 나라 안이 아울러 평안하기를 빈다. 使人이 지금 돌아가니 앞의 마음을 아뢰고 아울러 土物을 별도와 같이 부쳐 보낸다"고 하였다.[10]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春正月>

B-⑤. 戊午(13일) 신라에서 바친 調를 伊勢太神宮과 7道의 여러 社에 바쳤다.[11]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閏正月>

B-⑥. 이해에 天下 諸國에 역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비로소 土牛를 만들고 크게 구나 의식(大儺)을 행했다.[12]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12月>

B-⑦. 乙亥 諸國의 역병으로 인하여 사신을 보내 大祓을 행하였다.[13]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4年(707) 2月>

B-⑧. 丙申 天下에 역병과 기근이 들었다. 詔를 내려 振恤하였다. 丹波, 出雲, 石見의 3國이 더욱 심하여 諸社에 幣帛을 바쳤다. 또 京畿와 諸國의 사찰에서 讀經을 하게 하였다.[14]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4年(707) 4月>

---

9) 癸酉 … 是日 新羅使金儒吉等入京 是年 諸國廿飢疫 並加醫藥賑恤之 <『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2年(705) 12月>

10) 春正月 丙子朔(1일) 天皇御大極殿受朝 新羅使金儒吉等在列 朝廷儀衛有異於常 己卯(4일) 新羅使貢調 壬午(7일) 饗金儒吉等于朝堂 奏諸方樂于庭 敍位賜祿各有差 丁亥(12일) 金儒吉等還蕃 賜其王勅書曰 天皇敬問新羅王 使人一吉飡金儒吉薩飡金今古等至 所獻調物竝具之 王有國以還 多歷年歲 所貢無虧 行李相屬 款誠旣著 嘉尙無已 春首猶寒 比無恙也 國境之內 當竝平安 使人今還 指宣往意 幷寄土物如別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春正月>

11) 戊午 奉新羅調於伊勢太神宮及七道諸社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閏正月>

12) 是年 天下諸國疫疾 百姓多死 始作土牛大儺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13) 乙亥 因諸國疫 遣使大祓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4年(707) 2月>

14) 丙申 天下疫飢 詔加振恤 但丹波 出雲 石見三國尤甚 奉幣帛於諸社 又令京畿及諸國寺讀經焉 <『續日本紀』卷3 文武天皇 慶雲 4年(707) 4月>

B-①에서 705년 10월에 신라 사신 金儒吉 등이 일본에 도착하자, B-②에서 11월에 諸國의 騎兵을 징발하여 사신을 맞이하였다. B-③에서 이들 사신은 12월에 入京하였는데, 이 해에 무려 20개의 國에서 기근과 역병이 발생하여 醫藥을 주어 賑恤하였는데, 707년 4월까지도 계속 유행하였다.

B-④에서 706년 정월에는 신라 사신이 일본의 원일 조하 의례에 참석했는데, 朝廷의 儀衛가 평상시와 다른 바가 있었다고 한다. 4일에 신라 사신이 調를 바쳤고, 7일에는 이들을 위한 조당 연회에서 諸方樂이 연주되었다. B-⑤에서 신라에서 바친 調를 伊勢太神宮과 7道의 여러 社에 바쳤다. B-⑥에서 706년에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흙으로 빚은 소(土牛)를 이용한 大儺 의식이 처음으로 행해졌다. B-⑦에서 707년 2월에는 역병으로 사신을 보내 大祓을 행했고, B-⑧에서 4월에는 振恤 후 諸社에 幣帛을 바치고 사찰에서 讀經을 하였다.

8세기 이후 唐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당이나 신라 또는 발해로부터 새로운 병원균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여기에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15]

역병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중국 당에서 시작되어 신라나 발해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해진다고 보고 있다.[16] 실제 705년에 역병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 신라사가 왔었던 것이다.

C-①. 甲子(20일) … 從 5位 下 角朝臣家主를 遣新羅使로 삼았다. 丙寅(22일) 신라 사신이 來朝했다.[17] <『續日本紀』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春正月>

C-②. 庚子(27일) 遣新羅使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18] <『續日本紀』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2月>

C-③. 戊申(5일) 신라의 사신 韓奈麻 金長孫 등을 大宰府로부터 불러들였다.[19] <『續日本紀』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3月>

C-④. 壬子(11일) 신라의 사신 金長孫 등 40人이 入京하였다. 庚申(19일) 金長孫 등

15) 이현숙, 2003,「신라 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韓國古代史硏究』31, 210쪽.

16) 이현숙, 2013,「역병으로 본 한국고대사」『新羅史學報』28, 273쪽.

17) 甲子 … 以從五位下角朝臣家主爲遣新羅使 丙寅 新羅使來朝 <『續日本紀』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春正月>

18) 庚子 遣新羅使等拜朝 <『續日本紀』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2月>

19) 戊申 召新羅使韓奈麻金長孫等於大宰府 <『續日本紀』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3月>

이 조정에 배알했다. 여러 가지 財物과 鸚鵡 1마리, 구관조(鵂鶹) 1마리, 蜀狗 1마리, 사냥개 1마리, 당나귀 2頭, 노새 2頭를 바쳤다. 그리고 來朝하는 기한을 奏請했다. 壬戌(21일) 金長孫 등에게 朝堂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詔를 내리기를 "來朝하는 기한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연회가 끝나자 新羅王과 使人들에게 祿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20]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5月>

C-⑤. 丁酉(26일) 신라의 사신이 蕃으로 돌아갔다.[21]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6月>

C-⑥. 辛巳(11일) 遣新羅使 從5位下 角朝臣家主 등이 돌아왔다. 丁亥(17일) 從四位上 多治比眞人廣成을 遣唐大使로, 從五位下 中臣朝臣名代를 副使로 삼았다. 判官이 4人이고 錄事가 4人이었다. 正三位 藤原朝臣房前을 東海·東山 2道의 節度使로, 從三位 多治比眞人縣守르 山陰道의 節度使로, 從三位 藤原朝臣宇合를 西海道의 節度使로 삼았다. 道別로 判官 4人, 主典 4人, 醫師 1人, 陰陽師(占卜을 통해 길흉을 판단하는 관인) 1人이었다.[22]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8月>

C-⑦. 戊午 遣唐大使 從四位上 多治比眞人廣成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 … 癸巳 遣唐大使 多治比眞人廣成이 하직 인사(辭見)를 하였다. 節刀를 주었다.[23]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3月>

C-⑧. 己亥 遣唐船 4척이 難波津에서 출발하였다.[24]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4月>

C-①~⑤를 보면, 일본은 732년 정월에 遣新羅使를 임명하고 2월에 신라로 출발하여 8월에 돌아왔다. 한편, 이와 동시인 732년 정월에 신라 사신이 들어와서 3월에 大宰府에서 출발하여 5월에 入京하였다. 이때 신라 사신이 일본에 가는 횟수를 3년에 한 번으로 정하고 6월에 돌아갔다. 이처럼 당시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진행되고 있었다.

---

20) 壬子 新羅使金長孫等卌人入京 庚申 金長孫等拜朝 進種種財物 幷鸚鵡一口 鵂鶹一口 蜀狗一口 獵狗一口 驢二頭 騾二頭 仍奏請來朝年期 壬戌 饗金長孫等於朝堂 詔 來朝之期 許以三年一度 宴訖賜新羅王幷使人等祿各有差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5月>

21) 丁酉 新羅使還蕃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6月>

22) 辛巳 遣新羅使從五位下角朝臣家主等還歸 丁亥 以從四位上多治比眞人廣成爲遣唐大使 從五位下中臣朝臣名代爲副使 判官四人 錄事四人 正三位藤原朝臣房前爲東海東山二道節度使 從三位多治比眞人縣守爲山陰道節度使 從三位藤原朝臣宇合爲西海道節度使 道別判官四人 主典四人 醫師一人 陰陽師一人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8月>

23) 戊午 遣唐大使從四位上多治比眞人廣成等拜朝 … 癸巳 遣唐大使多治比眞人廣成辭見 授節刀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3月>

24) 己亥 遣唐四船自難波津進發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4月>

또한, C-⑥에서 일본은 732년 2월 신라에 파견한 사신이 8월에 귀국하자마자, 716년의 9차 견당사 이후 16년 만에 10차 견당사를 임명하고 일본 국내의 방위 체제를 갖추기 위해 節度使를 설치하였으며, C-⑦에서 733년 3월에 節刀를 받고 C-⑧에서 4월에 難波津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大使 多治比廣成 및 이후 발해 사신과 함께 귀국한 判官 平郡廣成으로 구성된 遣唐使이다. 이로 보면,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당과의 외교와도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D-①. 丁丑(20일) 入唐大使 從四位上 多治比眞人廣成 등이 多祢嶋에 도착하였다.[25]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6年(734) 11月>

D-②. 癸巳(6일) 大宰府에서 "신라의 貢調使 級伐湌 金相貞 등이 와서 정박하고 있다"고 아뢰었다.[26]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6年(734) 12月>

D-③. 癸卯(17일) 신라의 사신 金相貞 등이 入京하였다. 癸丑(27일) 中納言 正 3位 多治比眞人縣守를 兵部의 曹司에 보내서 신라 사신이 入朝한 뜻을 물었다. 그런데 新羅國이 갑자기 본래의 호칭을 바꾸어 王城國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그 사신을 돌려보냈다(返却).[27]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2月>

D-④. 丙寅 入唐大使 從 4位 上 多治比眞人廣成 등이 唐國에서 돌아와 節刀를 바쳤다.[28]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3月>

D-⑤. 辛亥 入唐留學生 從 8位 下 下道朝臣眞備가 『唐禮』 130卷, 『太衍曆經』 1卷, 『太衍曆立成』 12卷, 해의 그림자를 재는 쇠자(測影鐵尺) 1枚, 銅으로 만든 律管 1部, 方響처럼 생긴 律管의 소리를 옮긴 철(鐵如方響寫律管聲) 12條, 『樂書要錄』 10卷, 끈으로 감아 칠을 한 角弓(絃纏漆角弓) 1張, 馬上飮水漆角弓 1張, 면을 드러내 네 마디에 칠이 되어 있는 角弓(露面漆四節角弓) 1張, 갑옷을 뚫는 화살(射甲箭) 20隻, 끝이 뭉툭한 화살(平射箭) 10隻을 바쳤다.[29]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

25) 丁丑 入唐大使從四位上多治比眞人廣成等來著多祢嶋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6年(734) 11月>

26) 癸巳 大宰府奏 新羅貢調使級伐湌金相貞等來泊 <『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6年(734) 12月>

27) 癸卯 新羅使金相貞等入京 癸丑 遣中納言正三位多治比眞人縣守於兵部曹司 問新羅使入朝之旨 而新羅國輒改本號曰王城國 因玆返却其使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2月>

28) 丙寅 入唐大使從四位上多治比眞人廣成等 自唐國至進節刀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3月>

29) 辛亥 入唐留學生從八位下下道朝臣眞備獻唐禮一百卅卷 太衍曆經一卷 太衍曆立成十二卷 測影鐵尺一枚 銅律管一部 鐵如方響寫律管聲十二條 樂書要錄十卷 絃纏漆角弓一張 馬上飮水漆角弓一張 露面漆四節角弓一張 射甲箭廿隻 平射箭十隻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4月>

(735) 4月>

D-⑥. 庚申 天皇이 북쪽의 松林苑에 나아가서 말타고 활쏘는 것(騎射)을 보았다. 入唐廻使(多治比廣成)와 唐人이 唐國과 新羅의 음악을 연주하고 창술을 보여주었다(弄槍). 5位 이상에게 祿을 내려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壬戌 入唐使로 다시 가르침을 청하러 갔던 秦大麻呂가 『問荅』 6卷을 바쳤다.[30]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5月>

733년 4월에 일본을 출발한 견당사 중 大使 多治比廣成 일행은 734년 11월에 多祢嶋(현재 九州 남쪽 大隅諸島)로 돌아왔으나, 뒤의 4장에서 살펴볼 判官 平郡廣成 일행은 풍랑을 맞아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739년에 발해 사신과 함께 귀국한다.

한편, 734년 12월에는 金相貞 등의 新羅使가 일본 大宰府에 도착하여 735년 2월에 入京하였는데, 入朝의 이유를 묻는 일본 관리에게 자국을 '新羅國'이 아닌 '王城國'으로 소개하였고, 당시 중화 의식에 사로잡힌 일본 조정에 의해 방환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D-⑤에서 735년 4월에 일본의 下道眞備(吉備眞備)는 당에서 가져온 『唐禮』(732년에 완성된 『大唐開元禮』) 130권을 바치는데,[31] 이는 일본이 유교식 외교 형식과 의례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후 신라를 더욱 번국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E 자료는 신라와의 사신 파견 및 大使 多治比廣成의 견당사 도착과 밀접하게 이루어진 역병에 대한 것이다.

E-①. 乙未 "듣건대 요즘 大宰府에 疫病에 걸려 죽은 자가 많다고 한다. 역병의 기운을 구제하고 치료하여 民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는 勅을 하였다. 이에 幣帛을 그 部의 神祇(天神地祇)에게 바치고, 民을 위해 기원하도록 했다. 또 大宰府의 大寺와 別國(대재부가 관할하는 國)의 諸寺에서 『金剛般若經』을 독경하였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역병에 걸린 民을 넉넉히 구휼하게 하고, 아울러 湯藥을 지급했다. 또 長門에서 동쪽에 있는 諸國의 守 또는 介는 齋戒하고 道饗祭祀를 전담하였다. 丙午 大宰府에서 "管內의 諸國에서 疫瘡이 크게 발생하여 百姓들이 모두 병석에 누워 있으니,

30) 庚申 天皇御北松林覽騎射 入唐廻使及唐人 奏唐國新羅樂弄槍 五位已上賜祿有差 壬戌 入唐使獻請益秦大麻呂問荅六卷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5月>

31) 辛亥 入唐留學生從八位下下道朝臣眞備獻唐禮一百卅卷 太衍曆經一卷太衍曆立成十二卷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4月>

올해의 貢調를 정지시켜 달라”고 말하니, 이를 허락하였다.[32]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8月>

E-②. 戊戌(17일) “災變이 자주 나타나고 역병(疫癘)이 끊이지 않으니 天下에 大赦한다”는 詔를 하였다. … 이 해에는 심하게 흉년이 들었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天下가 豌豆瘡[세속에서는 裳瘡이라고 한다]으로 병들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자가 많았다.[33]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閏11月>

E-①에서 735년 8월에는 역병을 막기 위해서 道饗祭를 행했고, E-②의 윤11월에는 大赦를 행했다. 735년 한 해 동안 흉년이 심했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天下가 豌豆瘡으로 병들었고 어린 나이에 죽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앞서 살핀 706년에 土牛를 이용한 大儺 의식이나 735년의 道饗祭는 모두 밖에서 들어온 역병을 막는 제례였다.

F-①. 戊寅(28일) 從 5位 下 阿倍朝臣繼麻呂를 遣新羅大使로 삼았다.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8年(736) 2月>[34]

F-②. 丙寅(17일) 遣新羅使 阿倍朝臣繼麻呂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8年(736) 4月>[35]

F-③. 辛丑(27일) 遣新羅使 大判官 從 6位 上 壬生使主宇太麻呂와 少判官 正 7位 上 大藏忌寸麻呂 등이 入京했다. 大使 從 5位 下 阿倍朝臣繼麻呂가 津嶋에서 정박 중에 죽었다. 副使 從 6位 下 大伴宿禰三中은 病에 걸려 入京하지 못했다.[36]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春正月>

F-④. 己未(15일) 遣新羅使가 “新羅國이 常禮를 잃고 사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5位 이상과 6位 이하의 官人 총 45인을 內裏로 불러

32) 乙未 勅曰 如聞 比日大宰府疫死者多 思欲救療疫氣以濟民命 是以 奉幣彼部神祇 爲民禱祈焉 又府大寺及別國諸寺 讀金剛般若經 仍遣使賑給疫民 幷加湯藥 又其長門以還諸國守若介 專齋戒道饗祭祀 丙午 大宰府言 管內諸國疫瘡大發 百姓悉臥 今年之間欲停貢調 許之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8月>

33) 戊戌 詔 以災變數見 疫癘不已 大赦天下… 是歲 年頗不稔 自夏至冬 天下患豌豆瘡[俗曰裳瘡] 夭死者多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閏11月>

34) 戊寅 以從五位下阿倍朝臣繼麻呂 爲遣新羅大使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8年(736) 2月>

35) 丙寅 遣新羅使阿倍朝臣繼麻呂等拜朝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8年(736) 4月>

36) 辛丑 遣新羅使大判官從六位上壬生使主宇太麻呂 小判官正七位上大藏忌寸麻呂等入京 大使從五位下阿倍朝臣繼麻呂泊津嶋卒 副使從六位下大伴宿禰三中染病不得入京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春正月>

의견을 말하도록 했다. 丙寅(22일) 諸司에서 의견을 알리는 表를 올렸다. 혹은 “사신을 파견하여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고, 혹은 “병사를 보내어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다.[37]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2月>

F-⑤. 壬寅(28일) 遣新羅使 副使 正 6位 上 大伴宿禰三中 등 40인이 조정에 배알했다.[38]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3月>

F-⑥. 乙巳 초하루 사신을 伊勢神宮, 大神社(三輪神社), 筑紫의 住吉·八幡 2社, 香椎宮에 보내 폐백을 바치고 신라의 무례한 상황을 고했다. … 癸亥(19일) 大宰府 管內의 諸國에서 疫瘡이 유행하여 百姓이 많이 죽었다. 詔를 내려 部內의 諸社에 폐물을 바쳐 기원하게 했다. 또, 가난하고 역병이 든 집을 구휼하고, 아울러 湯藥을 지급하여 치료하게 하였다.[39]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夏4月>

G. 남산(종남산) 아래의 흐르지 않는 물속에는 머리가 아홉 개이고 꼬리가 하나인 큰 뱀이 있다. 다른 것은 먹지 않으나, 唐鬼를 아침에 三千을 먹고, 저녁에는 八百을 먹는다. 急急如律令.[40] <「二條大路 呪符 木簡」(737년 추정)>

일본에서 8세기 전반에 크게 유행했던 737년 역병의 경우, 736년에 신라로 일본의 遣新羅使가 파견되었다가 737년에 귀국한 사건과 관련시켜 신라를 역병의 발원지로 보고 있다.[41]

737년 정월에 遣新羅使 중에서 大判官과 少判官은 입경하였지만, 大使인 阿倍朝臣繼麻呂는 귀국 도중 津嶋(대마도)에 정박하고 있을 때 죽었고, 副使 大伴宿禰三中은 병에 감염되어 입경하지 못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견신라사 일행이 신라에 체류하던 시기에 역병이 전염되었고, 귀국길에는 역병이 심각할 정도로 유행한 것으로

37) 己未 遣新羅使奏新羅國失常禮不受使旨 於是召五位已上幷六位已下官人摠卌五人于內裏 令陳意見 丙寅 諸司奏竟見表 或言 遣使問其由 或言發兵加征伐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2月>

38) 壬寅 遣新羅使副使正六位上大伴宿禰三中等卌人拜朝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3月>

39) 乙巳朔 遣使於伊勢神宮 大神社 筑紫住吉 八幡二社及香椎宮 奉幣以告新羅無禮之狀 … 癸亥 大宰管內諸國 疫瘡時行 百姓多死 詔奉幣於部內諸社以祈禱焉 又賑恤貧疫之家 幷給湯藥療之 <『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夏4月>

40) (앞면) 南山之下不流水 其中有一大蛇 九頭一尾 不食餘物 但食唐鬼 朝食三千暮食
(뒷면) 八百 急急如律令 <二條大路 남측 濠狀遺構 SD5100 출토 呪符 木簡>

41) 일본에서 역병은 기본적으로 蕃客(신라인)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특히 737년 역병의 발원지가 신라였다는 인식은 13세기 일본 중세 가마쿠라 시기의 설화집인 『續古事談』과 16세기 무로마치 시기의 類書인 『塵添壒嚢鈔』에도 나타나며, 이는 당시 무사 정권에 의해 한반도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정기웅, 2019, 「고대 일본의 역병과 대응책 연구-737년 역병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6쪽).

볼 수 있다. 4월 19일에는 이미 역병이 대재부에 창궐하여 많은 백성이 죽었다.

이와 관련하여『萬葉集』卷15에는 모두 207수의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736~737년의 견신라사와 관련된 노래가 3578~3722번까지 145수나 되어『속일본기』의 기록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그 목차에는 이 145수의 노래들에 대하여 '736년 丙子 여름 6월 新羅國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사신들이 각기 이별을 슬퍼하면서 주고받은 노래와 海路에서 애통한 나그네의 심정으로 지은 노래'[42]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145수의 노래들은 따로「遣新羅使歌群」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견신라사 일행이 7월 7일 筑紫館에서 天漢(은하수)을 구경한 후에 壹岐嶋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雪連宅滿이 鬼病(역병)으로 사망했다.[43]

이러한『만엽집』의 기록을 참조하면, 736년에 신라로 파견된 견신라사 일행들은 일본 열도를 벗어나기 이전에 이미 역병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견신라사는 역병 감염자들을 포함한 채로 신라로 들어갔으며, 신라를 떠나기 전부터 대사의 병세가 매우 위중했음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737년 역병의 신라원인설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44]

736년 신라에 파견된 일본 사신들은 737년에 성덕왕이 승하한 신라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이 역병에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라 조정과 정상적으로 협상을 벌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들 일본의 遣新羅使는 귀국한 후 신라국이 常禮를 잃고 사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일본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천황이 官人 45인을 궁궐로 불러들여 신라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였고, 사신을 파견하여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과 군대를 보내 정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이후 伊勢神宮, 大神社(三輪神社), 住吉神社, 香椎宮 등에 예물을 바치면서 신라의 무례함을 고하기도 했다. 大神社는 大神大物主神社, 三輪神社라 불리며, 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벌하려 할 때 大三輪神을 筑紫에 청해 기도했더니 군사가 저절로 모였다는 전승이 있는 곳이다. 住吉神社 역시 신공황후가 신라를 정벌할 때 여기에 모신 신들의 도움으로 신라를 칠 수 있었다고 한다. 香椎宮도 仲哀天皇과 신공황후를 祭神으

42) 天平八年丙子夏六月 遣使新羅國之時 使人等各悲別贈答 及海路之上慟旅陳思作歌[幷當所誦詠古歌] <『萬葉集』卷15>

43) 至筑紫舘遙望本鄉悽愴作歌四首 <『萬葉集』卷15 3652>
七夕仰觀天漢各陳所思作歌三首 <『萬葉集』卷15 3656>
到壹岐嶋雪連宅滿忽遇鬼病死去之時作歌一首[幷短歌] <『萬葉集』卷15 3688>

44) 정기웅, 2019,「고대 일본의 역병과 대응책 연구-737년 역병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20-24쪽.

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신사는 대부분 신라 정벌과 관련된 전승을 가지고 있다.[45]

『속일본기』의 737년 역병 관련 기사(정기웅, 2019)

	날짜	내용	역병 대책
1	4月19日	大宰管內諸國 疫瘡時行 百姓多死	詔奉幣於部內諸社以祈禱 賑恤貧疫之家 給湯藥
2	5月19日	詔 四月以來 疫旱並行 田苗燋萎	祈禱山川 奠祭神祇 令國郡審錄冤獄 掩骼埋胔禁酒斷屠賑給 大赦天下
3	6月1日	百官官人患疫	廢朝
4	7月5日	大倭 伊豆 若狹 飢疫百姓	賑給
5	7月10日	伊賀 駿河 長門 疫飢之民	賑給
6	7月23日	詔 比來 天下疫氣多發	大赦天下
7	8月13日	詔 自春已來 災氣遽發 天下百姓死亡實多 百官人等闕卒不少	免天下今年租賦 百姓宿負公私稻爲國家有驗神 悉入供幣之例
8	8月15日	爲天下太平 國土安寧	於宮中一十五處 請僧七百人令轉大般若經 最勝王經 度四百人
9	10月20日	天皇御南苑 授從五位下安宿王從四位下無位黃文王從五位下 円方女王 紀女王忍海部女王並從四位下	
10	是年	是年春 疫瘡大發 初自筑紫來 經夏涉秋公卿以下天下百姓 相繼沒死不可勝計 近代以來 未之有也	

『속일본기』에는 737년 역병으로 사망한 관리들의 명단과 그들의 위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종 5위 하 이상의 관리 92명 중 40%에 해당하는 36명의 관리들이 역병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후지와라(藤原) 4형제도 모두 역병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이후 738년에는 역병에서 살아남은 橘諸兄에 의한 새로운 정권이 성립하였고, 740년에 聖武天皇은 恭仁京으로 천도하였다.

『日本靈異記』上卷 第三緣 道場法師 說話 등에서 역병이 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46] G의 「二條大路 呪符 木簡」은 唐에서 건너온 역병인

45) 스가노노 마미치 외, 이근우 역, 2012,『속일본기』2, 지식을만드는지식, 94쪽.

46) 山口建治, 2016,「瘟神の形成と日本におけるその波紋-オニ(鬼)の發生と怨靈·御靈」『オニ考-コトバでたどる民間信仰』, 邊境社.

唐鬼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73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唐(から)'은 당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을 가리키는 범칭이므로, 唐鬼는 당을 포함한 외국에서 전파된 역병을 가리킨다.

『속일본기』에는 紀伊國(5회), 信濃國(3회), 伊豆國(3회) 등에서 같은 계절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역병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풍토병으로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아 치료약의 지급이나 곡식의 무상 지급(賑給)과 같은 일반적인 구제책만 시행되었다. 그에 비해 737년에는 한 해에 역병 관련 기사가 10회나 등장하고 있어, 일반 풍토병과 다른 대유행병으로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천황은 조서를 내려 대재부가 관할하는 지방의 모든 신사에 폐백을 바치고, 기도하게 하였으며 탕약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역병에 기근과 가뭄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커져 737년 6월경에는 畿內와 東海道 지역까지 역병이 확산되었고, 거의 모든 부서의 관리들이 역병에 감염되어 조정에서 조회조차 열 수 없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平城京도 역병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상으로 곡식 등을 공급하고 대사면을 시행하였으며,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켜 주는 등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산천에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지냈으며, 영험한 신들에게 폐백을 바쳤다. 승려 700명을 불러 궁중의 15개 장소에서 『대반야경』과 『최승왕경』을 읽게 하였고, 400여 명을 일시에 출가시키는 등 토속 신앙과 불교를 포함한 종교적 대책도 실시하였다.

3. 732년 발해-당 전쟁과 발해-신라 관계에서의 재난

H. 지난 乾寧 4년(신라 효공왕 1, 897년) 7월 중에 발해 賀正使인 왕자 大封裔가 牒을 올려, 발해가 신라 위에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삼가 이에 대한 勅旨를 엎드려 살펴보니, "國名의 선후는 본래 강약에 의해서 따져 칭하는 것이 아니다. 朝制의 等威를 어찌 盛衰로 고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舊例대로 할 것이니 이에 宣示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 신이 삼가 살피건대, 발해의 원류는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는 본래 사마귀만한 部落으로 鞨鞨의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번성하여 무리가 이루어지자 이에 粟末이라는 小蕃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고구려 유민을 따라 강제로 內地로 옮겨졌는데, 그 수령 乞四羽, 大祚榮 등은 武后께서 다스리실 때 營州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도주하여 문득 荒丘를 점거하고는 비로소

振國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때 고구려의 遺燼으로 勿吉의 雜流인 梟音은 白山에 嘯聚하였고, 鴟義는 黑水에서 기승을 부리며 처음에는 거란과 함께 악명을 떨치다가, 이어 돌궐과 모의하여 만리 벌판에 곡식을 경작하면서 여러번 遼水를 건너는 수레를 막았으며, 10년 동안 반기를 들고서야 뒤늦게 漢에 항복하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처음 거처할 고을을 세우자 와서 隣接을 청하기에, 처음으로 그 酋長 大祚榮에게 臣蕃의 제5品 벼슬인 大阿餐을 주었습니다. 이후 先天 2년(신라 성덕왕 12, 713)에 이르러 비로소 大朝의 寵命을 받아 渤海郡王에 봉해졌습니다. 이후 점차 皇恩을 입게 되자 어느새 臣蕃과 대등한 예로 대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絳侯와 灌嬰이 열을 같이함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이요, 廉頗와 藺相如가 서로 화목했음은 前誡가 된다 할 것이나, 저 발해는 원래 沙礫의 淘汰物로 본국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늘, 삼가 본분을 지킬 줄을 모르고 오직 위를 범하기만 도모하였습니다. … 저 오랑캐(虜)의 매(鷹)는 배가 부르면 높이 날아가고 … 臣國은 秦官의 極品을 받았고, 저 蕃國은 周禮의 夏卿을 빌었을 뿐인데, 요즘 先朝에 이르러 갑자기 우대의 은총에 젖었으니, 戎狄은 만족시킴이 불가하므로 堯·舜도 오히려 이에는 골치를 앓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滕國의 다툼을 틈타 스스로 葛王의 꾸지람을 취하였으니, 만일 황제 폐하께서 英襟으로 獨斷하시고 神筆로 쭉 그어 비답하시기 않았던들, 槿花鄕(신라)의 염치와 예양이 스스로 침몰하고 楛矢國(肅愼 등에 비견된 발해)의 독기가 더욱 성할 뻔하였습니다.[47] <「謝不許北國居上表」(897)>

H의 崔致遠이 지은 「謝不許北國居上表」에 의하면, 발해가 7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건국 초기에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신라는 酋長 大祚榮에게 大阿餐의 관등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이후 발해가 신라와 대등한 禮에 따라 交涉하려 하니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발해가 본분을 망각하고 上位의 신라를 범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여기서는 발해를 '虜'라고 표현하거나 戎狄에 비유하여 肅愼과 같은 楛矢國이라 부르기도 했다.

---

47) 去乾寧四年(897)七月內 渤海賀正王子大封裔 進狀請許渤海居新羅之上 伏奉勑旨 國名先後 比不引强弱而稱 朝制等威 今豈以盛衰而改 宜仍舊貫 準此宣示者 … 臣謹按渤海之源流也 句驪未滅之時 本爲疣贅部落 鞅羯之屬 實繁有徒 是名粟末小蕃 嘗逐句驪內徙 其首領乞四羽及大祚榮等 至武后臨朝之際 自營州作孽而逃 輒據荒丘 始稱振國 時有句驪遺燼 勿吉雜流梟音則嘯聚白山 鴟義則喧張黑水 始與契丹濟惡 旋與突厥通謀 萬里耨苗 累拒渡遼之轍 十年食葚 晩陳降漢之旗 初建邑居 來憑鄰援 其酋長大祚榮 始授臣蕃第五品大阿餐之秩 後至先天二年(713) 方受大朝寵命 封爲渤海郡王 邇來漸見辜恩 遽聞抗禮臣蕃 絳灌同列 所不忍言 廉藺用和 以爲前誡 而渤海汏之沙礫 區以雲泥莫愼守中 唯圖犯上 … 察彼虜之鷹飽腹而高颺 … 臣國受秦官極品 彼蕃假周禮夏卿 而乃近至先朝 驟霑優寵 戎狄不可厭也 堯舜其猶病諸 遂攀滕國之爭 自取葛王之誚 向非皇帝陛下英襟獨斷 神筆橫批 則必槿花鄕廉讓自沉 楛矢國毒痛益盛 <『東文選』卷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이는 신라가 건국 초기의 발해를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 하였고, 발해가 숙신을 계승한 말갈의 나라로 보았음을 반영한 것이다.[48] 하지만 여기 인용된 당의 勅旨을 살펴보면, 당시 9세기의 융성이 지속되던 14대 大瑋瑎 시기(재위 894~906)였던 발해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신라보다 국력에서 앞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신라는 발해에 밀리는 형세를 실감하였으므로, 당과 신라가 힘을 합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잔당이 발해를 건국한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고, 당과 연합하여 발해를 공격했던 과거의 전쟁도 부각시켜 양국의 오랜 유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49]

渤海는 719년에 대조영이 사망하자 아들 大武藝(武王)가 왕위를 이어받아 '仁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대조영의 시호를 高王이라고 하는 등 독립국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武王 시기인 726년에는 黑水靺鞨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 무왕의 동생 大門藝가 당나라로 망명하게 되면서 唐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I-①. (開元) 20년(732) 武藝가 그의 장수 張文休를 보내어 海賊을 거느리고 登州刺史 韋俊을 공격하였다. 문예를 파견하여 幽州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太僕員外卿 金思蘭을 시켜 新羅에 가서 兵을 징발하여 渤海의 南境을 치게 하였다.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 눈이 한 자 넘게 내려서 병사 중 죽은 자가 반이 넘으니, 마침내 공이 없이 돌아왔다.[50] <『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北狄 渤海靺鞨>

I-②. 가을 7월에 渤海靺鞨이 바다를 건너 登州로 쳐들어오자 唐 玄宗은 太僕員外卿 金思蘭을 귀국하게 하여, 왕에게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를 더 제수하고 군사를 일으켜 靺鞨의 남쪽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마침 큰 눈이 한 자 넘게 쌓이고 산길이 좁고 험하여, 士卒 중 죽은 자가 반이 넘으니 공이 없이 돌아왔다.[5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年(733)>

I-③. 고구려의 유민들이 서로 모여 북으로 太白山 아래에 기대어 나라 이름을 발

48) 전덕재, 2015,「8세기 신라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日本學硏究』44, 43-44쪽.

49) 송기호, 2019,「남북국의 전쟁, 경쟁과 교류」『新羅史學報』45, 10-11쪽.

50) (開元)二十年 武藝遣其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刺史韋俊 詔遣門藝往幽州徵兵以討之 仍令太僕員外卿金思蘭 往新羅發兵以攻其南境 屬山阻寒凍 雪深丈餘 兵士死者過半 竟無功而還 <『舊唐書』 卷199下 列傳149下 北狄 渤海靺鞨>

51) 秋七月 唐玄宗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卿金思蘭歸國 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發兵擊靺鞨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2年(733)>

해라고 하였습니다. 開元 20년(732)에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登州를 갑자기 습격하여 刺史 韋俊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明皇帝께서 크게 노하여 內史 高品·何行成과 太僕卿 金思蘭에게 명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바다를 건너 공격하여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왕 김모에게 더하여 正太尉 持節 充寧海軍事 鷄林州大都督으로 삼았습니다. 겨울이 깊고 눈이 많이 내려 蕃(신라)과 漢(당)이 추위에 고생하므로 회군하도록 칙명하셨습니다.[52] <『三國史記』卷46 列傳6 崔致遠>

I-④.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左領軍衛員外將軍 金忠信이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臣이 받은 명령은 신이 폐하의 符節을 가지고 본국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말갈을 쳐서 없애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황제의 명령을 받은 후부터 장차 목숨을 바치려고 맹세하였습니다. 마침 이때 교대하러 온 金孝方이 죽어 제가 계속 머물러 숙위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본국 왕께서 신이 오랫동안 황제의 조정에 머물러 모셨으므로 從姪 志廉을 사신으로 보내 신과 교대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미 도착하였으니 신은 곧바로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황제의 명령을 늘 생각하여 밤낮으로 잊은 적이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앞서 명을 내려 본국 왕 興光에게 寧海軍大使의 관작을 더하고 旌節을 주어 흉악한 도적을 토벌케 하였으니, 황제의 위엄이 닿는 곳은 거리를 멀어도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니 임금께서 명령하신다면 신이 어찌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꿈틀대던 오랑캐 무리들이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겠지만, 악을 없애는 데는 근본에 힘써야 하고 법을 펴는 데는 새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것은 의리가 세 번의 승리보다 소중하고, 적을 용서하는 것은 근심이 여러 대에 미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신에게 副使의 직을 맡겨주시면 장차 폐하의 뜻을 극진히 하여 거듭 변방의 작은 나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어찌 황제의 힘을 더욱 떨치는 것뿐이겠습니까. 진실로 용맹한 군사들이 기운을 얻어 반드시 적의 소굴을 소통하여 이 거친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신의 작은 정성이 국가의 큰 이익으로 되면, 신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승전보를 대궐에 바치겠습니다. 터럭 같은 노력을 바쳐 비와 이슬의 혜택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폐하께서는 이를 생각해보십시오."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53]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3年(734) 春正月>

---

52)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大白山下 國號爲渤海 開元二十年 怨恨天朝 將兵掩襲登州 殺刺史韋俊 於是明皇帝大怒 命內史高品何行成大僕卿金思蘭 發兵過海攻討 仍就加我王金某 爲正大尉持節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 以冬深雪厚 蕃漢苦寒 勅命迴軍 <『三國史記』卷46 列傳6 崔致遠>

53) 入唐宿衛左領軍衛員外將軍金忠信上表曰 臣所奉進止 令臣執節 本國發兵馬 討除靺鞨 有事續奏者 臣自奉聖旨 誓將致命 當此之時 爲替人金孝方身亡 便留臣宿衛 臣本國王 以臣久侍天庭 遣使從姪志

I-①,②,③에서 발해는 무왕 14년(732) 9월에 張文休 등을 보내 해로로 당의 登州와 萊州를 공격하였고, 육로로 요서 지역의 馬都山까지 진출하였다. 장문휴는 登州刺史 韋俊을 죽이고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에 당은 장수 蓋福順(葛福順)을 보내 격퇴하게 하였다. 733년에는 발해에서 망명한 大門藝를 幽州에 보내 군사를 징발하게 하는 한편, 당에 머물던 신라의 金思蘭을 귀국시켜 신라도 발해의 남쪽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당은 幽州에서 발해의 침입에 맞서고,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발해의 남쪽 경계를 공격하며 서로 호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발해와 당의 전쟁은 양국만이 아니라 新羅가 참전하고 4장에서 살필 일본까지 연결될 수 있는 8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었다. 그러나 733년 말에 이루어졌을 이 발해와 신라·당 연합군의 전쟁은 추운 날씨에 큰 눈까지 겹쳐 공이 없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었다. 신라·당 연합군은 기록 그대로 발해군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는 발해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실을[54] 자연 재해 탓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I-④에서는 734년 정월에 入唐宿衛 金忠信이 다시 신라의 발해 공격을 건의하였고, 당나라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 唐 玄宗에게 올린 表文에서는 발해를 '靺鞨'로 칭하면서 '凶殘', '夷俘'로 표현하면서 적대감을 표시하였고, "반드시 그 소굴을 뒤엎어 먼 변방을 평안케 할 것"이라 맹세하였다. 이에 이 해 초가을에는 당이 신라 왕에게 "경은 마땅히 가까이서 틈을 엿보다가 엄습하여 이를 취하여, 신기한 공로를 이룬다면 큰 상을 주는데 더 무엇을 아끼겠는가?"라고 하면서[55] 발해 공격을 독려하였다. 그런데 734년 김충신의 상표에는 당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신라가 단독으로 적(발해)의 소굴을 소탕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I-④에서 734년에 "꿈틀대던 오랑캐 무리들이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蠢爾夷俘 計已悔禍)"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는 발해와 당이 전쟁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당시 발해와 당의 관계는 733년에 돌궐이 거란과 해를 토벌하기 위해 발해에 보낸 사신을 억류한 후, 大誠慶을 당에 파견하여 이를 알리고 전쟁을 사과하

廉代臣 今已到訖 臣卽合還 每思前所奉進止 無忘夙夜 陛下先有制 加本國王興光寧海軍大使 錫之旌節 以討凶殘 皇威載臨 雖遠猶近 君則有命 臣敢不祇 蠢爾夷俘 計已悔禍 然除惡務本 布憲惟新 故出師義貴乎三捷 縱敵患貽於數代 伏望陛下因臣還國 以副使假臣 盡將天旨 再宣殊裔 豈惟斯怒益振 固亦武夫作氣 必傾其巢穴 靜此荒隅 遂夷臣之小誠 爲國家之大利 臣等復乘桴滄海 獻捷丹闈 効毛髮之功 荅雨露之施 臣所望也 伏惟陛下圖之 帝許焉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3年(734) 春正月>

54) 韓圭哲, 1995,『渤海의 對外關係史』, 新書苑, 194쪽.

55) 卿當隨近伺隙 掩襲取之 奇功若有所成 重賞更何所愛 <『文苑英華』 권471 勅新羅王金興光書1>

면서 화해되기 시작했다. 발해는 당의 포로를 소환하였고, 당도 귀양을 보냈던 발해 사신 大郎雅를 석방하여 귀국시켰다.

신라의 두 번째 발해 토벌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신라는 이를 계기로 당으로부터 패강 이남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56] 平壤州와 牛頭州의 지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57] 이후 신라는 당과 매우 가까워졌고, 당을 침략한 발해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게 된다.

4. 발해-일본 교류에서의 재난과 일본 견당사

발해는 당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 당과 우호 관계에 있던 신라 견제 등의 이유로 727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J-①. 庚寅(21일) 渤海郡王의 사신 首領 高齊德 등 8인이 出羽國에 도착했다. 사신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아울러 계절에 맞는 옷을 내렸다.[58]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4年(727) 9月>

J-②. 丁亥(20일) … 渤海郡王의 사신 高齊德 등 8인이 入京하였다. 丙申(29일) 사신을 보내어 高齊德 등에게 의복과 冠, 신발을 내렸다. 渤海郡은 옛 高麗國이다. 淡海朝廷(天智天皇) 7년(668) 겨울 10월에 唐의 장군 李勣이 高麗를 정벌하여 멸망시켜 그 후로 朝貢이 오랫동안 끊어졌다. 이때에 이르러 渤海郡王이 寧遠將軍 高仁義 등 24인을 보내어 朝聘하게 했는데, 蝦夷의 경계에 도착하여 仁義 이하 16인은 모두 살해되고 首領 齊德 등 8인이 겨우 죽음을 면하여 온 것이다.[59]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4年(727) 12月>

J-③. 庚子(3일) 천황이 大極殿에서 王臣과 百寮 및 발해 사신 등으로부터 朝賀를 받았다. … 甲寅(17일) 천황이 中宮에 나아갔는데 高齊德 등이 그 왕의 敎書와 方物

56) 義忠迴 勅賜浿江以南地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4年(735)>

57) 遣伊湌允忠思仁英述 檢察平壤牛頭二州地勢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5年(736)>

58) 庚寅 渤海郡王使首領高齊德等八人 來着出羽國 遣使存問 兼賜時服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4年(727) 9月>

59) 丁亥 … 渤海郡王使高齊德等八人入京 丙申 遣使賜高齊德等衣服冠履 渤海郡者舊高麗國也 淡海朝廷七年冬十月 唐將李勣伐滅高麗 其後朝貢久絶矣 至是渤海郡王遣寧遠將軍高仁義等廿四人朝聘 而着蝦夷境 仁義以下十六人竝被殺害 首領齊德等八人僅免死而來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4年(727) 12月>

을 바쳤다. 그 교서에 “武藝가 아룁니다. 山河가 다른 곳이고 국토가 같지 않지만 어렴풋이 風教道德을 듣고 우러르는 마음이 더할 뿐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대왕은 天帝의 명을 받아 일본의 기틀을 연 이후 대대로 明君의 자리를 이어 자손이 번성하였습니다. 武藝는 황송스럽게도 大國을 맡아 외람되게 여러 蕃을 함부로 총괄하며, 高麗의 옛 땅을 회복하고 扶餘의 習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또한 아득히 멀어서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길흉을 물음이 끊어졌습니다. 어진 이와 가까이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寧遠將軍 郎將 高仁義, 游將軍果毅都尉 德周, 別將 舍航 등 24인을 보내어 狀을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아울러 담비가죽 300張을 보내어 바칩니다. 토산물이 비록 천하지만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드리는 정성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가죽과 비단이 진귀하지는 않아 도리어 손으로 입을 막고 꾸짖는 데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치를 주장함에는 한계가 있으나 마음을 여는 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어받아 길이 이웃과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高齊德 등 8인에게 모두 正 6位 上을 주고 해당하는 빛깔의 옷을 내렸다. 5位 이상과 高齊德 등에게 연회를 베풀고 大射를 행했으며, 雅樂寮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연회가 끝나자 祿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60]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春正月>

J-④. 壬午(16일) 從 6位 下 引田朝臣蟲麻呂를 送渤海客使로 삼았다.[61]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2月>

J-⑤. 壬午(16일) 齊德 등 8人에게 각각 빛깔이 고운 비단과 무늬있는 비단, 綿을 내렸는데 차등이 있었다. 그 왕에게 내리는 교서에 “천황이 삼가 渤海郡王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啓를 살펴 두루 알게 되었습니다. 옛 땅을 회복하고 옛날의 우호를 다시 닦으니 朕이 기쁘게 여깁니다. 마땅히 어질고 의로운 마음으로 境域을 살피고, 비록 거친 파도가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끊임없이 왕래하여야 할 것입니다. 首領 高齊德 등이 돌아가는 편에 교서와 함께 國信物로 빛깔이 고운 비단 10疋과 무늬있는 비단 10疋, 명주 20疋, 실 100絇, 綿 200屯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송할 사신을 뽑아 귀

60) 庚子 天皇御大極殿 王臣百寮及渤海使等朝賀 … 甲寅 天皇御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幷方物 其詞曰 武藝啓 山河異域 國土不同 延聽風猷 但增傾仰 伏惟大王 天朝受命 日本開基 奕葉重光 本枝百世 武藝忝當列國 濫摠諸蕃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但以天崖路阻 海漢悠悠 音耗未通 吉凶絶問 親仁結援 庶協前經 通使聘隣 始乎今日 謹遣寧遠將軍郎將高仁義游將軍果毅都尉德周 別將舍航等廿四人 齎狀 幷附貂皮三百張奉送 土宜雖賤 用表獻芹之誠 皮幣非珍 還慙掩口之誚 主理有限 披瞻未期 時嗣音徽 永敦隣好 於是高齊德等八人竝授正六位上 賜當色服 仍宴五位已上及高齊德等 賜大射及雅樂寮之樂 宴訖賜祿有差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春正月>

61) 壬午 以從六位下引田朝臣蟲麻呂 爲送渤海客使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2月>

국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점차 날이 뜨거워집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 하였다.[62]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4月>

J-⑥. 庚午(5일) 발해 사신을 전송하는 사신 등이 하직 인사를 하였다.[63]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6月>

J-①에서 발해 사신은 727년 9월에 出羽國에 도착하여 J-②에서 12월에 入京하였다. 발해는 高仁義와 高齊德 등 24인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나, 蝦夷의 경계에 도착하였다가 고인의 등 16인이 살해당하고 고제덕 등 8인만이 살아남아 9월에 出羽國에 상륙하였고, 12월에 수도 奈良에 도달한 것이다. J-③에서 이들은 728년 정월 원일 조하 의례에 참석하고 天皇을 만나 발해의 國書와 信物을 전했으며, 大射를 행하고 雅樂寮의 음악을 들었다. 아악료를 통해 율령 국가로 대표되는 8세기에 '고대 예능=복속 의례'라는 궁정 예능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한다.[64]

이후 발해 3대 문왕(재위 737~793)은 무왕 대무예의 둘째 아들로 737년에 왕위에 올라 '大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즉위 다음해인 738년 6월 당에 사신을 보내 『唐禮』와 『三國志』, 『晋書』, 『三十六國春秋』를 필사하고자 하여 玄宗의 허락을 받았다.[65] 『당례』는 당 玄宗 開元 20년(732)에 완성하여 유교의 五禮를 담고 있는 『大唐開元禮』를 가리키므로, 발해에서 유교에 입각한 국가 규범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발해, 당, 일본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다음 사건이 벌어진다.

K-①. 癸卯(13일) 渤海 사신 副使 雲麾將軍 己珍蒙 등이 來朝했다.[66]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7월>

---

62) 壬午 齊德等八人 各賜綵帛綾綿有差 仍賜其王璽書曰 天皇敬問渤海郡王 省啓具知 恢復舊壤 聿修曩好 朕以嘉之 宜佩義懷仁監撫有境 滄波雖隔 不斷往來 便因首領高齊德等還次 付書幷信物綵帛一十疋 綾一十疋 絁廿疋 絲一百絇 綿二百屯 仍差送使發遣歸鄉 漸熱 想平安好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4月>

63) 庚午 送渤海使使等拜辭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728) 6月>

64) 정진아, 2011, 「일본 고대왕권과 '악(樂)'-아악료(雅樂寮)의 재편 과정을 중심으로」 『日本硏究』 47, 37-40쪽에 의하면, 이 시기 이후 『養老令』에 규정된 일본의 雅樂寮의 관인 구성이 "唐樂師十二人 掌教樂生 高麗百濟新羅樂師准此 樂生六十人"로 기록된 점에서, 唐樂 및 한반도의 삼국악 중심으로 그 체제가 편성된 것으로 보았다.

65) 開元 二十六年 六月二十七日 渤海遣使求寫唐禮及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 許之 <『唐會要』 卷36 蕃夷請經史>

66) 癸卯 渤海使副使雲麾將軍己珍蒙等來朝

K-②. 丙戌(27일) 唐에 갔던 사신 判官 外從5位下 平郡朝臣廣成과 渤海客 등이 入京하였다.[67]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10월>

K-③. 辛卯(3일) 平郡朝臣廣成이 조정에 배알했다. 처음에 廣成은 天平 5년(733)에 大使 多治比眞人廣成을 따라 입당했다. 6년(734) 10월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4척의 배가 함께 蘇州로부터 출발하여 바다로 나갔다. 세찬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서로를 잃어버렸다. 廣成의 배에 탔던 115人은 崑崙國에 표착했는데 賊兵이 와 포위하여 마침내 붙잡히게 되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혹은 살해되고 또는 흩어져 달아났다. 나머지 90여 명은 열병에 걸려 사망했다. 廣成 등 4인은 겨우 죽음을 면하고 곤륜왕을 뵙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 되의 양식을 지급받고 나쁜 곳에 안치되었다. 7년(735)에 이르러 唐國 欽州의 熟崑崙이 있어서 그곳에 도착하였다. 이때 몰래 배를 태워주어서 唐國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학생 阿倍仲滿을 만나 곧 그 사연을 말하여 입조할 수 있게 되어 渤海路를 통하여 귀국할 것을 청했더니 천자가 허락하고 배와 양식을 주어 출발하게 하였다. 10년(738) 3월에 登州에서 바다로 들어가 5월에 渤海 경계에 이르렀다. 마침 그 왕 大欽茂가 사신을 뽑아 우리 조정에 보내려고 하여 함께 출발했다. 풍랑이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건너는데 발해의 배 한 척이 파도에 부딪혀 뒤집어졌다. 大使 胥要德 등 40인이 물에 빠져 죽고 廣成 등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出羽國에 도착하였다.[68]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11월>

K-④. 戊辰(10일) 발해 사신 己珍蒙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 발해 왕의 啓와 方物을 올렸는데 그 啓에 "欽茂가 아룁니다. 山河가 아득히 떨어져 있고 국토 또한 매우 멉니다. 인민을 교화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오직 존경스러움을 더할 따름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천황의 성스러운 예지와 지극한 도덕은 더욱 밝으며 여러 대를 이어 영화로움이 거듭 빛나고 은택이 만백성에게 미쳤습니다. 欽茂는 황송스럽게도 祖業을 이어받아 외람되이 총괄하는 것이 처음과 같습니다. 義를 넓히고 정을 돈독히 하여 매양 이웃과의 우호를 닦아 왔는데 이번에 당신 나라의 사신 廣業(廣成) 등이 풍랑 때문에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 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넉넉하게 대우하며 오는 봄을 기다렸다가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사신 등이 그해 안에 돌아가

67) 丙戌 入唐使判官外從五位下平郡朝臣廣成 幷渤海客等入京

68) 十一月辛卯 平郡朝臣廣成拜朝 初廣成 天平五年隨大使多治比眞人廣成入唐 六年十月事畢却歸 四船同發從蘇州入海 惡風忽起彼此相失 廣成之船一百一十五人漂着崑崙國 有賊兵來圍遂被拘執 船人或被殺或迸散 自餘九十餘人着瘴死亡 廣成等四人 僅免死得見崑崙王 仍給升糧安置惡處 至七年 有唐國欽州熟崑崙到彼 便被偸載 出來旣歸唐國 逢本朝學生阿倍仲滿 便奏得入朝 請取渤海路歸朝 天子許之 給船糧發遣 十年三月 從登州入海 五月到渤海界 適遇其王大欽茂差使 欲聘我朝 卽時同發 及渡沸海 渤海一船遇浪傾覆 大使胥要德等卌人沒死 廣成等卒遺衆 到著出羽國

고자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요청하는 말이 매우 정중하고 이웃 사이의 의리도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서 곧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若忽州都督 胥要德 등을 사신으로 삼아 廣業(廣成) 등을 거느리고 당신 나라에 가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大蟲皮(호랑이 가죽)와 큰 곰가죽 각 7張, 표범 가죽 6張, 인삼 30근, 꿀 3斛을 바치니 그곳에 도착하거든 살펴서 받아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69]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1년(739) 12월>

K-⑤. 戊子 초하루 천황이 大極殿에서 신년 축하 조회를 받았다. 渤海郡의 사신과 新羅學語 등이 행렬에 함께 서 있었다. 단지 깃일산을 받드는 美人은 다시 上衣와 바지를 입었다. 甲午(7일) 渤海郡의 副使 雲麾將軍 己珍蒙 등에게 관위를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그리고 朝堂에서 잔치를 베풀고 渤海郡王에게 美濃의 명주 30疋, 비단 30疋, 실 150絇, 調綿 300屯을 내리고 己珍蒙에게는 美濃의 명주 20疋, 비단 10疋, 실 50絇, 調綿 200屯을 내렸으며 나머지는 각각 차등이 있었다. 庚子(13일) … 또한 外從5位下 大伴宿禰犬養을 遣渤海大使로 삼았다. 癸卯(16일) 천황이 南苑에서 侍臣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百官과 渤海客에게 朝堂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5位 이상에게 摺衣를 내렸다. 甲辰(17일) 천황이 大極殿 南門에 나아가 大射를 관람했는데 5位 이상이 활쏘기를 마치자 渤海 使臣 己珍蒙 등에게 활을 쏘게 했다. 丙辰(29일) 사신을 보내어 客館에 나아가 渤海大使 忠武將軍 胥要德에게 從2位를 주고 首領 無位 己閉棄蒙에게 從5位下를 주었다. 아울러 調布 150端과 庸布 60段을 주었다. 丁巳(30일) 천황이 中宮 閤門에 나아갔는데 己珍蒙 등이 本國樂(발해악)을 연주했다. 帛綿을 내렸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70]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2년(740) 春正月>

K-⑥. 己未 己珍蒙 등이 본국으로 돌아갔다.[71] <『續日本紀』 권13 聖武天皇 天平 12년(740) 2月>

---

69) 十二月戊辰 渤海使己珍蒙等拜朝 上其王啓幷方物 其詞曰 欽茂啓 山河杳絶 國土夐遙 佇望風猷 唯增傾仰 伏惟 天皇聖叡 至德遐暢 奕葉重光 澤流萬姓 欽茂忝繼祖業 濫摠如始 義洽情深 每脩隣好 今彼國使朝臣廣業等 風潮失便 漂落投此 每加優賞 欲待來春放廻 使等貪前 苦請乃年歸去 訴詞至重 隣義非輕 因備行資 卽爲發遣 仍差若忽州都督胥要德等充使 領廣業等令送彼國 幷附大蟲皮羆皮各七張 豹皮六張 人參三十斤 蜜三斛進上 至彼請檢領

70) 十二年春正月戊子朔 天皇御大極殿受朝賀 渤海郡使新羅學語等同亦在列 但奉翳美人更着袍袴 甲午 渤海郡副使雲麾將軍己珍蒙等 授位各有差 卽賜宴於朝堂 賜渤海郡王美濃絁卅疋 絹卅疋 絲一百五十絇 調綿三百屯 己珍蒙美濃絁廿疋 絹十疋 絲五十絇 調綿二百屯 自餘各有差 庚子 … 又以外從五位下大伴宿禰犬養爲遣渤海大使 癸卯 天皇御南苑宴侍臣 饗百官及渤海客於朝堂 五位已上賜摺衣 甲辰 天皇御大極殿南門觀大射 五位已上射了 乃命渤海使己珍蒙等射焉 丙辰 遣使就客館 贈渤海大使忠武將軍胥要德從二位 首領無位己閉棄蒙從五位下 幷賻調布一百十五端 庸布六十段 丁巳 天皇御中宮閤門 己珍蒙等奏本國樂 賜帛綿各有差

71) 二月己未 己珍蒙等還國

K-①,②에서 발해는 첫 사신 파견 이후 12년 만인 文王 3년(739)에 若忽州都督胥要德, 雲麾將軍 己珍蒙 등 80여 명을 발해에 와있던 遣唐使 平郡廣成 등과 함께 일본에 파견하면서 관계를 재개하였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배 한 척이 침몰하여 大使 胥要德 등 40인이 물에 빠져 죽고 부사 己珍蒙과 平郡廣成 등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出羽國에 도착하였다.

K-③의 平郡廣成 보고문에서는 발해가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기회를 만나 발해사와 함께 귀국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마치 일본의 견당사가 발해에 들어오기 전에 발해가 일본에 사절을 파견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廣成 등은 이에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K-④의 渤海國王 文王 大欽茂의 國書에서는 발해사의 파견이 발해에 와있던 견당사 平郡廣成의 호송에 있었다고 밝혔다.

7세기까지 일본이 대륙으로 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한 항로는 한반도 서안을 경유하여 산동반도에 이르는 안전한 北路였다. 그런데 율령 국가를 만든 이후인 702년 大寶의 견당사부터는 험한 南路나 南島路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개 신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693년 이후 신라의 탐라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8세기 전반까지는 오히려 신라와 일본의 우호 관계 속에서 백제로를 변형한 남로라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72] 7세기 말~8세기 초의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의 견당사 항로는 기존의 북로에서 재난의 위험이 훨씬 많은 남로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72) 강은영, 2018,「7세기 후반 일본의 耽羅使 파견 의의와 對中交通路의 변화」『新羅史學報』 44, 215쪽.

일본에서 多治比廣成이 大使, 平郡廣成을 判官으로 한 遣唐使도 733년 4월 難波津을 출발하여 瀨戶內海에서 博多를 거쳐 동지나해를 횡단하여 蘇州에서 長安으로 향하는 南路로 입당하였다. 이들은 대당 외교를 마치고 734년 10월에 蘇州를 출발한 4척의 배로 귀국을 시도하였으며, 앞서 살핀 D-①에서 多治比廣成 일행은 11월에 多祢嶋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하지만 K-③에서 平郡廣成 등이 탔던 배는 풍랑을 만나 115人이 남쪽 崑崙國(林邑의 남쪽)에[73] 표착하였는데, 이들은 賊兵에 살해되고 달아나고 열병에 걸리기도 하여 판관 平郡廣成을 포함한 4명만 생존하였고, 결국 이곳을 탈출하여 화남 연안에서 활약하던 상선을 이용한 해로를 거쳐 735년에 다시 장안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당시 당에 오랫동안 유학하고 있던 阿倍仲滿의 도움으로 渤海路를 통하여 귀국할 것을 청하여 당 현종의 허락을 받아 배와 식료를 보급받아 다시 귀국하게 되었다.

이에 738년 3월에 산동반도 登州를 출발하여 5월에 渤海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압록강을 거슬러 泊灼城에서 발해 영토로 들어와 발해 文王에게 귀국을 청했고, 문왕 대흠무는 다음해 봄을 기다려 이들을 귀국시키려고 했지만, 平郡廣成이 연내 출발을 강하게 원해 귀국을 서둘렀기 때문에 발해 사신 서요덕 등을 送使로 대동하여 일본으로 귀국시킨 것이다.

平郡廣成의 발해로를 이용한 일본 귀국에 대해서는, 발해 문왕이 당 현종의 명을 이행하여 환심을 사고, 당의 책봉을 받은 제후로 발해와 일본 천황과 동등하다는 입장을 어필하려 했다는 견해가 있다.[74] 하지만 이 사건은 일본의 견당사 平郡廣成의 요청에 의해 발해로를 선택하여 당 현종의 허락을 얻은 것이므로, 필자는 앞장에서 살핀 당시 발해-신라-당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일본이 신라로가 아닌 발해로를 선택한 사실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해 사신 胥要德과 平郡廣成 일행이 일본으로 출발한 시점에 대해서는 738년 5월 이후에 발해 왕도를 출발하였지만 도중에 동해상에서 태풍으로 조난을 당해 발해 땅에서 월동한 이후 73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재출발하였고, 이들이 出羽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739년 7월 13일에 일본 왕경에 도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75] 그렇다면 平郡廣成 일행은 이미 당에서 귀국하다가 곤륜국에 표착하여 고생

---

73) 自林邑以南 皆拳髮黑身 通號爲崑崙 <『舊唐書』 卷197 列傳147 南蠻 西南蠻 林邑國>

74) 赤羽目匡由, 2018,「新羅·渤海からみた日本」『古代日本と興亡の東アジア(田中史生編 古代文學と隣接諸學 1)』, 竹林舍, 63쪽.

75) 平郡廣成 일행이 738년 3월에 산동반도 登州를 출발하여 5월에 渤海界에 이르렀고, 平郡廣成이 연내 일본 귀국을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발해 사신 서요덕 등을 送使로 대동하여 함께 귀국시켰

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도래 시기에 굳이 다시 귀국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여기서 平郡廣成 일행이 발해 문왕의 의견대로 봄을 기다려 739년에 귀국하지 않고 재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738년에 서둘러 귀국하려던 이유에 대하여, 필자는 이들이 발해의 신년 의례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발해 사신을 일본의 신년 의례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문왕이 봄을 기다려 귀국하라고 한 발언도 발해의 신년 의례에 일본 사신을 참여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당시 발해와 일본이 모범으로 삼았던 당에서 행해진 賀正 의례가 황제와 관료간 군신 관계, 황제와 각 州·蕃夷의 정치적 종속 관계를 재생산하는 의례였다는 점에서, 신년 의례에 蕃夷의 사절을 참여시켜 拜賀하는 것은 국가의 왕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76] 그렇다면, 발해와 일본 사이의 외교에서 서로의 천하관 경쟁이 험한 자연 재난도 무릅쓰게 한 것이다.

K-⑤에서 결국 발해 사신은 新羅學語와[77] 함께 740년의 元日 朝賀 의례에 참여하였다. 이 신년 의례에 발해 사신이 新羅學語와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당시 신라와 일본 사이에는 외교 마찰이 심화되어 사신이 방환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이자 통역관으로 볼 수 있는 新羅學語가 일본 왕경에서 발해 사신과 함께 신년 의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단순히 발해를 신라와 언어가 통하는 나라로 보아 新羅學語를 함께 대동했을 수도 있겠지만,[78] 이보다는 발해를 신라와 같은 번국으로 여겨 천황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신년 의례에 함께 참여시킨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는데도 불구하고 739년 7월 13일에 이르러서야 일본 出羽에 도착했다는 기록의 해석 문제에 대한 일본 학계의 연구사 정리는 赤羽目匡由, 2018,「渤海使の被災—渤海使胥要德一行の事例をめぐって—」『東研』3 참조.

76) 이 시기 신라·발해·당·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를 신년 의례를 통해 살핀 이장웅, 2020,「신년 의례를 통해 본 8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신라·발해·당·일본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신라사학보』49 예정 참조.

77)『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9(681)年 冬11月조에는 신라에서 沙飡 金若弼, 大奈末 金原升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말을 익히는 자 세 사람이 함께 왔다는 기사가 있으며,『續日本紀』卷23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4年(760) 9月 癸卯조에는 신라가 級飡 金貞卷을 사신으로 보내면서 學語 2人을 함께 보내는 기사가 있다. 이로 보아 언어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신라에서 일본에 파견된 학생으로 보인다.
新羅譯語金正南申云 聞遣揚州掘港難過 今旣踰白水疑踰掘港歟 <『入唐求法巡禮行記』卷1 開成 3年(838) 6月 28日>에 의하면,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할 때 新羅譯語를 대동하였고, 그는 통역 역할만이 아니라 도착지의 해양 지리 정보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78) 趙二玉, 2003,「8世紀 中葉 日本의 遣唐使와 渤海」『韓國思想과 文化』20, 186-187쪽.

특히 정월 17일에는 일본 천황이 大極殿 南門에서 大射를 관람할 때 발해 사신 기진몽이 활을 쏘았는데, 『養老令』 雜令에 의하면 大射禮는 정월 중순에 궁중에서 친왕 이하 위계를 가진 모든 신하가 활을 쏘는 의례로, 천황에 대한 군사적 수호와 의례 질서를 구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30일에는 己珍蒙 등이 천황 앞에서 本國樂(발해악)을 연주하기도 했다.

727년과 739년의 발해 사신은 모두 두만강 하구인 동경용원부 휘하의 鹽州(크라스키노)에서 출발하여 겨울의 북서 계절풍을 이용한 북회 항로로 出羽 등 北陸 지방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회 항로를 이용한 것은 발해 이전 연해주의 말갈족과 북해도의 蝦夷가 교섭한 역사적 경험이 고려되었지만, 蝦夷 집단과의 교류라는 목적도 있었다고 하며,[79] 이는 발해가 군신 관계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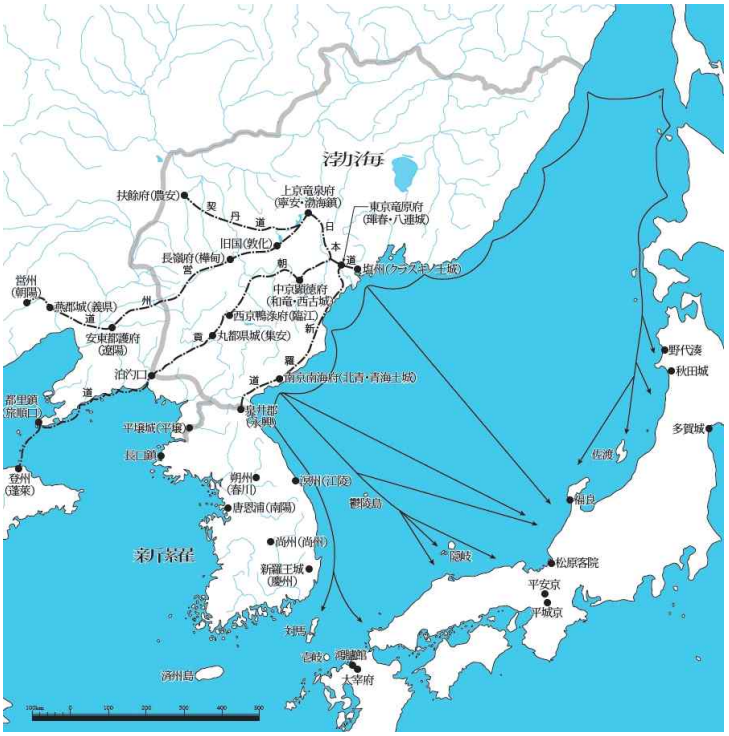

발해와 일본의 첫 교류인 727년에 蝦夷에서 발해 사신 일행 중 16명이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39년의 사신 파견도 이 지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발해가 일본의 무리한 군신 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

79) 김창석, 2010, 「8세기 渤海의 對日 항로와 蝦夷」 『아시아문화』 26.

80) 김종복, 2011, 「8세기 발해·일본간의 사신 왕래와 외교 현안」 『高句麗渤海研究』 41, 198쪽.

하다고 본다. 곧, 발해는 당시 일본에서 '夷'로 여기던 이 지역 蝦夷와의 관계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①. 壬戌(24일) 발해 사신 揚承慶 등이 서울에 들어왔다.[81] <『續日本紀』 卷21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759) 12月>

L-②. 戊辰 초하루 大極殿에서 신년 축하 조회를 받았는데 文武百官과 高麗蕃客 등이 儀禮에 따라 절하고 축하했다. 庚午(3일) 천황이 임석한 가운데 고려 사신 揚承慶 등이 方物을 바치고 아뢰기를 "高麗國王 大欽茂가 아룁니다. 일본에서 八方을 비추던 聖明皇帝께서 天宮으로 升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슬프고 추모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輔國將軍 揚承慶과 歸德將軍 揚泰師 등을 보내어 表文과 常貢의 物品을 갖고 가서 入朝하게 하였습니다"라 하였다. 조를 내리기를 "高麗 國王이 멀리서 先朝가 天宮으로 升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揚承慶 등을 보내 위문하였다. 이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다만 歲月이 이미 바뀌어 나라는 吉禮를 따르므로 禮相로 응대하지 않겠다. 또한 옛 마음을 잊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다. 힘써 정성을 다하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라 하였다. … 乙酉(18일) 천황이 軒에 나아갔다. 高麗大使 揚承慶에게 正3位를, 副使 揚泰師에게 從3位를, 判官 馮方禮에게 從5位下를 주었다. 錄事 이하 19인에게는 각각 차등이 있었다. 國王과 大使 이하에게 祿을 내렸는데 차등이 있었다. 5位 이상과 蕃客 및 主典 이상에게 朝堂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女樂을 무대에서 공연하고 內教坊의 踏歌를 뜰에서 연주하였다. 客 중 主典 이상이 뒤를 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綿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丙戌(19일) 內裏에서 활쏘기를 하였는데 客을 불러 함께 쏘게 했다. 甲午(27일) 大保 藤原惠美朝臣押勝이 田村의 집에서 蕃客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勅으로 內裏의 女樂과 함께 綿 1만 屯을 내렸다. 當代의 文士들이 시를 지어 送別하였는데 副使 揚泰師도 시를 지어 이에 화답하였다.[82] <『續日本紀』 卷22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春正

81) 壬戌 渤海使揚承慶等入京 <『續日本紀』 卷21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2年(759) 12月>

82) 戊辰朔 御大極殿受朝 文武百官 及高麗蕃客等 各依儀拜賀 庚午 帝臨軒 高麗使揚承慶等貢方物 奏曰 高麗國王大欽茂言 承聞 在於日本照臨八方聖明皇帝 登遐天宮 攀號感慕 不能默止 是以 差輔國將軍揚承慶歸德將軍揚泰師等 令齎表文幷常貢物入朝 詔曰 高麗國王遙聞先朝登遐天宮 不能默止 使揚承慶等來慰 聞之感通 永慕益深 但歲月旣改 海內從吉 故不以其禮相待也 又不忘舊心 遣使來貢 勤誠之至 深有嘉尙 … 乙酉 帝臨軒 授高麗大使揚承慶正三位副使揚泰師從三位 判官馮方禮從五位下 錄事已下十九人各有差 賜國王及大使已下祿有差 饗五位已上 及蕃客 幷主典已上於朝堂 作女樂於舞臺 奏內教坊踏歌於庭 客主典殿已上次之 事畢賜綿各有差 丙戌 內射 喚客 亦令同射 甲午 大保藤原惠美朝臣押勝宴蕃客於田村第 勅賜內裏女樂幷綿一萬屯 當代文士賦詩送別 副使揚泰師作詩和之 <『續日本紀』 卷22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春正月>

月>

L-③. 戊戌 초하루 高麗王에게 내리는 칙서에 “천황이 삼가 高麗 國王에게 묻노라. 사신 揚承慶 등이 멀리 滄海를 건너 와서 國憂를 弔問하고 정성을 은근하게 표시하니 아픈 마음이 더해진다. 다만 때에 따라 禮를 바꾸는 것이 聖賢들의 通規이다. 吉한 것에 따라 새로운 것을 행하니 다시 남은 일이 없다. 아울러 보내온 信物은 숫자대로 잘 받았다. 이에 돌아가는 사신에게 토산 비단 40疋, 美濃 명주 30疋, 실 200絇, 綿 300屯을 보낸다. 특히 그대의 충성스러움이 훌륭하여 다시 은혜를 더하여 비단 4疋, 兩面 2疋, 무늬있는 비단 4疋, 흰 비단 10疋, 채색 비단 40疋, 白綿 100帖을 내린다. 물품이 비록 가볍고 적으나 담은 마음은 진실로 깊으니, 이르면 모두 잘 받으라. 國使(일본이 파견한 사신단)에 붙어 와서 타고 갈 배가 없다. 이에 한 사람의 사신을 뽑아 本蕃으로 돌려보낸다. 다시 그대 나라에서 大唐에 도달하여 前年에 入唐했던 大使 藤原朝臣河淸을 맞이하고자 하니, 알아서 서로 도와야 할 것이다. 남은 추위가 물러가지 않았다. 왕은 평상시와 다름없으리라 생각한다. 글은 보내지만 뜻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라 하였다. … 癸丑(16일) 揚承慶 등이 蕃으로 돌아갔다. 高元度 등도 또한 따라서 갔다.[83] <『續日本紀』 卷22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2月>

L-①,②는 758년에 발해가 揚承慶 등 23인을 일본에 파견한 기록이다. L-③에서 일본 조정은 752년에 입당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견당사 藤原河淸의 호송을 위하여 당에 사신을 파견할 계획을 말하고 발해사에게 보호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 740년 이후 758년에도 일본 견당사의 발해로를 통한 귀국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당시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 발해가 일본의 견당사 호송과 같은 중계적 역할을 하고 일본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관계로 파악하기도 한다.[84]

이러한 기록의 이면을 통해, 자신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밖에 없는 발해와 일본의 실제 위상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본다.

---

83) 戊戌朔 賜高麗王書曰 天皇敬問高麗國王 使揚承慶等遠涉滄海 來弔國憂 誠表慇懃 深增酷痛 但隨時變禮 聖哲通規 從吉履新 更無餘事 兼復所貽信物 依數領之 卽因還使 相酬土毛絹卌疋 美濃絁卅疋 絲二百絇 綿三百屯 殊嘉爾忠 更加優 賜錦四疋 兩面二疋 纈羅四疋 白羅十疋 彩帛卌疋 白綿一百帖 物雖輕尠 寄思良深 至宜竝納 國使附來 無船駕去 仍差單使送還本蕃 便從彼鄉達於大唐 欲迎前年入唐大使藤原朝臣河淸 宜知相資 餘寒未退 想王如常 遣書指不多及 … 癸丑 揚承慶等歸蕃 高元度等亦相隨而去<『續日本紀』 卷22 廢帝 淳仁天皇 天平寶字 3年(759) 2月>

84) 趙二玉, 2002,「8세기 중엽 渤海와 日本의 關係」『韓國古代史硏究』 25.

5. 마무리

동아시아는 당을 중심에 두고 신라, 발해, 일본이 당의 유교를 경쟁적으로 받아들여 각자의 천하관을 마련하면서 서로의 외교 관계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천하관에 입각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에 본고는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 사이에 외교 경쟁 중에 벌어진 재난의 양상을 통해 이들 외교 관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2장은 신라-일본의 교류에서 『속일본기』와 『만엽집』을 중심으로 역병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3장은 732년 발해-당 전쟁에 신라도 말려들면서 벌어진 겨울의 자연 재난 기사의 의미에 대하여 중국과 신라의 기록을 통해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4장에서는 발해-일본 교류에서 여름 재난 기사가 지닌 의미와, 일본 견당사의 재난을 엮어 그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에 대한 토론문

송 영 대 (건국대)

이 발표문은 8세기 전반이라는 시간과 신라·발해·일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외교와 재난이라는 주제로 당시 상황을 분석한 글입니다. 수많은 사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점이 돋보이며, 기존에 ‘사건 중심’으로 인식되던 것을 ‘재난’이라는 요소를 강조하여 살펴본 점이 눈에 띕니다. 재난을 통해 8세기 초의 외교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발표문을 읽고 부족하지만 발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사항 혹은 의문 사항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표문 2페이지 2번째 문단에서는 700년과 701년의 신라-일본 교류 기사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를 읽다가 문득 의문이 든 점이 신라에서 파견한 신하가 8~10등급, 일본에서는 從5位 下 또는 正6位 上이 대부분이므로, 신라에서 파견한 사신의 관등이 일본에서 파견한 사신보다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신라의 17관등과 비교하여 당시 일본의 위계가 어떠하였는지, 또한 신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 높고 낮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전염병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창궐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때문에 8세기 전반의 역병이 당과 신라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B-③에서는 신라사의 入京과 20개의 國에서 기근과 역병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함께 보입니다. 다만 이전부터도 신라에서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B-①을 보았을 때 신라가 일본에 도착한 것은 705년 10월로 나옵니다. 12월에 입경한 것과 별개로 20개 國에서의 기근과 역병 발생은 705년 전체 정황을 12월 기록에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705년 당시 역병이 신라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해졌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737년 역병의 신라원인설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당시 상황으로 유추할 때 어느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역병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

그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 3장의 9~10페이지에 제시된 사료 H는 최치원의 글로,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참고할 수 있는 사료이기에 논문에 인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최치원이 발해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각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와 하대라는 시간적 차이, 재당유학생 출신에서 중국적인 시각의 반영 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발해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최치원의 설명 중 어느 부분까지 신뢰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4. 16페이지에서 보면 일본이 702년부터 항로를 南路 혹은 南島路를 이용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신라와의 관계 약화 혹은 백제로를 변형한 새로운 항로 개척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7페이지에서 일본 사신들이 서둘러 귀국하려는 이유가 발해 사신들을 자신들의 신년 의례에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서로의 신년 의례에 참여시킨 사례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논지가 강화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5. 이번 발표문의 2장에서는 신라-일본의 관계와 역병, 3장에서는 발해-신라의 관계와 겨울 재난, 4장은 4장에서는 발해-일본의 관계와 여름 재난이라는 양상에 집중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즉 2장은 사회재난으로서 질병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3장과 4장은 자연재난으로서 기후 문제를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장에서는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재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록별로 분류를 하고, 각 장별마다 재난의 차이점과 의의를 부여하여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6. 8세기 전반 동북아시아의 재난과 관련하여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전염병의 창궐이나 폭설, 태풍이 기후변화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유사한 시기에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대로 역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발표문에서의 연구대상이 폭 넓은 만큼 중국이나 일본의 환경사 연구를 반영한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災祥異常說에서 본 董仲舒의 天人感應論과 生態文明觀

- 생명공동체의 경계에 착안하여 -

김 연 재 (공주대)

〈 목차 〉

1. 문제의식의 제기: 동아시아의 文明觀 ····· 57

Ⅱ. 災祥異常說과 생태주의의 視界 ····· 58

Ⅲ. 天人感應論과 생명공동체의 世界 ····· 60

Ⅳ. 陰刑陽德論과 생태문명의 境界 ····· 68

Ⅴ. 문제해결의 실마리: 문명의 지속가능성 ····· 74

• 토론문 / 이병욱 ····· 75

1. 문제의식의 제기: 동아시아의 文明觀

최근에 기후의 이상현상과 맞물려 돼지열병,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이 지구촌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현대에는 자연생태계의 순환적 자정능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만 하면 지속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친 낙관론과 달리 인간의 문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 생존 자체에 대한 비관론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적 문제는 자연계의 법칙상 자연스레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자초한 것인가? 자연의 생태적 환경에 관한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재이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미신의 문제인가? 신념의 문제인가? 미신이든지 신념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상고시대에 문명이 진화하는 과정은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서 형성된 통일적 질서에 따라 세상을 경계짓는 프리즘의 시선에서 설명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성이나 시대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환점으로서의 '문명의 도약'은 바로 특정의 프리즘을 통해 삼라만상의 스펙트럼을 투사한 거시적 차원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周代 이후에 天下의 질서의식 속에서 이루어내었던 '문명의 도약'은 그 당연한 결과였으며 漢代에 大一統의 공동체의식은 그 결실이었다. 이처럼 천하의 질서의식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 문명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생태주의의 視界 속에서 災祥異常說의 강령을 고찰하고 현대적 대환란의 문제의식을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동중서의 天人感應論이 생명공동체의 차원에서 大一統의 천하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의 災異論의 논점이 궁극적으로 그의 新儒學의 합목적론적 지평, 즉 陰刑陽德論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현대의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生態主義的 文明觀(Ecologismic View of Civilization)에서 조명될 수 있다.

생태주의적 문명관이란 자연계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인식론적 실천력의 신조를 문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삼는 시각이다. 이는 바로 인간이 自强不息의 율동을 자연계의 生生不息의 율동과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고 자연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災祥異常說과 생태주의의 視界

우선, 동아시아의 세계관에서 재이의 현상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현상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인간의 삶에서 재이의 현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적 통치 혹은 사회적 의식의 차원에서 중시되었다. 특히 재이의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제에서 그 규모성과 영향력 때문에 사회의 공동체의식과 결부되었다. 재이의 현상에 대한 인식에 미신의 성격이나 신비주의의 색채를 지닌 것과는 별개로 그 원인이나 결과는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 특히 그의 덕성과 연관되었다. 왜냐하면 군주는 국가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재이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나 대처는 기본적으로 문명의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적 노선에서도 고려되었다.[1)]

중국 고대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 중의 하나는 天[2)]의 개념과 그 성격이다. 천은 인간의 삶에서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삶을 계도하고 개척하는 데에 생명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및 가치론적 관념의 결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천의 개념은 대체로 자연적 天과 인격적 天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천이 무목적적이고 무의지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에 인격적 천은 목적적이고 의지적인 성격을 지닌다. 전자가 생명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후자는 생명의 가치론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巫術이 점차로 세속적 왕권의 체계로 흡수되면서 특히 周代부터 자연적 天은 上帝와 그가 지배하는 모든 天上 및 신령의 세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인격화된 도덕적 天으로 확장되었다.[3)] 그것은 是非, 善惡 등의 인간의 행위를 분별할 줄 알며 인간의 내면적 덕성에 따라 勸善懲惡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은 단순히 왕조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주나라는 君權神授와 같은 대의명분의 확고한 권위를 세우고자 했다. 주나라 사람들은 천명에 반드시 일정한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주왕조가 징벌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주 개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왕조의 합법성을

1) 재이의 현상을 관측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전문기구를 세웠으며 또한 재이의 현상을 참조하여 인간의 삶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천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 자연적 상태의 천으로서 天地 혹은 天然의 천을 가리킨다. 둘째, 최고의 人格神으로서 皇天 혹은 天命의 천을 가리킨다. 셋째, 자연의 이법 혹은 사물의 법칙으로서 天道 혹은 天理의 천을 가리킨다. 張立文,『中國哲學範疇發展史(天道篇)』(北京: 中國人民大學, 1989), 64-66쪽.

3) 艾蘭,『龜之謎 - 商代神話、祭祀、藝術和宇宙觀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10),「附錄: 商周時期的上帝、天和天命觀念的起源」, 231-233쪽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정당성은 인격 혹은 덕성과 같은 도덕성으로 귀착되었다. 여기에 천명관의 본령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경』의 「우하서」에 있는 고도모(皐陶謨)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하늘이 총명한 것은 우리 백성이 총명한 것에서 나오고 하늘이 밝고 두려운 것은 우리 백성이 밝고 위엄있는 것에서 나오니 위와 아래를 통달하는 것이다. 공경함에 토가 있다.[4)]

여기에서 上天 혹은 천명은 이론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지니지만 절대적인 최고의 지상신(至上神)의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통치의 권력으로서의 군주가 民心이나 民意를 따를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덕성은 인간사회에서 天人의 관계와 같은 공동체의식과 그에 따른 인간 자신에 대한 각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여기에서 天은 인격적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연계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그 주위의 모습을 투사한 프리즘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함축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삶의 절실한 체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삶의 歷程을 채워나간다. 인간은 평생 이러한 삶을 이해하고 개선하거나 개척하려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인격적 천과 같은 프리즘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터전(공간의 점유성)을 시의적절하게(시간의 유동성) 개척해 가는 자아실현의 지속적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 天과 관련한 천명관에서 보자면, 인간과 자연(天)은 내재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여긴다. 내재적 관계란 인간이 자연계에서 생명의 속성, 성격, 현상 등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그 자체에 생명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삼라만상의 성질들이나 속성들 사이의 관계를 성립한다. 자연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은 자연과 서로 생명의 본질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생태적이다. 생태의 가치는 자연계에 있는 生生不息하는 생명의 율동에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의 외재적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특정의 내재적 관계를 감지하고 체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5)] 이른바 도덕적 天은 바로 이러한 내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

4)『書經』, 「虞夏書」: 天聰明, 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威, 達於上下. 敬哉有土.

5) 이 관계는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이 있다. 전자의 관계가 물리학적, 생물학적, 지리학적 등의 성격을 지닌다면 후자의 관계는 인식론적, 생태학적 등의 성격을 지닌다. 그 양자 중에서 내재적 관계가 더 근본적이고도 더 중요하다. 喬清擧, 『儒家生態思想通論』, (北京： 北京大學, 2013), 21-24쪽

사이에 조화와 화합의 가치는 인격적 天으로 조명된다. 이러한 天의 단면이 투사된 인간의 관점이나 신념을 바로 生態主義의 視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주의의 視界는 숙명론(fatalism)이나 결정론(determinism)과 다른 차원을 지닌다. 현실의 세계는 필연과 우연의 상관성 속에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복잡다단한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까닭인 것이다. 여기에는 숙명론이나 결정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을 사회공학적으로 보자면, 현실적 실재에서 인간은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갖는가? 아니면 자연과 유기체적인 삶을 갖는가? 친화성과 유기체성은 서로 연관되면서도 서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 속에서 후자를 이해하는 반면에 후자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를 발휘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전적 유토피아의 세계처럼 인간이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다. 후자의 경우에 陰陽과 五行으로 특징짓는 생명공동체의 세계처럼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안정의 역동적 과정을 진행하는 삶이다. 전자의 방식에서는 삶의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일정한 틀 안에 묶어놓는다. 후자의 경우에는 삶의 다양성을 통일시키는 역동적 유동적인 관계를 이룬다.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는 서로 폐쇄되고 고립된 닫힌 체계(closed system)만을 지니거나 혹은 서로 완전히 개방적인 열린 체계(open system)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는 일정한 위계적 질서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일종의 자생적 유기적 질서를 지닌다. 이러한 자생적 질서의 구조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체계를 형성한다. 인간사회에서 경제 혹은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은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접근된다. 자연의 보전과 경제의 발전 사이에 상충이나 모순 사이에 확대재생산의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생태주의의 視界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태주의적 文明觀도 조망되는 것이다.

Ⅲ. 天人感應論과 생명공동체의 世界

한무제 때에 동중서의 天人三策이 채용되고 文帝와 景帝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유가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한무제 때에 통치적 질서를 확보하는 데에 동중서가 건의한 天人三策이 채택되면서 유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이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今文經學, 黃老學, 天人感應說, 元氣說, 陰陽五行說 등이 서로 관련되면서 공자와 맹자를 필두로 하는 先秦시대의 原始的 유술과는 다른 새로운 유술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이러한 新儒學은 '문명의 도약'[6]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재이설은 재이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의식의 세계와 관련된다. 천(天意)과 인(人意)의 내재적 관계와 관련한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재이설이다. 재이설은 한대의 유가에서 『주역』, 『상서』, 『춘추』 등의 경전에 의탁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신념의 산물이다.[7] 西漢시대에는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을 크나큰 기조로 하여 재이설은 유가의 통치이념과 맞물리게 되었다.[8] 한대의 재이설은 세 가지 여건을 갖추어 문화의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 가지 여건은 재이설 자체의 이론, 儒術의 위세의 확충 및 한왕조의 쇠퇴이다. 元帝 이후에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었다.

재이의 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혹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정치적 혹은 사회적 맥락을 달리하였다.[9] 당시에 재이의 현상은 天人관계에 따른 공동체의식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관점은 재이의 현상을 행위에 앞서 미리 예고하는 흉한 징조(凶兆)로 보기도 하고 또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허물이 되는 징조(咎徵)[10]으로 구분될 수 있다. 占卜의 예언과 徵兆의 해설에 재이의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담겨있다. 그 내용상 數術, 儒術 및 그 양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 양자를 종합해보면, 재이의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대체로 失政을 판단하고서 징조를 찾아서 그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學의 영역에서도 천과 인의 관계를 토대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나 예언은 한갓 수단에 불과하고 궁극적 목적은 덕성의 정치, 즉 仁政

---

6)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왔던 견해는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축의 시대(Axial Period)'이다. 그는 인간의 역사에서 문명의 분수령을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시기로 본다. 이 시기에 서양, 중국, 인도의 문화권에 거의 동시에 일종의 '문명의 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성과 정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 500년 전후에 철학, 과학, 종교 등의 영역에서 개척과 계도의 전환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7) 재이설은 춘추시대부터 등장하였으며 문헌적으로 『좌전』, 『국어』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漢代의 재이설은 주로 『漢書』의 「五行志」에 수록되었다.

8) 유술의 정치적 문화와 관련하여 재이설은 크게 春秋學과 洪範學에서 유래된다. 전자는 『춘추』의 내용과 현실적 재이의 현상을 연관시키는 역사적인 類比的 논증을 통한 방법이다. 후자는 『상서』의 「홍범」편에 있는 五行, 五事, 休咎의 징조 및 五福와 六極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재이의 현상을 논하고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의 기초가 되었던 반면에 후자는 劉向과 劉歆의 재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9) 陳侃理, 『儒學、數術與政治災異的政治文化史』(北京: 北京大學, 2016), 175-189쪽

10) 이 용어는 『尙書』의 「洪範」편에 나오는 말이다. 그것은 休徵과 반대되는 말이다.

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음양과 오행의 범주를 활용하여 五德終始說, 三統說, 卦氣說, 讖緯說 등을 설파한 내용이 일종의 재이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재이설의 이론은 天意와 人意의 관계에 따른 문명의 목적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흐름을 지닌다. 術數의 길흉화복의 측면과 유가의 도덕윤리의 측면이다. 그 양자의 관계는 절체절명의 숙명론이나 因果관계의 결정론과 연관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하게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주위의 생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재이의 문화는 현대사회의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생태주의적 문명관에서 조명될 수 있다.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이러한 삶의 방식의 結晶體이다. 그것은 자연계와 인간사회 사이에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천인감응론의 성격은 바로 災祥異常說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사회를 자연계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할 삶의 조감도와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올바름'의 의무론적인 성격과 '좋음'의 목적론적인 성격을 둘다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재이설[11]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재이설은 天象, 天意 및 인간의 관계에서 기초한다. 그가 추종했던 『춘추공양전』에는 재이의 현상이 상천의 경고라는 관념을 피력한다. 여기에는 天 혹은 天意에 대한 不可知論的 경외감을 피력했을 뿐이지 재이의 현상과 인간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관성을 유가의 재이론으로 이념화시킨 인물이 바로 동중서이다. 그는 재이의 현상을 실마리로 하여 天意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失政과 天災地變에는 因果의 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숙명론이나 결정론의 성격을 지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생태주의적 문명관에서 접근될 수 있다.

유술은 재이의 문화 속에서 통치의 權術과 같은 神道設教의 강령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명관을 설파하였다. 신도설교는 성인이 백성을 계도하거나 교화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신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문화적 입장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설교라는 말에는 유가의 正道가 함축되어 있다. 「단전」에서는 괘사를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1) 『漢書』의 「藝文志」에 있는 數術略편에서는 고대의 수술과 관련한 재이의 현상에 관한 많은 저서들이 소개되어 있다.

> 하늘의 신묘한 道를 살펴 四時가 어긋나지 있으니 성인이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베푸니 천하가 굴복한다.[12)]

여기에서 신도는 신령의 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한 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말에서 신령의 종교성이나 신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사회에서 음과 양의 범주처럼 복잡다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관한 현실적 질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과 양이 예측되지 않는 것을 일러 신묘함이라고 한다"[13)]고 말한다.

천과 인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에 그 연결고리는 神道設教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神道設教의 내용에는 현실적 삶에서 자각의식에 따른 주체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天道의 신앙적 성격을 극복하고 人道의 현실적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天下經綸의 원리가 있다. 만약 儒術의 취지가 人道設教에 있다면 數術의 취지는 天道設教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양자의 사이에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에 신도설교의 논점이 있다. 그것은 유술의 합목적론적 지평, 즉 윤리학적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대의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생태주의적 문명관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가의 正道는 神道設教의 강령에 따라 治統(政統)과 道統의 내용[14)]을 지닌다. 예학의 문화가 붕괴되기 전에는 군주의 통치적 권위가 확고하므로 치통과 도통은 일치하였다. 西周의 왕조가 멸망하고 禮樂의 문명도 쇠퇴하였다. 禮崩樂壞의 춘추전국시대가 초래하였다. 諸子學이 형성됨에 따라 사대부의 계층은 전통적 문화를 전승하는 道의 계승자를 자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치통과 도통은 분리되어 치통은 권세를 지닌 군주의 전유물이 되었던 반면에, 도통은 예악문화를 전승하는 사대부의 전유물이 되었다.

유술에서 실재의 세계에서 재이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나 태도에는 특정의 가치나 의식이 있다. 재이현상에 대한 믿음은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 왕조의 흥망성쇠, 民意의 수용 등과 같은 현실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漢代에 董仲舒가 유가학설의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논하면서 재이설을 도입하여 天權과 君權의 관계에서 天權으로써 君權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12) 『周易』, 「彖傳」, 觀卦: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13) 『周易』, 「繫辭上傳」: 陰陽不測之謂神.

14) 余英時, 『朱熹的歷史世界 - 宋代士大夫政治文化的研究』(北京: 三聯書店, 2011), 7-35쪽

>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 술책이 있다. 그 첫째로 말하면, 군주가 도로써 다스리고 신하가 보조하여 충심을 다할 수 있으며 만물이 모두 그 본성을 따른다면, 화합적인 기가 감응하여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국가가 편안하다. 그 둘째로 말한다면, 군주가 그 도를 위배하고 소인인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서민이 항상됨을 잃으면 어긋난 기가 감응하여 허물의 징후가 나타나고 국가가 망한다. 그 셋째로 말하자면, 인군과 대신이 재이를 보고서 물러나서 스스로 반성하고 신체를 나무라고 덕성을 닦아서 함께 다스리며 과오를 보충하면 환란이 줄어들고 복이 이르게 된다.[15]

여기에서 춘추시대부터 기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재이현상에 주목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 과오를 고치고 덕성을 함양하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늘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의 내재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내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에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실천의 통합, 즉 세계를 파악하는 과정과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 만나는 지평이 있다. 이는 자연의 이법과 사회의 법칙 사이에 대립, 모순, 상충, 갈등을 넘어서 해소, 화해, 조화, 통일로 전환되는 최적화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현실적 세계에서 어떻게 대립과 모순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통일과 조화의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대립과 통일, 모순과 조화의 불확정적인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통합의 확정적 관계로 고양되는지의 문제이다.

자연의 이법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자연현상의 근원 혹은 본원은 元氣로서 음과 양의 變通的 과정, 사계절의 주기적 순환, 오행의 상관적 분포로 나타난다. 그는 오행의 순환적 방식, 오관의 인지적 방식 및 그 양자의 관계를 통해 세계의 통일적 질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자연의 이법에 의거하여 인간사회가 통치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동중서는 한무제가 국가의 시책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는 데에 춘추공양학의 논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국가에 장차 도를 잃는 패배가 있을 경우에 하늘은 우선 재해를 나오게 하여 견제하고 알리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모르면 또한 괴이한 것을 내어 경고하고 두렵게 하며, 오히려 (상황이) 변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손상과 실패가 마침내 이르게 된다.[16]

---

15) 『晉書』 27권, 「五行志序」: 綜而爲言, 凡有三術. 其一曰, 君治以道, 臣輔克忠, 萬物咸遂其性, 則和氣應, 休徵效, 國以安. 二曰, 君違其道, 小人在位, 衆庶失常, 則乖氣應, 咎徵效, 國以亡. 三曰, 人君大臣見災異, 退而自省, 責躬修德, 共禦補過, 則消禍而福至.

여기에는 천도와 인도 사이에 음양과 오행의 기가 흐른다는 맥락에서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여기에는 인도의 문제를 천재지변과 같은 천도의 방식과 연관시키는 내용은 한대의 세계관, 즉 元氣說, 특히 음양과 오행의 기와 관련한 공동체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군주의 악행을 연관시켜 자연현상의 계시를 통해 인간사회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찾으려는 취지를 지닌다. 여기에는 현대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생태주의적 공동체의식이 담긴 문명관의 논법이 담겨있다.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한대의 세계관, 특히 우주생성론의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다. 우주생성론은 우주의 본원인 元氣로부터 음양의 기가 파생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본원과 분화의 관계는 공동체의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생명의 연결망을 토대로 하는 자연의 이법과 그에 따른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생태적 환경에서 正氣의 정상적인 順流와 같은 선순환적 구조와 邪氣의 비정상적인 逆流와 같은 악순환적 구조가 있다. 생명에 관한 자연의 理法에 접근하는 방식은 자연과학적이기보다는 자연철학적 성격이 강하다. 자연철학적 성격에는 공동체의식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는 사회적 제도 국가의 법령, 도덕적 人倫, 심지어 천하의 經綸 등의 관념적 내용을 포함한다.

동중서는 天人感應論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陰陽五行說과 災異祥瑞說을 양 날개로 부착하였으며 또한 천하의 經綸으로 飛翔하기 위해 공양학의 정신으로 무장하였다. 특히 그의 '天下의 經綸'의 구동력에는 陰과 陽의 방식에 따른 經權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즉 처벌의 형법은 음의 방식에 입각하고 덕성의 교화는 양의 방식에 입각하여 서로 보완하는 방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관점은 통치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통치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다.

동중서의 재이설은『춘추』의 내용과 현실적 재이의 현상을 연관시키는 역사적인 類比的 논증을 통한 방법이다.[17] 그는 천상이 재이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군주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의 삶이란 天意에 위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재이의 현상을 통해 추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18] 예를 들어,『漢書』의 「五行志上」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무제 建元6년에 遼東지방에서 발생한 高廟의 화재나 張陵지방에서 발

16) 班固,『漢書』56권, 「董仲舒傳」: 國家將有失道之敗, 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驚懼之, 尙不知變, 而傷敗乃至.

17) 예를 들어, 뉴턴이 정말 나무에서 사과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을까? 뉴턴의 이야기는 일종의 신화성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방식은 바로 類比的 논증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그 사건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을 상징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다.

18) 陳侃理,『儒學、數術與政治災異的政治文化史』(北京: 北京大學, 2016), 46-48쪽

생한 高園便殿의 화재에 관해 동중서는 天意와 정권을 연관시켰다. 『춘추번로』의 「止雨」편과 「求雨」편에는 재이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의 방법으로서, 음과 양의 관계를 조절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하늘의 뜻 혹은 의지는 節氣나 時令의 주기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賞罰, 政令 등의 군주의 권력행사는 절기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 심지어 희로애락의 정서까지도 여기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재이의 근본은 모두 국가가 正道를 잃는 데에서 생겨난다."[19]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대략의 부류는 하늘과 땅의 사물에는 항상되지 않은 변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변이라고 말한다. 작은 것은 재난이라고 말한다. 재난은 항상 먼지 도달하고 이변이 이를 따른다. 재난이란 하늘의 견책이고 이변이란 하늘의 위엄이다. 견책하나 알지 못하면 두렵게 하여 위엄을 발휘한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하늘을 두려워하는 위엄은 거의 이를 말한다.[20]

災와 異의 현상은 天意와 관련된 재난과 이변의 의미를 지닌다. 그 양자는 失政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小와 大, 先과 後의 차이가 있다. 재난은 다가올 상황의 조짐을 은연 중에 드러낸 자연의 현상이다. 이변은 재난의 현상을 보고서 다가올 일을 예언한 다음에 그 예언이 실현된 결과이다. 재난이 天意의 경고성을 암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이변은 天意의 위엄이 인간에게 실행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변은 재난보다 더 직접적이고도 강도가 높은 것이다.

음양재이설은 災異의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을 통해 사건의 전조를 통해 군주에게 경고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이 자체가 '하늘의 뜻의 인(天意之仁)'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재이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 군주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위해서가 아니라 하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통치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을 잘 다스려 한다는 취지가 더 강한 것 같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재이로써 천의를 나타내는데, 천의에는 의도하는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는 것이란 사람이 안으로 스스로 성찰하여 마땅히 마음속에 징계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 그 일을 자세히 살펴서 마땅히 나라에 증험해야 한다. 그러므로 천의를 드러내는 것은 재이에 있고 두려워해도 싫어하지 않으니, 하늘이 우리의 과오를 밝히고 우리의 과실을 구제하므로 이로써 나에게 보답한다.[21]

---

19) 『春秋繁露』, 「必仁且智」: 凡災異之本, 盡生於國家之失.

20) 『春秋繁露』 제30권, 「必仁且智」: 其大略之類, 天地之物, 有不常之變者, 謂之異, 小者謂之災, 災常先至, 而異乃隨之. 災者, 天之譴也, 異者, 天之威也, 譴之而不知, 乃畏之以威. 詩云, 畏天之威. 殆此謂也.

춘국전국시대부터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이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흉한 조짐으로 여겼다. 한문제가 동중서에게 요청한 天人三策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동중서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 천이 인간에게 자성하고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징조이며 심지어 인간에 대한 仁愛의 호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이 재이의 현상을 내리지 않는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재이의 현상을 하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징표로 본 것이다.

동중서는 재이의 현상을 단순히 자연의 현상들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천이 仁愛을 표하는 일련의 과정에 속한다고 본다. 만약 정치나 정책에 과오나 실수가 있으며 천이 그에 반응하여 재이를 내려보내서 깨우치게 하여 그것들을 개정하거나 구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춘추공양전』의 내용을 시대정신에 맞게 이념화한 것이다. 천재가 군주의 실정을 천재지변과 연관시킴으로써 인간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우연성의 문제를 因果의 관계와 같은 필연성의 문제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그는 大一統의 시대적 과제 하에서 유가의 이념화를 추구하고 공동체적 의식 속에서 문명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에서 '목적의 이념화'와 '이념의 목적화'를 지향한 것이다.

동중서의 재이설은 천인감응론의 기저에서 생명력의 유기체의 방식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생명체의 공동체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계의 현상적인 측면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계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즉 인간사회와 자연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삶의 방식은 자연의 질서에 입각한 인간의 규범적 질서와 관련된다. 재이설은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 속에서 규범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며 그 결과 자연의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열린 체계의 인간사회를 닫힌 체계의 자연계를 어떻게 교감하고 조정하고 화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교감, 조정 및 통합의 흐름 속에 생존의 공감력이 확충되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확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재이설은 유가의 문명관,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 생태주의적 문명관의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다.

---

21) 『春秋繁露』 제30권, 「必仁且智」: 謹案: 災異以見天意. 天意有欲也, 有不欲也. 所欲, 所不欲者, 人內以自省, 宜有懲於心, 外以觀其事, 宜有驗於國, 故見天意者之於災異也, 畏之而不惡也, 以爲天欲振吾過, 救吾失, 故以此報我也.

Ⅳ. 陰刑陽德論과 생태문명의 境界

동아시아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역량에 힘입어 문명의 세계를 개척해나갔다. 문명의 정도는 현실적인 限界와 이상적인 境界 사이의 거리감을 얼마나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인식과 실천을 통해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끊임없이 지향하는, 결코 완결되거나 완성되지 않는 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과정이다. 이는 대립, 모순, 상충, 갈등을 넘어서 통일, 조화, 해소, 화해로 전환되는 최적화된 자기창조적 삶이다. 이는 渾沌으로부터 開闢으로 진화해가는 동아시아적 특수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는 漢代에 유가의 사상이 통치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기존의 무질서로부터 새로운 이념을 개창하여 새로운 통일적 질서를 모색해가는 儒家의 사회적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국가의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천하의 經綸'의 프리즘을 통해 大一統의 지속가능한 경계를 지향하는 과업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우선, 당시에 한무제는 춘추전국시대와 진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역대로 왕조가 5년을 주기로 하여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데에는 크게 우려한다. 그는 이것이 천명이 결정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의식하고 "재이의 변고가 어떠한 인연으로 발생하는가(災異之變, 何緣而起)"를 묻는다. 이에 동중서는 재이의 현상을 음양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는 군주의 실정이나 악덕은 음과 양의 정상적인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보고 음과 양이 화합하지 못한 상태가 재이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 형과 벌이 적중하지 않으면 사악한 기를 낳고 사악한 기가 아래로 쌓이면 원망과 악함이 위에 쌓인다. 위와 아래가 화합하지 못하면 음과 양이 얽혀 어그러지니 요상한 잡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재이가 인연이 되어 생겨난 까닭이다.[22]

한대에 동중서는 삶의 인과관계를 통해 당대에 발생한 재이의 현상을 사회적 교화 혹은 계몽의 취지하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의 문제로 귀결시켰다. 여기에서 재이의 현상은 음과 양의 기가 조성하는 자연계의 비정상적 모습이다. 그는 음양설로써 『춘추』의 재이현상을 조명하고 유가의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였다. 재이설은 음양과 오행의 방식에 따른 자연적 질서에 기초한다. 인간의 일은 반드시 자연의

22) 『漢書』, 「董仲舒傳」: 刑罰不中, 則生邪氣. 邪氣積於下, 怨惡畜於上. 上下不和, 則陰陽繆盭而嬌孽生矣. 此災異所緣而起也.

변화, 즉 주기적 순환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이의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당시에 인간은 자연철학적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神聖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敎養, 祭祀, 儀禮 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후대에 동중서가 주창한 이른바 '大一統'과 같은 한층 더 높은 의식의 차원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른바 '大一統'의 자각의식은 『춘추공양전』에서 나온다. "왜 왕과 정월에 관해 말하는가? 대일통이다."[23] 대일통은 진시황의 통일 이후로 동중서 등이 천하의 질서의식을 대변하는 구호가 되었다. 『춘추』에 담긴 大一統의 사상에 관해 동중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춘추』에서 대일통이란 하늘과 땅의 항상된 법칙이고 고금의 통용되는 올바름이다.[24]

대통일이란 바로 불변의 正道를 가리킨다. 그는 국가의 大一統을 유지하기 위해 군주의 전제주의를 통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했다. 이는 秦代와 漢代 이후로 2,000여년 동안 유교사회에서 봉건적 국가관의 대의명분이 되었다.

大一統의 봉건적 사회에서 보자면, 군주의 권한의 문제는 동중서에게 道義와 正義는 기본적으로 天命과 聖王의 관계에 기본한다. 그는 春秋學의 강령이 天道의 변화, 즉 음과 양의 消息盈虛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후대의 군주, 즉 한왕조의 새로운 왕이 天意에 따라 聖王의 道義를 되새기고 스스로 내면적 덕성을 닦으며 국가의 혼란을 바로 잡고 正義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중서는 재이설을 활용하여 형벌에 의한 통치보다는 도덕적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통치에서 재이설은 대의명분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재이설은 지속가능한 문명을 향하는 일종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생태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생태주의란 자연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인간사회를 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늘과 땅의 항상됨은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이다. 양이란 하늘의 덕이고 음이란 하늘의 형이다. 음양을 따라 세의 행적을 마쳐서 하늘이 친하여 맡기어진 것을 관찰한다.[25]

---

23) 『春秋公羊傳』, 「隱公元年」: 何言乎王正月? 大一統也.

24) 『漢書』, 「董仲舒傳」: 春秋大一統者, 天地之常經, 古今之通誼也.

25) 『春秋繁露』, 「陰陽義」: 天地之常, 一陰一陽. 陽者, 天之德也, 陰者, 天之刑也. 跡陰陽終歲之行, 以

천도의 크나큼은 음과 양의 관계에 있다. 양은 덕성이고 음은 형법이다. 형법은 죽음을 주관하지만 덕성은 목숨을 주관한다. 음으로 하여금 아래로 들어가 시의적절하게 나와 양을 보좌한다. 양이 음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또한 홀로 세를 이룰 수 없다. 양을 마무리하는 데에 세를 이루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러므로 중화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덕이 크게 왕성하고 중화로써 그 몸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목숨이 천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26]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지닌 中和의 氣가 道德의 원천이 된다. 이는 음양의 원리와 四時의 현상에 입각하여 만사만물의 법칙뿐만 아니라 도덕적 내용과 가치조차도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인간의 인식의 지평에는 하늘과 인간의 동질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재이설의 본질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일종의 문명의 지혜가 있다. 즉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서 어떻게 인륜의 규범적 가치를 모색할 수 있는가 내용이 담겨있다. 인간은 자연현상의 주기적 변화에 따라 삶의 원칙을 만들어가고 天下의 통일적 질서를 확립한다. 그렇다면 문명의 지혜는 바로 삶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꾸려갈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방식이란 인간사회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서 주체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禮樂의 제도를 확립하고 陰刑陽德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론적 범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양은 덕성이고 음은 형벌이다. 형벌이 덕성으로 되돌아가서 덕성에 따르는 것도 權의 부류이다. 비록 권을 말할지라도 모두 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양은 따름에서 행해지고 음은 거스름에서 행해진다. 거스름이 행해지나 따르고 따름이 행해지나 거스르는 것이 음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음을 권으로 여기고 양을 경으로 여긴다.[27]

음과 양의 범주를 인간사회의 법칙, 특히 덕성과 형벌에 적용한 것이다. 양은 세상의 이치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성질이라면 음은 세상의 이치가 거꾸로 흘러가는 성질이다. 그는 음과 양의 범주를 經과 權의 사회공학적 강령[28]으로 확장한다. 經이

觀天之所親而任.

26) 『春秋繁露』, 「循天之道」: 是故能以中和理天下者, 其德大盛. 能以中和養其身者, 其壽極命.

27) 『春秋繁露』 권43, 「陽尊陰卑」: 陽爲德, 陰爲刑, 刑反德而順於德, 亦權之類也, 雖曰權, 皆在權成. 是故陽行於順, 陰行於逆. 逆行而順, 順行而逆者, 陰也. 是故天以陰爲權, 以陽爲經.

28) 도덕의 실천에서 經道가 원칙의 강령이라면 權道는 응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칙과 응용의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유가의 윤리적 판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변의 원리라면 權은 운용이 원리이다. 음은 권에 속하고 양은 경에 속한다. 反經行權의 방식에 따르면, 따름과 거스름의 관계는 사회를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원리로서 권의 방식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음과 양의 범주를 통해 자연계의 순환적 질서와 인간사회의 규범적 질서를 연관시킨다.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음과 양의 조화가 가 무너지면 그것이 인간사회의 공동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三綱五倫과 같은 인륜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인간 삶의 존재론적 문제를 공동체의 가치론적 문제로 확충한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의 질서로서의 天道가 규범적 질서로서의 天道로 바뀌었던 것이다.[29] 즉 自然의 구조를 토대로 하여 人倫의 공동체의식을 확보한다. 즉 사회공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陽尊陰卑의 존재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陽德陰刑의 가치론적 사고를 확립하였다. 여기에 생태주의적 문명관의 취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는 모두 하늘이 양을 가까이 하고 음을 멀리하는 것이고 덕을 크게 하고 형을 작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하늘이 가까이 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하늘이 멀리하는 것을 멀리한다. 하늘이 작게 하는 것을 작게 하고 하늘이 크게 하는 것을 크게 한다. 그러므로 천수는 양을 우측으로 하지 음을 우측으로 하지 않는다. 덕에 힘쓰고 형에 힘쓰지 않는다. 형에 맡기어져 세상을 이루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음에 맡기어져 세를 이루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치를 하는 데에 형에 맡기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왕도가 아니다.[30]

동중서의 재이설의 관점은 사실과 가치의 관계와 관련한 판단의 문제가 개입된 것이다.[31] 특정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인식과 판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식과 행위의 불일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에서 사실의 판단과 가치의 판단에 주목하게 된다. 사실의 판단은 인간이 경험적 사실을 인식하여 판단하는 것이라면 가치의 판단은 인간이 이러한 인식에 대한 행위의

29) 陳侃理,『儒學、數術與政治災異的政治文化史』(北京: 北京大學, 2016), 54-55쪽

30) 『春秋繁露』, 「陽尊陰卑」: 此皆天之近陽而遠陰, 大德而小刑也. 是故人主近天之所近, 遠天之所遠, 大天之所大, 小天之所小. 是故天數右陽而不右陰, 務德而不務刑. 刑之不可任以成世也, 猶陰之不可任以成歲也. 爲政而任刑, 謂之逆天, 非王道也.

31) 일반적으로 판단에는 사실의 판단(judgement of fact)과 가치의 판단(judgement of value)이 있다. 전자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개입한 것이다. 또한 가치의 판단에는 공리적 판단(practical judgement)과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이 있다. 전자는 길흉과 같은 이해적 관계의 여부에 따른 판단이라면 후자는 선악과 같은 주체적 의식 혹은 의지의 여부에 따른 판단이다. 그 양자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서로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

적합성이나 타당성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다. 인간이 건전한 삶을 영위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진다면 길흉화복의 이해관계는 선악의 가치로 고양될 수 있다. 즉 선악의 '공리적 판단'이 윤리도덕의 강령과 같은 보편적 가치로 고양되면 이것이 바로 '도덕적 판단'인 것이다.

한대의 초기에 동중서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은 왕조의 합법성과 통치의 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특히 皇權의 지배를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통일적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이를 윤리적 제도를 확립하는 양면적 정책이 중요하였다.[32] 이를 위해 새로운 이념이 요청되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천하의 大一統'의 질서의식으로 표출되었는데 이는 道義의 정통성과 正義의 정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道義의 정통성은 한왕조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皇權이 어떻게 聖王의 권위를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正義의 정당성은 통치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新王이 덕행을 우선할 것이지 혹은 형벌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그 양자의 과제는 밀접하게 맞물려 국가의 經綸의 통치적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동중서의 사상의 기저에는 天人의 관계, 특히 하늘의 의지와 군주의 도덕성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그는 군주의 실정에 관해 災異說이 하늘의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수단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의 태도에 따라 하늘의 의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人道가 天道의 변화, 즉 음과 양의 消息盈虛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후대의 군주, 즉 한왕조의 새로운 왕이 天意에 따라 聖王의 道義를 되새기고 스스로 내면적 덕성을 닦으며 국가의 혼란을 바로 잡고 正義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왕이 하려는 것이 있으려면 마땅히 하늘에서 그 단초를 찾아야 한다. 천도의 크나큼은 음과 양에 있다. 양은 덕성이고 음은 형벌인데, 형벌은 죽임을 위주로 하고 덕성은 생명을 위주로 한다. …… 이로써 하늘이 덕성을 맡는 것이지 형벌을 맡지 않는 것임을 보는 것이다.[33]

천도의 원리는 음과 양의 방식에 따르며 음양의 방식은 바로 자연계에서 춘하추동의 사계절의 순환, 특히 겨울과 여름의 양 끝단에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과 양의 속성은 인간의 세계에서 형벌과 덕성으로 나타난다.

---

32) 吳龍燦,『天命, 正義與倫理 - 董仲舒政治哲學研究』, 44-50쪽

33)『漢書』, 「董仲舒傳」: 然則王者欲有所爲, 宜求其端於天. 天道之大者在陰陽, 陽爲德, 陰爲刑. 刑主殺而德主生. …… 以此見天之任德不任刑也.

동중서의 陰刑陽德論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늘의 의지와 군주를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옹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災異의 현상은 천과 인의 관계에서 군주의 태도에 따라 "이로써 하늘의 마음은 군주를 사랑하여 그 혼란을 그치게 하고자 함을 안다."[34] 그는 한편으로 봉건적 綱常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한편, 천의 의지를 거쳐 봉건적 군주의 행위를 제한하려 했으며 군주들이 천의 의지에 따라 경륜의 통치를 실현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는 모두 하늘이 양을 가까이 하고 음을 멀리하는 것이고 덕을 크게 하고 형을 작게 하는 것이다. …… 형에 맡기어져 세상을 이루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음에 맡기어져 세를 이루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치를 하는 데에 형에 맡기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王道가 아니다.[35]

군주는 책임과 의무는 실제로 상천의 의지(天意)와 백성의 의지(民意) 사이에 미묘한 잣대가 시행되고 있다. 漢代에는 元氣說의 기조 하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미묘한 관계를 가늠하는 규준의 기제, 즉 저울대의 눈금, 추의 무게 및 저울질이 있다. 저울대의 눈금은 천의나 민의이고 추의 무게는 군주의 덕성이고 저울질은 음양과 오행의 기이다. 災異 혹은 祥瑞의 현상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중적인 최적화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즉 음양과 오행의 기의 유통 속에서 天意에 따라 民意를 반영하기도 하며 민의에 따라 천의를 투영하기도 한다. 음양과 오행의 기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감응의 방식을 두고 이러한 기의 변화가 군주의 덕성이 좋고 나쁨에 따라 일어난다. 즉 上天의 의지(天意)가 부여했던 군주의 권리가 陰陽五行의 氣를 통해 역으로 災異의 현상 혹은 祥瑞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향의 과정에서 세계의 실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실천이 통합되는 생태주의적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문명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중서는 재이의 현상에 대한 의식을 인격의 내면적 세계로 끌어들여 실천의 역량으로 발휘토록 한 것이다. 유가의 공동체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방법과 목적의 연속선상에 있는 노선, 즉 '목적의 방법화'이자 '방법의 목적화'의 방식과 맞물려있는 자아실현의 원리로 확충될 수 있다. 이는 사회와 자연의 상관성을 자기조정능력을 갖춘 자율적 체계를 지닌 것으로 보고 그 양자 사이에 공존의 가치를 인식한 결과이다. 여기에는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필연적 관계 속에서 사회공학의 현대

34)『漢書』, 「董仲舒傳」: 以此見天心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35)『春秋繁露』, 「陽尊陰卑」: 此皆天之近陽而遠陰, 大德而小刑也. …… 刑之不可任以成世也, 猶陰之不可任以成歲也. 爲政而任刑, 謂之逆天, 非王道也.

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론이 담겨있다.

V. 문제해결의 실마리: 문명의 지속가능성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을 크나큰 기저로 하는 재이설은 인간과 자연의 내재적 관계에 입각한 생태주의적 문명관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것은 자연계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인간 삶의 방식과 맞물려있다. 예를 들어, 天意와 人意의 관계 속에서 神道設教의 강령을 따르는 취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문명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담겨있다. 재이의 문화는 국가나 사회의 혼란을 멈추고 통일적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형벌에 따라 통치하는 강제적인 제도도 참다운 문명의 세계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만약 군주가 失政을 했는데에도 재이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욱 두려운 것이다. 이러한 재이의 문화에는 생태주의적 문명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大同사회와 같은 유가의 이상과 그에 따른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적 이념의 성격을 지닌다.

생태주의의 문명관에서는 인간이 자연계 안에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계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공동체를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들을 실천하는 방식도 함축되어 있다. 이른바 자아실현에는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는 통합적 경계가 있다. 생명의 이치와 도덕의 가치가 만나는 경계는 陰刑陽德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여기에는 방법을 목적화하면서도 목적을 방법화하는 단계, 즉 방법의 목적화 혹은 목적의 방법화가 진정한 지속가능한 天人合一의 공동체적 강령이 된다.

“災祥異常說에서 본 董仲舒의 天人感應論과 生態文明觀 – 생명공동체의 경계에 착안하여 –”에 관한 토론문

이 병 욱 (고려대)

우선, 동중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김연재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고자 한다.

동중서(董仲舒, B.C.197-104)는 광천(廣川)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춘추』를 공부하였고, 효경제(재위 B.C.156-141) 때에 박사가 되었다. 동중서는 장막을 내리고 강의를 하였고 제자들이 강의 내용을 전하였는데, 오래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는 동중서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동중서는 3년 동안 정원을 내다보지 않았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모든 행동에서 예(禮)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고, 학사(學士)들이 모두 동중서를 스승으로 삼고 존경하였다.(「동중서전」, 『한서』;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하)』, 까치, 1999/2017, 15. 번역은 조금 수정하였음. 이는 뒤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동중서는 효경제, 효무제(B.C.140-87) 시대에 『공양춘추(춘추공양전)』를 연구하여 비로소 음양이론을 높이 받들었고 유자(儒者)의 으뜸[宗]이 되었다고 한다.(「오행지」, 『한서』;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15-16)

동중서의 대표저술은 『춘추번로(春秋繁露)』인데, 이 책은 17권 82편으로 구성되었다. 『춘추』는 춘추시대의 노나라 역사, 곧 은공(隱公) 원년부터 애공(哀公) 13년까지의 역사, 정리하면 12공(公)의 242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한서예문지』에서는 『춘추』에 대한 주석(해설)이 모두 23가(家)에 948편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전하는 것은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이고, 여기에 동중서의 『춘추번로』를 추가할 수 있다. 『춘추번로』는 『춘추공양전』에 근거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춘추공양전』의 해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동중서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빌려서 『춘추공양전』의 뜻을 분명히 하였고, 또 『춘추번로』에서 의심이 생기는 대목에 대해서는 동중서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남기현 역해, 『춘추번로』, 자유문고, 2005, 3-4)

동중서는 음양의 이치에 근거해서 삼강(三綱)을 제시하였고, 왕은 오로지 하늘을 본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동중서는 임금의 호(好), 오(惡), 희(喜), 노(怒)는 하

늘의 춘(春), 하(夏), 추(秋), 동(冬)에 상응하므로, 임금의 희(喜)와 노(怒)가 때에 맞고 정당하면 그 해[歲]는 아름답고[美], 임금의 희(喜)와 노(怒)가 때에 맞지 않고 망령되면 그 해는 추악하다[惡]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왕도통삼(王道通三)」, 『춘추번로』;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43-44)

동중서는 재이(災異: 지진, 폭풍우, 홍수 등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벌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면 요상한 기운[邪氣]이 생긴다. 아래[下]에서 요상한 기운이 쌓이면 위[上]로 원망과 증오가 모인다. [이처럼] 상하(上下)가 불화하면, 음양이 어그러져 재앙이 발생한다. 이것이 재이(災異)가 일어나는 이유이다."(「동중서전」, 『한서』;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53)

재이(災異)가 발생하는 이치에 대해서 동중서는 같은 부류는 상응(相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름다운 일은 아름다운 부류[類]를 부르고 추한 일은 추한 부류를 부르는데, 이는 부류가 상응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마치 말이 울면 말이 호응하고 소가 울면 소가 호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제왕이 장차 흥성하려면 상서로운 징조가 미리 보이고 장차 쇠망하려면 요상한 조짐이 미리 보인다. 사물은 본래 부류에 따라 서로를 부르는 것이다." (「동류상동(同類相同)」, 『춘추번로』;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52)

그러면서 동중서는 이러한 재이(災異)는 국가의 실정을 알리는 것이고 이것에도 단계가 있다고 한다. 우선 국가에 실정(失政)이 처음 생기면 작은 재해(災害)을 통해 견책해서 알리고, 그래도 실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큰 재해(災害)을 내려서 놀라게 하고, 그런데도 조정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재앙이 닥치는 것이다. 동중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의 실정이 처음 생기면 하늘은 재해(災害)를 일으켜서 [실정을] 견책해서 알린다. 하늘이 견책해서 알렸는데도 [조정에서] 변화할 줄 모르면 괴이한 일을 나타내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한다. [이처럼 하늘이] 놀라게 하였는데도 [하늘의 경고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災咎]이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하늘의 뜻은 어질고[仁]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필인차지(必仁且知)」, 『춘추번로』; 풍우란, 『중국철학사(하)』, 50-51) ('국가의 실정'의 항목에 현대의 '환경파괴'를 대입하면, 코로나19도 환경파괴에 대해 하늘이 경고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연재 선생님의 발표문에서는 재상이상설(災祥異常說),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음형양덕론(陰刑陽德論)을 설명하고, 그것을 생태문명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본론의 내용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에 대해 몇 가지 묻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한다.

1. 발표문(4쪽)에서 ‘친화성’과 ‘유기체성’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친화성’과 ‘유기체성’이라는 단어는 동양철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 논문의 특징적 요소이기도 하다. 또 이런 단어에 대한 용어정의가 명료하지 않아서 논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맥락을 사회공학적으로 보자면, 현실적 실재에서 인간은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갖는가? 아니면 자연과 유기체적인 삶을 갖는가? 친화성과 유기체성은 서로 연관되면서도 서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친화성) 속에서 후자(유기체성)를 이해하는 반면에 후자(유기체성)를 실현하기 위해 전자(친화성)를 발휘하는 것이다. 전자(친화성)의 경우는 고전적 유토피아의 세계처럼 인간이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다. 후자(유기체성)의 경우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특징짓는 생명공동체의 세계처럼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안정의 역동적 과정을 진행하는 삶이다. 전자(친화성)의 방식에서는 삶의 다양성을 획일화하고 일정한 틀 안에 묶어 놓는다. 후자(유기체성)의 경우에는 삶의 다양성을 통일시키는 역동적 유동적인 관계를 이룬다.(4쪽)

2. 발표문(5쪽)에서는 동중서의 유학에 대해 신유학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동중서의 유학을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의 문명의 도약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생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길 바란다. (논평자는 동중서의 유학을 문명의 도약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현대적 해석을 하는 것과는 달리 동중서 사상이 중국철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한무제 때에 통치적 질서를 확보하는 데에 동중서가 건의한 천인삼책(天人三策)이 채택되면서 유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이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특히 금문경학(今文經學), 황로학(黃老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원기설(元氣說),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등이 서로 관련되면서 공자와 맹자를 필두로 하는 선진(先秦)시대의 원시적(原始的) 유술과는 다른 새로운 유술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이러한 신유학(新儒學)은 ‘문명의 도약’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5쪽)

3. 발표문(6쪽)에서는 재이(災異)의 문화를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그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길 바란

다. 또 동중서의 천인감응설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조감도와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 근거해서 이런 평가를 하였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재이의 문화는 현대사회의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생태주의적 문명관에서 조명될 수 있다.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이러한 삶의 방식의 결정체(結晶體)이다. 그것은 자연계와 인간사회 사이에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천인감응론의 성격은 바로 재상이상설(災祥異常說)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사회를 자연계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할 삶의 조감도와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제2부 사상•문학과 재난 : 제2주제

호환에 대처하는 문학적 상상력

유 형 동 (한신대)

〈 목차 〉

1. 들어가며 …… 81

2. 호랑이에 대한 인식과 호환-대응책의 전개 …… 82

3. 호환-포호정책의 설화적 재현 …… 87

4. 호환에 대한 신앙적 대응 …… 92

5. 현대 영상 서사에 재현된 호랑이 사냥과 의미 …… 94

6. 나가며 …… 95

• 토론문 / 이명현 …… 97

1. 들어가며

1990년대에 비디오를 즐겨보았던 사람이라면,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로 시작하는 캠페인 영상을 한 번쯤은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 시청을 경계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지만 인상적인 도입부로 인해서 호환, 마마 등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호환, 마마, 전쟁 = 무서운 것’이라는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

〈그림 10 90년대 비디오 캠페인 영상〉

하지만 ‘호환, 마마, 전쟁 =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이 이 영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거나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과 같은 표현은 폭넓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용구들은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환, 마마가 얼마나 위협적인 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서운 것이라는 말에는 호환, 마마가 죽음과 상처를 통해 유발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혼란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한 점에서 호환, 마마는 재난의 범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재난을 ‘disaster’라고 한다. 이는 분리와 파괴, 불일치 등을 뜻하는 ‘dis’와 별자리를 의미하는 ‘aster’의 합성어이다. 즉 별이 분리, 파괴되거나 행성의 배열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이변과 갑작스러운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문해자』에 따르면 동양사회에서 ‘재(災)’는 ‘烖(재)’, ‘재(灾)’등으로도 인식되었다. ‘烖’는 전쟁과 관련되며 ‘灾’는 화재와 관련되며 ‘災’는 수해를 나타낸다고 한다.[1] 이는 자연현상으로 비롯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전쟁과 같이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재난은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서 인간생활은 해를 입게 된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전쟁이나 방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난은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

1) 김석우, 『자연재해와 유교국가』, 일조각, 2006, 69쪽.

다. 홍수나 가뭄과 같은 기상변화에 의한 재해, 지진·화산폭발과 같은 지형변화에 의한 재해, 호랑이·맷돼지·메뚜기 등 동물에 의한 재해, 질병으로 인한 재해 등이 그것이다.

호환은 그 가운데에서 호랑이라는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호환은 일상에 가까운 재난이었다. 과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호환이 발생했는데 선조 때에는 왕궁에 호랑이가 침입했을 정도이다.[2] 조선시대에는 호환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중앙에는 착호갑사(捉虎甲士)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착호군(捉虎軍)을 둠으로써 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적 중의성이 내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도로 이뤄진 '해수구제사업(害獸驅除事業)'도 호환을 해결하기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호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나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이나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차원에서 신앙적이고 의례적인 형태의 예방책도 이뤄졌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한 대응도 함께 이뤄졌다. 이 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호환에 대해 개인, 소규모 공동체가 보여주는 문학적·신앙적 차원의 대응 양상이다.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노력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을 나름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예방하거나 극복하려는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2. 호랑이에 대한 인식과 호환-대응책의 전개

한반도에서 호랑이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40~5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으로 추적되는 평양 상원군 상원읍 '검은 모루' 유적에서 쥐토끼·은등줄쥐·승냥이·

2) 『선조실록』, 선조36년 2월 "昌德宮松林間, 有虎逐人, 命左右捕盜將, 跟尋捕捉."
『선조실록』, 선조40년 7월 "以備忘記, 傳于洪慶臣曰 予聞, 昌德宮內, 大虎養雛, 雛非一二云. 尋蹤捕捉事, 旣有傳敎, 則當此草樹茂密之時, 縱難於發軍捕捉, 而豈無尋蹤除去之策乎. 不勤尋蹤, 飾辭塞責, 此雖微事, 我國之虛僞不武, 事事如此, 從可知矣. 一獸尙不能尋捕, 其於南倭、北狄, 旗鼓相對, 望塵失魄, 曳兵而走, 無足怪也. 大將、從事官幷推考. 且養虎遺患, 古人所戒. 而若乘夜出來, 或入市中、閭閻之間, 必致訛言惑衆之弊. 令兵曹, 多定軍士, 更加嚴令, 期於必捕."

곰 · 상원말 · 멧돼지 등의 동물뼈와 함께 호랑이의 뼈도 발견되었다. 또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걸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도 호랑이 그림이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서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 사료 이외의 문헌 기록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삼국유사』 고조선 조의 기록이다. 곰과 함께 환웅을 찾아가 인간이 되기를 바랐던 호랑이는 환웅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린다. '고조선건국신화'의 이 대목은 (역사적 관점에서) 천신을 숭배하는 환웅 부족에 동화되지 못한 호랑이 부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랑이가 인간의 삶에 동화될 수 없는 강력한 야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른 어떤 동물보다 강한 맹수성을 지닌 호랑이는 인간에게 복합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동물군에서 최고의 포식자로서 호랑이가 보여주는 위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호가 된다. 호랑이는 용맹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용맹함을 바탕으로 사냥을 하고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된다. 또 수렵민들에게는 사냥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신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다의적으로 존재하는 호랑이에 대한 인식은 재조직되기도 한다. 호랑이의 용맹함을 빌려 벽사(辟邪)와 축사(逐邪)의 기능으로 이용하기도 했고,[3] 최종 포식자로서 동물들의 왕으로 인식되는 호랑이를 통해서 인간사회의 권력의 문제를 형상화하기도 했다.[4]

호환은 호랑이가 인간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간이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겠지만, 한반도 역사에서 호환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역사기록에 비해서 『조선왕조실록』이 방대한 양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달리 바라볼 여지도 있다.

정도전(1342~1398)에 따르면 백성은 하늘이었고,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은 먹을거

3) 강석근, 「한국 호랑이의 문화 상징적 가치와 의미」, 『국제언어문학』 42, 국제언어문학회, 2019, 272쪽.

4)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 실천민속학회, 2012, 192쪽.

> 리였다. 하늘이 하늘로 여기는 것이 식량이었기에 조선은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지향했다. 조선에서는 이를 농사와 가축 사육이라는 생산 경제체제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농정책을 추진한 이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논의 면적과 소의 마릿수를 늘리는 일이었다.
>
> 곡물의 생산량을 늘리려면 농경지를 더 늘려야 했으며, 더 많은 소를 기르려면 꼴을 베는 땅을 더 많이 확보해야 했다. 청동기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언제나 황무지 혹은 산림전택이라 불리던 야생의 공간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
> 가용공간을 확장하는 농지개간은 야생의 공간에 생성되어 있던 야생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한반도 야생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범과 표범에 맞서야 했다. 범과 표범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서식 영역을 지키려 했고, 사람들은 소를 이끌고 야생의 공간에서 농경지를 마련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람과 소가 호랑이에 물려 죽는 일이 빈번해졌는데, 이를 호환이라 했다. 호환은 경작지를 넓히려는 사람과 서식지를 지키려는 범과 표범이 충돌한 결과였다.[5]

위의 인용은 호환이 경작지를 넓히려는 사람과 서식지를 지키려는 호랑이가 충돌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본주의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식량의 생산이었고, 이를 위해서 농지를 개간하면서 인간과 호랑이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호환은 전국적으로 발생하지만 한성부 지역과 산간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에서 호환이 빈번한 것은 이곳이 호랑이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6] 인명피해와 가축피해는 경기도, 강원도, 함경도에서 심각하게 발했으며, 가축피해의 경우 주로 목장에서 키우는 말이나 민가에서 기르는 개, 소, 돼지 등이 주된 피해 대상이었다. 목장에서 기르는 말은 방목해서 기르다 보니 호랑이에게 쉽게 노출되어 주된 먹잇감이 되었다. 호환이 너무 잦다보니 재이(災異)로 칭하여 전쟁이나 기근에 비할 정도였다.[7]

호환이 잦아지면서 조선에서는 호랑이를 퇴치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마련하게 된다. 이들이 바로 착호갑사이다. 착호갑사는 태종 때 임시로 만든 부대였는데, 세종대에 이르러 40명을 기준으로 하는 정규 부대로 인정 받았다. 성종 대에는 갑사 1800명 중 착호갑사를 440명이나 뽑으며 인원을 증원하여 조선 최고의 호랑이 전문

5) 김동진, 『조선의 생태환경사』, 푸른역사, 2017, 31쪽.

6) 김동진, 『조선전기 포호적책 연구 : 농지개간의 관점에서』, 선인, 2009, 68쪽 참고.

7) 『숙종실록』, 숙종27년 12월. “虎噉之數多至三百餘人亦一變異也”.

사냥부대로 거듭나게 되었다. 호환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지방에서도 착호갑사를 뽑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착호갑사는 착호장이 이끄는 착호군으로 불렸다.[8)]

착호갑사와 착호군을 통한 호환 대응책은 일차적으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호피 공납 등의 이해관계가 뒤따르면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호환 대응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관료들의 폐단이 생겨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결국 백성을 위한 호환 대응책이 거꾸로 백성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방 관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더불어서 피지배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이를 이용한 국가의 회유책에 대한 호환 대응책의 실행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파가 계속 진행되자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폐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의 지방 관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한 결과가 호환 대응책의 한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9)]

조선후기에 이르러 착호군을 중심으로 한 포호정책의 폐단과 총포술의 발달로 말미암은 포수(砲手)의 활약으로 별도의 착호군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 1785년(정조 9) 편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당시 착호군이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호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 조선이라는 나라는 온통 호랑이와 표범, 삵쾡이들이 갖은 횡포를 부리고 다니는 맹수의 천국과도 같았다.[10)]

1800년대 후반 조선을 여행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다. 물론 과장이 섞여 있겠지만, 호랑이로 대표되는 맹수들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여행자들에게 숙소에 이르기 전에 해가 지는 것만큼 낭패는 없었다. 길을 가다가 해질녘이 되면 호랑이에 대한 공포로 정신없이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비숍이 강원도 김화 근처에서 금강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마을에 들어갈 때에 잠시 길을 잃어 숙소에 채 도착하기 전에 날이 저물게 되었다. 마부들은 호랑이에 대한 공포로 빨리 걸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고, 비숍은 조선에서 이런 상황이 익숙

8) 최형국,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착호군(捉虎軍)」, 『인물과 사상』 2008-1, 2008, 207쪽.

9) 김중수, 「17ㆍ18세기 虎患 피해양상과 대응책」, 제주대 석사논문, 2014, 44쪽.

10) 샤를 바라ㆍ샤이에 롱 지음, 성귀수 역, 『조선기행-백여 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 눈빛, 2001, 127쪽.

해져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왜 서두르는지 눈치챌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11]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호랑이를 방비하기 위해 나무 울타리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그물을 찢고 들어오기도 했고, 문이 잠겨있는 오두막집에서는 초가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일도 있었다.[12]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불을 피워놓는 것을 잊은 채 밖에 나와 있다가 희생되는 사람도 있었으며,[13] 비숍이 방문했던 강원도의 한강 상류 지역에서는 호랑이의 습격이 잦아 아예 버려진 마을도 있을 정도였다.[14]

경술국치 1년 뒤인 1911년 조선총독부는 '야생의 조수(鳥獸)는 본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라도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 수렵 규칙을 공포하였다.[15] 엔도 키미오에 따르면, 요시다 유지로가 저술한 『조선수렵해설』이라는 책에 수록된 '해수구제(害獸驅除)에 관한 건(1913년 9월)'이라는 조선총독부의 통지에 구제를 명목으로 한 사냥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 해수구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헌병, 경찰관이 지도·감독할 때, 조선인에게 총기와 탄약을 빌려줄 때는 그 인물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분실과 도난 예방을 위해서 구제를 수료할 때는 헌병 경찰서에서 보관할 것. 피해가 많은 지방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함정, 덫 등을 만들게 해서 구제를 돕게 할 것. …중략… 수해(獸害)가 많은 지방에서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피해 예방상, 각자가 충분히 경계와 주의를 할 것. 단 해수(害獸)가 나타난다고 해서 장난으로 피해를 과대 포장해 소문을 내어, 여행과 생활하기에 위험이 많다는 풍설이 퍼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16]

이른바 해수구제사업으로 인해서 호랑이를 비롯한 표범, 늑대, 곰, 스라소니 등의 동물들이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호랑이가 사라지면서 호환도 함께 사라졌다.

---

11)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살림, 1994, 158쪽.

12) 러시아 대장성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역, 『國譯 韓國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67쪽.

13) 샤를 바라·샤이에 롱 지음, 성귀수 역, 앞의 책, 207쪽.

14)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 이인화 역, 앞의 책, 95쪽.

15) 엔도 키미오 저, 이은옥 역,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 이담북스, 2009, 209쪽.

16) 위의 책, 348-349쪽.

3. 호환-포호정책의 설화적 재현

일찍이 최남선은 우리나라의 호랑이 설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 있다.

> (범 이야기) 數爻만키로도 朝鮮만 한 데가 업스려니와 그것만 듯기 조하하긴들 朝鮮人만할 이가 또 잇슬 것일세 말이지.
>
> 印度가 어떠니 緬甸이 어떠니 하야도 범의 이약이 한아만으로는 다 朝鮮의 敵이 아니다. 범의 이약이만을 모아서 『千一夜』, 『히도바데사』, 『太平廣記』, 『캔터버리』, 『데카메론』 等類의 說部를 꿈일 나라는 世界가 넓다해도 오직 朝鮮이 잇슬 뿐일 일 것이다. 범의 이약이 한아만 가지고 『아스뼈른손』, 『안더쎈』, 『그림』 누고 노릇이든지 다 할 것이다. 또 언제든지 이것의 實現을 볼 날도 잇슬 것이다.(띄어쓰기 인용자)[17]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이야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호랑이 이야기를 즐겼다는 것이다. 또 인도, 미얀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호랑이 이야기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호랑이 이야기만으로 『천일야화』. 『히도바데사』, 『태평광기』. 『캔터베리이야기』, 『데카메론』, 『아스베른센 동화집』, 『안데르센 동화』, 『그림동화』에 버금갈만한 이야기 책을 꾸릴 수 있다고 자부하기도 한다.

실로 우리나라의 호랑이 이야기는 매우 풍부하게 존재한다. 허원기는 문헌설화, 구비설화, 소설까지 폭넓은 자료를 검토하여 도합 690여 건에 달하는 호랑이 설화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체계의 기본 골격을 참조하면서 자료에 나타난 호랑이의 형상에 맞춰 호랑이 이야기의 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다.[18]

이러한 분류는 호랑이 설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는 호환과 관련성을 지니는 설화가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사용하려고 한다.

---

17) 동아일보 1926년 1월 26일 5면. “朝鮮歷史 及 民俗志上의 虎 : 建國初頭以來久遠朝鮮의 表象 - 호랑이 六”

18) 허원기, 「한국 호랑이 이야기의 현황과 유형」, 『동화와번역』5,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2003, 87-99쪽 참고. 허원기가 제시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신령스러운 호랑이, ② 어리석은 호랑이, ③ 인정 많은 호랑이, ④ 은혜 갚은 호랑이, ⑤ 변신과 관련된 호랑이, ⑥ 사나운 호랑이

① 사람을 해치려는 호랑이를 물리치는 경우
② 사람이 호환을 피하거나 막는 경우
③ 사람이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경우
④ 사람이 호랑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호환이 사람과 호랑이가 충돌할 때 위와 같은 관계가 설정될 수 있고, 그 관계의 양상을 통해서 호환을 이해하려는 설화 향유자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사람을 해치려는 호랑이를 물리치는 경우이다. 『대계』의 분류 체계 115-3 '호랑이를 물리친 영웅'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속한다.

> 퇴곡 권장군이 밤에 변소에서 용변을 보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권장군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버티자 호랑이가 놀라 달아났다. 권장군이 호랑이를 쫓았는데, 호랑이는 달아나면서도 한 집의 담을 넘어 처녀를 물고 갔다. 권장군이 끝까지 호랑이를 쫓아 때려 잡고 처녀를 구했다.[19]

이 유형의 이야기는 대체로 유사한 서사를 보여준다. 용력이 센 사람이 우연히 호랑이를 만나고 호랑이를 힘으로 제압해 버린다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장군, 이군창, 정장군 등으로 나타나는데, 실존 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들 인물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인가를 찾아온 호랑이에게 적극적으로 맞서서 물리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영웅의 惡獸퇴치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호환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강감찬의 이야기는 이와는 약간 다른 결을 보여준다.

> 강감찬이 한양 판관이 되었는데, 이때 한양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이 해를 입었다. 강감찬이 아전에서 북동가 가 바위에 앉은 늙은 중을 데려오라고 했다. 중이 오자 강감찬은 사람 해친다며 꾸짖고 5일 내에 무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 옆에 있던 부윤이 의아해하자 강감찬이 중에게 본모습을 드러내라고 호통을 쳤다. 중이 호랑이로 변했다. 부윤이 이튿날 아전에게 시켜 확인하니 호랑이 수 십 마리가 강을 건너 한양을 빠져나갔고 이로부터 한양부에는 호환을 걱정하지 않았

19) 김진열, 「퇴곡 권장군」, 김선풍 · 김기설, 『대계』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780-782쪽 요약.

다.[20]

여기서는 역사적 인물인 강감찬이 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랑이를 퇴치하는데 용력이라는 방식이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퇴치는 유가적 질서 안에서 타자화된 것들이 지배 질서의 수호자들에게 의해 퇴치되고 제거되는 내용으로 읽힐 수도 있다.[21]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강감찬의 이인적인 모습이다. 강감찬은 부윤이나 아전 등이 알지 못하는 중의 정체를 알고 있다. 강감찬이 변신한 호랑이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우위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호랑이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22] 이렇게 본다면, 일상 속에 존재하지만 예고없이 다가 올 수 있는 호환을 물리칠 수 있다는 희구를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호랑이을 피하거나 막는 경우의 호랑이를 적극적으로 퇴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환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 이원수가 서울에서 강릉에 있는 집에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느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여인이 이원수에게 동침을 요구했지만 이원수가 거절하였다. 집에서 일을 보고 서울로 가는 길에 그 집에 다시 들른 이원수가 여인에게 동침을 요구했다. 여인은 지난 번에 동침을 제안한 것은 그날 관계를 하면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만, 이미 이원수가 부인과 관계를 했으므로 동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중이 시주를 얻으러 와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절대로 보여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원수가 까닭을 묻자 중의 정체가 호랑이라고 말하며, 아이가 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 뒤 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했다. 과연 아이가 태어나자 한 중이 시주를 얻으러 와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원수는 밤나무를 심으며 정성을 다했는데, 아이가 호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중이 얼마나 정성을 드렸는지 묻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러자 중은 1000그루의 나무를 함께 헤아리자고 했다. 중이 헤아린 나무는 999그루였고, 아이를 잡아 먹겠다고 했다. 그때 이원수가 산 비탈 아래 작은 밤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1000그루라고 하자 호랑이가 사라졌다. 호식에서 살아난 아이가 바로 율곡이다.[23]

---

20) 성현 저, 「용재총화」,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대동야승』 1, 민족문화추진회, 1985, 62쪽 요약.

21) 김수연, 「호랑이담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동악어문학』 53, 동악어문학회, 2009, 204쪽.

22) 강진옥,「변신설화에서의‘정체확인’과 그 의미」,『震檀學報』73, 震檀學會, 1992, 165-185쪽 참고; 박대복 · 유형동, 「〈여우누이〉에 나타난 요괴의 성격과 퇴치의 양상」, 『어문학』106, 한국어문학회, 2009, 157쪽.

이 이야기도 호식을 면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는 이인이다. 여인의 이인적인 면모는 역시 '앎'이라는 인식적 차원에서 확인된다. 여인은 이원수의 운수를 보고 그와 관계하여 뛰어난 아이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이원수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자신을 찾아온 이원수에게 아이의 운명을 일러주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이를 충실히 따른 이원수는 호식을 당할 운명이었던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호환은 일반인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이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의 강감찬 이야기처럼 역시 알 수 없는 때 찾아오는 재난이라도 이인의 도움과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호랑이의 용력이 사람을 압도하므로 호랑이를 직접 제압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서 호환이라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에서 호식을 피하는 방법이 나무 1000그루를 심는 행위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호환이 심각해지는 것이 개간을 통한 호랑이 서식지의 감소와 관계가 있다고 할 때, 나무를 심는 행위는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랑이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이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는 위와는 반대로 주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실수로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 부부가 있었다. 하루는 아내가 점을 봤는데 남편이 호식을 당할 팔자라고 했다. 아내는 점쟁이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점쟁이는 아무날 아무시가 되면 구들을 들어내고 큰 독을 집어 넣고 남편을 독에 들어가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독 뚜껑을 덮고 다시 구들을 올려 전혀 티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누가 찾아와서 남편을 찾아도 밖에 나가서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답하도록 시켰다. 점쟁이가 얘기한 날이 되자 아내는 점쟁이의 말대로 따랐다.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오더니 남편의 행방을 물었다. 아내는 모른다고 답했는데, 여인은 오늘 꼭 보기로 했다며 거듭 남편의 행방을 물었다. 종국에 여인은 아이까지 낳은 자기를 버리고 대체 어디 간거냐며 하소연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을 오

23) 김상호, 「천 그루 밤나무로 호환 면하다」, 김선풍 · 김기설, 『대계』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36-140쪽 요약.

해하는 마음이 들어 '네 서방은 저 구들 밑에 있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여인은 호랑이로 변하여 남편을 잡아먹었다.[24]

이 이야기의 전개는 앞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닥쳐올 위기를 알려주는 이인도 있고, 그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아내는 점쟁이의 말을 잘 따랐지만, 마지막 순간 방심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호환이라는 것은 그것이 찾아올 것을 알아도 피하기 어려운, 초월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숙명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호환에 대한 방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넷째, 사람이 호랑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호환의 위기로 여겨지는 상황이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호랑이와 인간 양쪽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는 이야기이다. 『고려세계』의 호경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호랑이가 굴을 가로막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관모 가운데서 호랑이가 호경의 관을 잡는 순간은 모두 호식·호환을 암시한다. 그러나 호경이 굴 밖으로 나온 순간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바위굴이 무너지며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죽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호경은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다. 이후의 서사는 더욱 극적으로 전개된다. 호경 앞에 나타났던 호랑이가 사실은 평나산의 산신이며 호경과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 왔다는 설명이 붙으며, 왕건의 가계에 신성성을 보태는 구실을 한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호환이라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어, 앞의 세 유형의 이야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처럼 호환에 대응 하는 양상을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드러내는 이야기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호환이라는 재난을 극복해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윤성오, 「호식 당할 사람은 독에 들어가도 못 면한다」, 정상박·류종목, 『대계』 8-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04-406쪽 요약.

4. 호환에 대한 신앙적 대응

이야기의 세계에서 호환을 막거나 피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현실 세계에서 호환은 더욱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호랑이 그차가 이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데다가 실제 호식을 당하거나 해를 당한 사람이 인지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연쇄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다음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설 가운데 하나이다.

> 태백시 창죽 조자터에 김씨 성을 가진 힘이 장사인 사람이 살았다. 김장군은 눈썹이 유난히 길었는데, 옛말에 눈썹이 길면 호식(虎食) 당해갈 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 크게 웃었다. 하루는 김장군이 집 앞 개울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김장군은 호랑이와 마주 엉켜 붙어 싸웠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내에게 김장군은 낫이나 도끼를 좀 던져 주면 범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
> 그러나 그 여인은 웃마을로 사람을 부르러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이 김장군을 구하러 왔을 때는 김장군이 다 뜯어 먹히고 머리만 남은 뒤였다. 그곳에서 김장군의 남은 시신을 화장하고 돌담을 치고 시루를 엎으니 사람들은 장군 화장터라 불렀다.[25]

이 이야기기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창죽리에 전승되는 이야기로 호식을 당한 김장군의 장례를 지낸 자리를 '장군화장터'라고 부른다는 지명 전설의 하나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시신을 화장하고 돌담을 치고 시루를 엎어두었다는 대목이다. 장례를 치르는 방법과 무덤양식으로서는 매우 독특한 방식인데 이를 태백, 삼척 등지에서는 호식총이라고 부른다. 호식총은 말 그대로 호식을 당한 사람의 남은 시신을 화장하여 돌무더기에 묻어두고 위에 시루를 엎어놓은 무덤을 말한다.

이렇게 독특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창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창귀는 호랑이게 먹혀서 잡귀가 된 다음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서 호랑이에게 봉사한다고 한다고 알려진 귀신이다. 창귀는 호랑이가 다른 사람을 잡아 먹어야만 그 호랑이에게서 해방되기 때문에, 호랑이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도록 악착 같이 안내한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호환은 전염병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족들은 호환을 당한 유골을 찾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25) 「장군화장터」, 태백관관, http://tour.taebaek.go.kr/site/ko/pages/sub05/sub05_06.jsp?mode=readForm&contentID=2351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거꾸로 엎어두고, 시루 구멍에 칼이나 쇠로 만든 가락을 꽂아서 창귀의 발호로 인한 다음의 피해를 철저히 예방했다.

호랑이에게 먹힌 유골을 화장하는 것은 창귀(倀鬼)를 비롯한 사악한 기운을 완전 소멸하려는 뜻이며, 돌무덤은 무거운 돌로 눌러서 이중으로 창귀를 제어한다는 의도이며, 또 그 지역은 특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며, 시루는 살아있는 생명을 수증기로 쪄서 죽이는 필살의 도구이므로 3번째로 창귀를 제어하는 장치가 된다. 칼이나 물레의 가락을 시루구멍에 찔러두는 행위는 생명을 앗는 무기인 뾰족한 쇠가락으로 4번째로 창귀를 제어하려는 것이다. 창귀가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4겹의 장치를 가진 무덤이 바로 호식총이다. 특히 물레에 쓰는 쇠가락을 창귀를 제어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실을 잣던 물레 가락의 순환기능처럼, 창귀가 시루 안에서만 뱅뱅 돌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26]

황해도 굿놀이 중 하나인 '호살량굿'은 호식총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특히 창귀가 된 사람의 영혼을 개를 통해 다리 놓기를 해주어 해방시키는 제의의 성격을 보여준다. 결국 창귀가 붙은 호랑이에게 개를 희생시킴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호환의 연쇄를 끊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27]

개가 호환의 연쇄를 끊는다는 점에서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상명암마을 제의 역시 주목된다. 이 마을에서는 개를 제물로 올리는 거리치성을 지낸다. 상명암마을은 예전에 나무가 우거진 산골이었던 까닭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에게 해코지하였다고 한다. 이에 마을에서는 호주(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마리(개)를 거리제 때 진설하는데, 결국 호랑이가 개를 먹고 사람은 해코지 말라는 뜻에서 거리제를 지내며 개를 진설하는 것이다.[28] 신앙적 대응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이뤄지는 '산멕이'라는 의례는 산군(山君, 호랑이)에게 미리 굴복하고 산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며, 산신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 호환을 면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행해지는 것이다.[29]

이러한 독특한 장례문화와 그와 일정한 연관을 보이는 무속의례, 민간신앙이 폭

---

26) 김강산, 『虎食葬』, 태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8, 85쪽.

27) 이주영, 「〈호살량굿〉과 〈호탈굿〉의 주술과 연행주체의 세계관 비교」, 『한국무속학』 21, 한국무속학회, 2010, 321쪽 참고.

28) 이영식, 「강원 북부지역의 거리제 양상」, 『아시아강원민속』 31,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28쪽.

29) 김도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쉰음산 산메기」, 『박물관지』 15, 강원대학교 박물관, 2009, 2쪽.

넓게 존재한다는 것은 호환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 신앙의 힘으로 호환을 물리치고 인명 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5. 현대 영상 서사에 재현된 호랑이 사냥과 의미

호환이 사라진 현대에 호랑이를 주요한 소재로 삼은 영화가 제작 상영된 바 있다. 박훈정 감독의 〈대호〉가 그것이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호랑이와 호랑이 사냥꾼의 이야기는 호환이라는 맥락에서는 벗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해수구제사업'의 총탄이 호랑이를 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수구제사업에 대한 일제의 입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선에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조선인 포수에게 해수구제 동원 시에 한하여 총기를 지급하고 사용을 허가한다. 일제가 조선인 포수들에게 총기를 금한 것은 이들이 항일 무력 투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봉오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호랑이 사냥꾼 출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사냥꾼에게 사격을 배웠다고 한다.

> 1920년대를 지나면서 해수구제의 명목상의 이유도 사라지고 끔찍한 야생동물 사냥만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을 사냥에서 몰이꾼 및 덫 설치에 동원하도록 하였는데 그야말로 악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영화 〈대호〉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의 호랑이 사냥이 막바지로 치닫는 1920년대 중반이고 배경은 지리산 자락이다. 과거 최고의 포수으나 지금은 심마니가 되어 살고 있는 천만덕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들 석이와 산 속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
> 조선을 침략한 일제에 적극 부역해 장교가 된 류는 상관인 마에노조에게 바치려고 지리산 산군 '대호'를 잡으려고 한다. 만덕의 은퇴 후 도포수 대장으로 활약하는 구경과 그를 따르는 칠구는 류의 명령으로 대호 사냥을 나가 그 대호의 가족을 사냥하는데 그친다.
>
> 군을 동원해도 대호를 잡을 수 없자 구경은 만덕을 찾아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하지

만, 만덕은 '산주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거절한다. 석은 아버지 몰래 대호 사냥대의 몰이꾼으로 들어 갔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 여러 차례 사냥꾼, 군과 맞섰던 대호도 상처를 입고, 인연이 있었던 최민식을 찾아가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마에조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철포부대를 모두 동원하여 대호를 추격하지만 대호에 의해 궤멸 상태에 이르고, 이 와중에 구경은 목숨을 잃는다. 자신을 추격하는 일본군을 뒤로 한 대호와 대호를 찾아온 만덕은 대호의 보금자리 앞에서 조우한다. 자신을 찾아 나선 칠구 일행의 눈앞에서 만덕과 대호는 절벽 밑으로 몸을 던진다.

〈대호〉의 줄거리에서 보듯 이 영화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일제의 호랑이 사냥, 그에 적극 부역하는 친일파, 그에 동조하는 포수들과 호랑이. 섣불리 접근하면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인간과 호랑이의 교감이라는 지점을 지나치게 건드리면 삼류 신파 판타지로 흐를 수 있다.

연출은 그러한 지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뻔하디 뻔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라는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나름 세련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철포 부대를 통해서 산을 폭파하고, 대호의 숨을 옥죄어 가는 모습은 호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단계에서의 농지 개간과는 결을 달리한다.

호환이 경작지를 확보하려는 인간과 서식지를 지키려는 호랑이의 충돌에서 비롯한 사건이라면, 이는 단순한 호랑이 사냥에 불과하다. 착호군의 활동이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비롯한 행위였다면, 호랑이 사냥꾼의 활동은 야생동물의 멸종을 불러온 파괴행위였다.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혹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염병의 원인을 무차별적 환경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인간과 자주 접촉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관점을 취하면,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버전을 달리한 호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6. 나가며

“호환에 대처하는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토론문

이 명 현 (중앙대)

우선 좋은 논문을 먼저 읽고 질의할 수 있게 해주신 발표자 선생님과 학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호환, 호랑이 설화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이 논문은 공부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공부가 부족해 단견에 그칠지 모르지만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전통사회에서 호랑이에 대한 인식과 호환 대응책, 4가지 유형의 호랑이 설화, 민간신앙에서의 호환, 영화 <대호>의 호랑이 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 직면한 오늘날, 호환이라는 과거의 재난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 불가항력적 대상에 대처하는 자세 등을 논의한 이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상징성과 호환의 의미, 호랑이 설화의 유형 분류 등 전반적인 논지 전개에 동의하지만,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장부터 5장까지 각 장의 내용은 해당 챕터에서의 논지 전개는 타당하고 내용의 완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의 호랑이에 대한 인식, 특히 ‘경작지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 이후 4가지 유형의 호랑이 설화, 호랑이 민간신앙, 영화 등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설화, 민간신앙, 영화 분석이 개별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영화 분석 부분이 앞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을 제시하여 이후 논의를 펼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2장에서 경작지와 서식지를 둘러싼 인간과 호랑이의 갈등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인간과 호랑이의 갈등이 호환이란 인간의 재난이지만, 호랑이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공간 확장으로 인한 호랑이의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호랑이에게 가한 압력이 원인이 되어 호랑이가 인간을 공격하는 재난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환이라는 현상에 대해 상대주의적 관점, 혹은 순환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러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호랑이 설화 분석에서 앎의 문제가 나옵니다. 불안과 공포의 근원은 '알 수 없음'이라고 합니다. '미지(味知)/기지(旣知)'는 안전과 불안을 나누는 핵심 개념입니다. 인류는 알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설화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인(異人)이 등장하여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기지의 세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어떠한 자격을 획득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3번째 유형의 이야기를 숙명론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인간 관계의 신뢰와 의심의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만 의심과 불안이 공포를 유발합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속삭임은 실상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야기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진 인간 사회에 호환이라고 하는 재난이 덮치는 것입니다.

4. 기타 소소한 질문입니다. 밤 숲의 조성을 자연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나무는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유실수로 인간 삶터의 울타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밤나무 심기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경계 확장, 혹은 완충지대와 같은 의미는 아닐까 합니다.

5장에서 영화 <대호>보다는 영화 <장산범>처럼 인간의 불안이 만들어 내는 또 다른 방식의 재난과 공포가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랑이를 호랑이 자체로 보지 못할 때 호랑이가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호랑이를 호랑이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면의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그 동안 미처 살펴보지 못한 호환과 호랑이 설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에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우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며 발표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 구 윤 리 교 육

고 남 식 교수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자나 연구 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 궁금증 및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례집의 발간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에 연구 현장의 바람직한 연구 문화의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접수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별된 질문들을 다시 연구윤리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답변이 작성되었고, 답변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목차 〉

Chapter 1. 연구설계 ····· 101

Chapter 2. 연구수행 ····· 101

Chapter 3. 연구발표 ····· 103

Chapter 4. 저자표시 ····· 104

Chapter 5. 중복게제 ····· 105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 107

Chapter 7. IRB ····· 109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연구설계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2 연구대상자를 녹취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연구수행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1 인간위락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업 개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행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넘겨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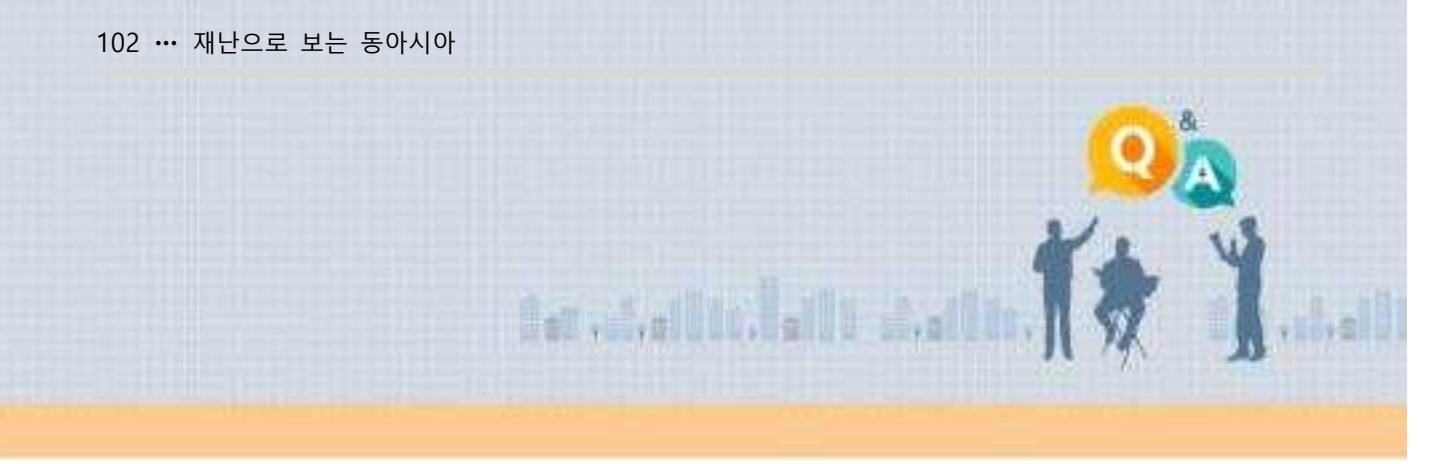

15 의과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수집한 환자데이터를 다른 학과 소속의 대학원생에게 주어 논문을 작성해도 괜찮은가?

16 논문에 포함된 사진 중 실험전후 결과 사진에서 다른 실험모형의 사진이 잘못 포함된 사실을발견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17 A와 B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후, 각각 다른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A와 B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가?

18 이공계 연구분야의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얻어 새로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21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회의 등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를 박사학위 논문에서 활용해도 될까?

23 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24 학위 청구논문에 오래된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5 원저자의 허락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27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의과대학 학생 전원에게 피험자로서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을까?

28 박사학위 논문이 최종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먼저 학술지에 발표하면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29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Chapter3

연구발표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40 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Chapter4

저자표시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46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Chapter 5

중복게재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해당하는가?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축약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모형을 수립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규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트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76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77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78 질적 연구의 수행 결과, 연구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연구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79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8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81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도 되는가?

82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한 박사과정 연구원이 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모든 연구자를 저자로 등록한 학술지 논문을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83 조사보고서 2권의 90% 가량을 그대로 사용한 책자를 공저자가 발간하면서 소속기관과 협의가 없었다. 중복게재인가?

84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지에 재출판하거나 국내 학술지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학술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한가?

85 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동일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86 과제물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써도 자기표절인가?

87 출처를 밝혔음에도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88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고 연구 방법과 범위가 같을 때 구조적 자기표절인가?

89 ISSN이 있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인가?

90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학위논문에서 활용하여도 문제가 없는가?

91 학술대회 요약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92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표절인가?

93 처음 출판되었던 책의 출처를 표기한다 해도 중복게재 항목의 자기표절이 아닌가?

94 본인이 쓴 여러 편의 저널 논문을 정리하여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95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96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99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101 대학 전임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111 연구부정행위조사를위한본조사위원회구성시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3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14 중복게재 판정 시 논문의 선후 판단기준은?
115 이의신청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야 맞는가?
116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가?
117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18 교육부의 지침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119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0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는가?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이 혹시 있는가?
121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 시효가 있는가?
122 내가 가져다 쓴 타인의 글이 표절로 판정되면, 나도 표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Chapter 7

IRB

123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25 자신의 인체유래물을 분석하는 '자가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28 대학 병원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30 일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샘플을 사용할 수 있는가?

134 자신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35 신문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東아시아古代學會 研究倫理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제2조(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해당분야 편집위원,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 기획이사를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임시 위촉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제5조(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상 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 사례) 연구윤리위원회에 부의할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한 경우
•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출처를 밝혔더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 부분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새로운 의견 없이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한 경우
•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7조(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안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출석도 허용한다.

제8조(제보자 보호 및 소명기회 보장)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제보(또는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가한다.
•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제4장. 심사와 징계 제9조(심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또는 신고)된 사안을 최초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 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지 및 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0조(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 해당자의 학회 제명
-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 학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이후 처음 발간되는 학회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지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본인 사과문 학회지 게재

제5장. 기타 제11조(기타)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절차는 동아시아고대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2일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東아시아古代學≫ 投稿規定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아시아고대학회 '東아시아古代學 투고규정'이라 한다.

제2조(논문투고 자격과 범위)

논문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본 논문집은 전문학술지로서 연구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서적에 대한 서평이나 신자료의 발굴에 따른 소개 및 전재, 외국자료 번역은 가능하다.

논문의 게재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고대 관계 논문

古代의 범위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현대에 대한 과거의 전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적용한다.

동아시아 전통문화 관계 논문

논문의 원고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논문의 저자(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주저자 또는 책임연구자)를 앞에 명시 하고, 공동저자를 제1저자 다음에 명시한다. 제1저자가 없이 모두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어 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3조(논문접수)

논문 접수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논문 접수마감일은 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소 50일 이전(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으로 하고, 접수마감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이메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이 규정은 36집 논문접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고작성 요령)

모든 투고논문은 다음과 같은 작성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논문의 사용언어는 한국어여야 하고, 한자를 사용할 때는 노출시킬 수 있다. 단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앞부분에 한국어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하(영문초록, 영문 키워드 5개 이상 포함)로 제 한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논문을 반려하거나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기준>

120매 이내: 10만원 또는 30만원

논문 게재 판정을 받은 자는 120매 초과시, 출판사 최종 편집본 기준으로 1면 초과마다 1만원(일반논문, 지원논문 공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논문을 최종 게재하지 않는다.

논문은 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97 이상)을 사용하여 橫書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한다.

논문의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머리말・본론・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Key-Word의 순서로 작성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는 각각 주제어 (Key Word) 5개 이상 명시해야 한다.

본문의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① 항목번호 부여 순서 : Ⅰ→1→1)→(1)→①

② 강조 : ‘ ’

③ 직접인용 : “ ”

④ 국내 논저

저서・단행본・작품집・논문집(학술지) : 『 』 , 논문 : 「 」작품・설화(문헌 및 구전) 제목 : < >

⑤ 외국논저 논문 : “ ”

저서・단행본・작품집・논문집(학술지) : 이탤릭체로 인쇄

註釋(脚註)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단, 歐美語로 된 書名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저의 출전 표기의 경우

① 국내 논저(중국・일본은 국내 논저에 준함)

梁柱東,『古歌硏究』, 서울, 乙酉文化社, 1940, 125쪽.

조동일,『한국문학통사』3(제3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4, 456~458쪽.

인권환,「한국 민속학의 형성・전개와 과제」,『한국민속학』29, 민속학회, 1997, 9~11쪽. 위의 글, 15쪽.

조동일, 앞의 책, 480쪽.

② 외국 논저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 Co, 1959, p.158.

Robert A. G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327.

Ibid., pp.120~123.

Robert A. Georges, op. cit., p.330.

③ 재인용 : 인용 원문 뒤 괄호 안에 재인용한 논저를 명시한다.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U of California P, 1985, p.22.(백문임, 『 월하의 여곡성 』, 책세상, 2008, 45쪽, 재인용.)

같은 註에서 2편 이상의 논저를 제시할 경우 :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고 그대로

이어서 쓴다.
차문섭,『조선시대 군제연구』, 서울, 단국대출판부, 1973, 48~50쪽; 이태진,『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제변천 』, 서울, 한국연구원, 1985, 43~45쪽.
史料引用方式 : 서명, 권(또는 책), 연도, 간지(또는 항목) 순으로 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간지는 한자를 그대로 살려준다.
『仁祖實錄』卷50, 仁祖 27年 3月 乙亥; 『增補文獻備考』卷14, 輿地考2 歷代田界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원전 자료・연구서・연구 논문으로 구분하고, 각각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한국문헌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

①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② 저서 :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③ 외서 : 원문대로 적고 서구 외서일 경우 글제나 서적명은 이탤릭체로 적음
④ 번역서 : 원저자・번역자,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⑤ 논문 작성에 참고한 저서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논문은 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표기한다.

서영대,「한국과 중국의 성황신앙 연구」, 『중국사연구』 12, 중국사학회, 2001, 173~225쪽.
서대석, 『 한국신화의 연구 』 , 서울, 집문당, 2001, 1~580쪽.
村上重良 著・최길성 譯, 『일본의 종교』, 예전, 1989, 1~256쪽.
Oinas, Felix J., “Folk epic”, Folklore and Folklife, Ed. Richard M. Dor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2, pp.75~93.
Bowra, C. M., Heroic Epic,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6, pp.1~192.

원고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 종류 : A4(210 x 297mm)
② 용지 여백 : 위 20, 아래 15, 왼・오른쪽 30, 제본 0, 머리말 15, 꼬리말 15(한글 프로 그램 최초 설정 상태)
③ 줄 간격 : 160
④ 글자 모양 :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각주・인용 9), 신명조
⑤ 문단 모양 : 왼・오른쪽 0, 들여쓰기 2(각주 -3, 인용 3)

제5조(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임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투고자는 당해연도의 회비(3만원)와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논문투고시 학회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게재가 최종 결정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10만원(단,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는 3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투고자는 원고내용을 보완하고 가필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제6조 (판권 및 저작권)

東 아시아 古代學 {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과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아울러 논문 투 고자는 본인의 논문이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판권과 저작권이 본 학회에 귀속된다는 사항에 대해 '東아시아古代學투고신청서'(별첨)와 '東아시아古代學{연구윤리 서약서'(별첨)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이밖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① 본 투고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② 본 투고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투고규정은 2014년 7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④ 본 투고규정은 2018년 4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동아시아고대학〉 제59집 논문 투고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동아시아고대학> 제57집의 논문 투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학술대회 발표원고는 꼭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① 원고 마감 : 2020년 8월 10일(월) 24시까지 홈페이지(www.dongasia.co.kr)를 통한 온라인 투고('학술지-온라인논문투고'에 따로 회원 가입해야 함)

② 발간일 : 2020년 9월 30일.

③ 투고 논문 주제 : (1) 동아시아 고대 관계 논문 (2) 동아시아 전통문화 관계 논문

④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20매 이상 200매 이내, 출판편집본 25면 초과 시 1면당 1만원 게재료 추가

⑤ 원고는 논문투고규정(http://www.dongasia.co.kr/html/sub3_03.html)의 원고작성방법- 특히 각주, 인용, 참고문헌 등-을 준수하여 제출할 것(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1차 편집회의에 서 반려할 수 있음)

⑥ 투고 시 당해연도 회비(4만원) 및 심사비(6만원)가 납부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됨.

*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109-910019-86705 류호철**(동아시아고대학회)

■ 기타 공지사항

〈 회무 공지사항 〉

▌2020년도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109-910019-86705 류호철**(동아시아고대학회)

· 회　　비 : **연회비 4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 50세 이상 40만원)